

第145回國會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會議錄 第22號  
 權力型非理調査特別委員會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2月13日(月)  
 場 所 特別委員會(516號室)

議事日程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2. 第5共和國非理檢察搜查結果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2面
2. 第5共和國非理檢察搜查結果報告의件..... 2面

(14時45分 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2次委員會를 開催하겠읍니다.

지금 이 자리는 法務部長官이 出席해 있습니다. 원래 開會時間이 두 時였읍니다마는 시간이 지연된 데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5共特委가 開會되고 法務部長官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지난 1月31日 檢察廳이 발표한 5共非理 搜查結果에 대해 報告와 質疑에 答辯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報告를 듣기 전에 우리 本 委員會도 오래 간만에 열렸고 해서 잠시 人事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또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의 소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구시대를 발끔히 청산하는 일은 輿野가 있어서도 안되고 政府와 國會가 구별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機關에서만 구시대 청산을 전담해야 된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5共特委도 열심히 조사에 임해야 하지 마는 檢察當局이 특히 搜查에 착수해 주기를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國會特委의 조사와 檢察의 搜查는 기본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늘 생각

해 왔읍니다. 우리 國會 5共特委를 설치한 뜻은 구시대 청산이라는 과제가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檢察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민의 代表機關인 國會에서 전국민적 참여하에 구시대 청산의 방향과 범위와 그리고 問題點을 조사하고 그 처리를 설정하라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檢察에게는 국민이 설정한 이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搜查活動을 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5共特委가 출범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동안 檢察에서는 내면적으로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본격적인 調查活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日海財團 聽聞會로 5共非理의 실상이 드러나고 온 국민이 분노로 들끓게 되자 그제서야 搜查에 아마 착수했읍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檢察의 搜查를 지켜보면서 과연 5共非理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우려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동안 국민의 비난을 받은 檢察이 이번 5共非理搜查를 계기로 국민의 檢察로 거듭 태어나고 실추된 法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의 檢察搜查는 現政權의 舊時代 清算과 民主化 의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임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서 現政權의 正統性 문제까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주목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國民의 輿論을 익히 들어 아시겠지

만 지난 1月31日의 檢察 발표는 國民에게 더없이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5共非理의 진상을 규명하기는 커녕 國會 5共特委가 國民의 눈 앞에서 밝혀낸 사실마저도 축소하고 왜곡시킨 5共非理 免罪符 발행 搜查였다는 것이 國民의 판단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애초부터 調查 對象人物의 聖域이... 그렇게도 없다고 하던 聖域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共非理의 責任者는 다음아닌 金斗煥 李順子 兩人임은 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데도 이들을 한번도 조사해 보지 않고 搜查를 종결시켰다는 것은 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5共非理의 핵심은 金斗煥 李順子씨의 不正蓄財와 막대한 政治資金의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檢察은 이에 대한 搜查를 제외시켰습니다. 核心的인 문제는 덮어두고 퇴락한 5共人士 몇 사람을 그것도 個人非理 차원에서 拘束하는 데 그침으로써 5共非理의 본질을 왜곡하고 國民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지 않는가 이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檢察은 國稅廳과 銀行監督院 등의 협조까지 받아서 5共非理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長官의 報告以後에 여러 委員들의 質疑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믿습니다마는 故意的으로 밝혀진 사실조차도 감추고 그래서 그 실상을 축소발표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長官의 報告가 끝나면 우리 委員들의 質疑를 통해 이밖에도 많은 歪曲縮小의 예가 지적될 것입니다마는 檢察內部에서 조차 불만이 있었을 정도였다 하니 우리 國民들 지금 심경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번 檢察發表를 現政權에 의한 舊時代 清算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사람 個人의 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이번 檢察의 5共非理 搜查가 제대로 된 것이었느냐 아니면 故意的인 축소와 왜곡이 있었느냐 여부

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檢察이 제대로 搜查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그 이유를 정확히 따짐으로써 우리의 民族史的 課題이자 오늘의 時代精神인 舊時代 清算을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國會에서 特檢制가 하루속히 채택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그 特檢制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우리 5共特委가 萬難을 극복하고서라도 우리 5共特委 委員들이 政治의 생명을 걸고라도 舊時代 清算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의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여러 委員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法務部長官께서도 오늘 나오셔서 진실된 報告를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여러 委員들의 疑問點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정직한 答辯을 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마는 과거의 그 어두웠던 시절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하는 바로 그 분기점이 오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長官의 성실한 答辯 또 정직한 報告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會議에 들어가겠습니다.

### 1. 委員會運營에관한件

(14時58分)

먼저 여러 委員들에게 양해사항을 구할 것은 원래 幹事會議에서 議事日程 合意事項은 우리들 全體會議을 오늘 午前중에 갖기로 하고 午後에 法務部長官 報告 質疑를 가지기로 했습니다마는 午前에 우리 全體特委를 하지 못했고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우리 法務部長官 報告 質疑를 먼저 하고 만약 시간이 없어서...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우리 全體特委를 가장 빠른 시일내에 소집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따라서 간단하게 우선 報告事項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立法審議官 趙南樂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 2. 第5共和國非理檢察搜查結果報告의件

(15時)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第5共

和國非理檢察搜查結果報告의件을 上程하겠습니다.  
法務部長官 나오셔서 먼저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法務部長官 許亨九입니다.

존경하는 李基澤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먼저 第5共和國 時代의 不正과 非理를 考察해 眞相을 규명하고 國民의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어두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民主時代의 장을 열기 위하여 昨年 6月이후 지금까지 不撤晝夜로 第5共和國 政治權力型非理調査特別委員會에서의 調査活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委員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行政府의 基本的 責務라 할 수 있는 지난 시대의 잘못을 청산하는 작업을 위하여 民意의 殿堂인 國會內에 特別委員會까지 구성되게 이른 데에 대하여 法務行政을 책임지고 있는 本人으로서 대단히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第5共和國非理 搜查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順 序

1. 搜查經緯
2. 搜查의 基本方針
3. 搜查結果
4. 向後方針

\*添附資料

第5共和國非理 事件別 搜查結果

1. 搜查經緯

檢察은 第6共和國 出帆以後 지난 時代의 잘못을 清算하고 着實한 民主發展을 이룩하려는 새 政府의 意志와 過去의 不正과 非理를 斷乎히 澈絶하여 再發防止를 위한 歷史的 敎訓으로 삼아야 한다는 國民의 輿望에 따라 지난해 3月부터 國民의 指彈을 받아 오던 새마을運動中央本部 등의 非理에 대한 搜查에 着手하여 全斗煥 前會長과 그 周邊人物 12名 및 廉普鉉 前서울特別市長 등을 拘束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올림픽大會가 開催되고 이어 16年만에 復活된 國會의 國政監査가 實施됨에 따라 搜查를 一時 中斷하였다가 國政監

査가 終了된 直後인 지난해 10月24日부터 다시 搜查活動을 再開하여 全斗煥 前大統領 親·姻戚의 非理와 國會國政監査 過程에서 드러난 疑惑事件들에 대하여 搜查를 展開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搜查를 進行하던 중 지난해 11月26日 여러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檢察權에 의한 第5共和國 不正·非理의 眞相 糾明 意志”를 천명한 大統領의 “特別談話”에 따라 檢察은 지난 12月13日 從來의 5共非理 搜查體制를 全面 擴大·改編하여 全國에서 差出한 檢事 27名과 搜查要員 108名으로 大檢察廳에 “第5共和國非理特別搜查本部”를 發足시키고 全國 各 檢察廳과 緊密한 共助體制를 維持하면서 國稅廳 銀行監督院 등의 協調를 받아 더욱 搜查에 拍車를 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檢察은 國會에서 與野 合意로 選定된 44件의 疑惑事項을 위시한 이른바 5共非理事件에 관하여 檢察權을 發動하여 眞相糾明이 可能한 事件에 대하여는 모두 搜查對象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李哲熙·張玲子 어음詐欺事件 汎洋事件 明星事件등 이미 司法處理 또는 檢察搜查가 끝났고 달리 새로운 嫌疑事實이 밝혀진 바 없어 再搜查를 해야 할 必要가 없거나 大統領 專用機 導入 市·道知事 公館內 大統領 專用施設 建立 등과 같이 政策的 過誤의 問題로서 刑事事件으로 處理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거나 當部 所管事項이 아니어서 關聯 行政部處에서 處理함이 相當하다고 여겨지는 事件은 搜查對象에서 除外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日海財團 (2)새세대育英會 (3)心臟財團 (4)全斗煥 前大統領 親·姻戚 非理 (5)全斗煥 前大統領 私邸 新·改築 및 周邊 公團化 (6)外國產 소導入 (7)鷺梁津水產市場 引受 (8)大田 三省市場 敷地 買入 (9)大韓船洲整理 (10)國際그룹 整理 및 聯合鐵鋼 引受 (11)全斗煥 前大統領 父母墓域 聖域化 (12)李圭東 農場特惠 (13)노드름戰鬪機 導入 (14)釜山 하이아트호텔 所有關係 (15)低質炭輸入 (16)石油基金運用 (17)株式會社 東一特惠 (18)쇠고기波動 (19)交通信號機 獨占納品 (20)클프장內認可 (21)서울市 체비지등 賣却 (22)靑瓦臺 財産行方 (23)不正蓄財 還收財産處理 (24)原電

11·12號機 導入 (25)大韓住宅公社 乙支路再開發 (26)五大洋事件 (27)第2民航免許 (28)서울地下鐵 電動車 導入 (29)가야산 觀光團地 造成 (30)美國 쌀 輸入 (31)東亞建設受注特惠 (32)韓國트럭터미날事件 (33)李根安警監 拷問事件 (34)88飛行船 導入 등 모두 34個 事案을 重點 搜查對象으로 選定하여 集中的으로 搜查를 進行하였읍니다.

## 2. 搜查의 基本方針

檢察은 이번 事件을 搜查함에 있어 過去の 不正과 非理를 그때그때 即時 척결하지 못한 自省과 함께 國民이 納得할 수 있는 眞相糾明과 犯法行爲가 드러나는 關聯者에 대한 嚴正하고도 公正한 司法處理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檢察을 비롯한 國家公權力에 대한 國民的 信賴를 回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法秩序 確立을 통한 社會의 安定과 第6共和國의 民主的 發展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直視하였읍니다.

한편 過去에 執着하여 지난 날의 問題를 가지고 社會 全體가 陣痛과 混亂을 無限定 계속한다면 政治社會에서 安定의 기틀이 끝없이 뒤흔들리고 未來를 위한 設計의 機會를 잃어버릴 憂慮가 있어 不幸했던 過去의 잘못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재앙이 되지 않고 더 밝은 來日이 있게 하는 값비싼 敎訓이 되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된 지난 時代의 清算問題는 早速히 매듭지어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는 점도 考慮하였읍니다.

따라서 檢察은 中立的 立場에 서서 不偏不黨의 姿勢로 빠른 時日內에 그 眞相을 徹底히 糾明하는 한편 嚴正한 司法處理를 통하여 國民의 疑惑을 씻어줌으로써 早速한 政治社會의 安定에 寄與하고 公權力의 信賴를 回復한다는 基本方針아래 그 동안 搜查에 最善을 다하여 왔읍니다.

특히 特定個人을 미리 搜查對象으로 指定하거나 除外하는 등 搜查의 限界를 設定하지 않았으며 오직 法에 따라 이른바 5共非理事件에 관하여 眞相을 糾明하는 過程에서 나타난 犯法者는 地位高下를 莫論하고 依法措置하였음을 分明히 밝힙니다.

다만 全斗煥 前大統領과 政治資金에 대한 搜查는 國民和合과 政治社會安定에 적지아니

한 衝擊을 주어 오히려 民主化 過程에 바람직하지 못한 影響을 끼칠 憂慮가 있다고 여겨져 이를 檢察次元에서 司法處理하기 보다는 政治的 解決에 일단 맡기는 것이 옳다고 判斷하여 그 搜查對象에서 除外하였읍니다.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搜查結果

지난해 3月 처음으로 5共非理 搜查에 着手한 이래 지금까지 檢察의 直接認知 搜查活動 結果 總 48名을 拘束하고 33名을 不拘束立件하여 그 中 46名을 拘束起訴 22名을 不拘束起訴하였으며 나머지 13名에 대하여는 指名手配하는 등 搜查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以外에도 이러한 事件과 關聯이 있는 告訴 告發 事件과 陳情事件에 대하여도 搜查를 하였습니다.

그 內容을 段階別로 말씀드리면 이미 發表한 바와같이 一次的으로 새마을非理事件 등과 關聯하여 全斗煥 前大統領의 동생인 全敬煥 前새마을運動中央本部會長 廉普鉉 前서울特別市長 崔烈坤 前서울市教育監 등 14名을 拘束起訴 10名을 不拘束 起訴하였으며

다음 지난해 10月24日부터 搜查展開한 前職大統領 親·姻戚非理와 國會國政監查 過程에서 드러난 各種 疑惑事件과 關聯하여서는 全斗煥 前大統領의 實兄 全基煥 등 그 親·姻戚 7名과 5共非理 關聯者 17名 合計 24名을 拘束起訴 12名을 不拘束起訴하고 第5共和國非理特別搜查部 發足以後는 日海財團의 疑惑 등에 대하여 犯法行爲가 드러난 張世東 前大統領警護室長 등 關聯者 10名을 拘束하여 지금까지 8名을 拘束起訴하였읍니다.

특히 特別搜查部 發足以後의 搜查結果를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日海財團 非理疑惑과 關聯하여 張世東 前大統領警護室長 등 2名을 職權濫用 등 嫌疑로 拘束하고 國際그룹解體 및 聯鐵引受疑惑과 關聯하여 李鶴捧 前靑瓦臺 民情首席秘書官을 職權濫用 嫌疑로 拘束起訴하고 釜山골프場 內認可 疑惑과 關聯하여 車圭憲 前交通部長官 등 3名을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法律違反(賂物收受) 등 嫌疑로 拘束起訴하였으며 乙支路 再開發疑惑과 關聯하여 金宗鎬 前建設部長官 등 2名을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法律違反(賂物收受) 등 嫌疑로 拘束起訴하고 노드름戰鬪機 導入疑惑과 關聯하여 李敏厦 前東洋高

速會長을 外國換管理法違反嫌疑로 拘束起訴하는 한편 大韓船洲整理疑惑 및 李根安警監拷問事件과 같이 關聯者가 逃避하거나 海外에 있어 調査를 끝내지 못한 事件에 대하여는 現在도 搜查를 계속하고 있고 交通信號機獨占納品疑惑 등 나머지 事件에 대하여는 關係者의 陳述과 關聯資料를 嚴密分析하는 등 多角的인 搜查를 展開하였으나 犯罪의 嫌疑가 發見되지 않아 內査를 終結하였읍니다.

다만 여러 委員님께서도 特委活動이나 國政監査過程을 통하여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만 檢察이 이번에 搜查對象으로 하였던 事件들은 그 하나하나가 內容이 방대하고 事實關係 역시 長期間에 걸쳐 複雜하게 얽혀 이루어져 왔으며 關聯證據가 滅失되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犯罪事實이 認定되더라도 公訴時效가 完成되어 關聯者들을 處罰하지 못하는 등 그 事實關係와 法律的 理由에 따른 制約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면 新世代育英會 生活館 敷地 買受過程에서 國有財産 總括廳인 財務部의 指定없이 隨意契約을 하고 그 代金を 60日 以內에 領收하지 아니한 점은 國有財産法上의 節次에 違背되나 罰則規定이 없어 刑事上 處罰할 수 없었으며 鷲梁津水産市場 運營權者 交替와 關聯하여 李鶴捧 前靑瓦臺民情首席秘書官 孫晉坤 前民情秘書官 등이 國稅廳을 動員하는 方法으로 서울水産靑果株式會社側을 脅迫하는 등 職權을 濫用하였다는 점은 88年5月23日 公訴時效가 完成되었고 全斗煥 前大統領의 實兄인 全基煥이 母親墓造成時 當局에 埋葬申告節次를 不履行하고 母親墓地 面積이 基準을 超過하였다는 점은 81年3월에 全基煥이 「헬기」着陸場 開設時 山林을 훼손하였다는 점은 85年12월에 公訴時效가 各 完成되었고 低質炭輸入事件과 關聯 82年4月頃 「제임스 마틴」會社 韓國代理人 김중목이 大韓石炭公社分析室長 이근수에게 輸入石炭의 品質檢査를 잘 봐달라는 趣旨로 金 400萬원을 交付하려는 意思表示를 하였다가 拒絕당한 점은 87年4月 公訴時效가 完成되었고 前 産業銀行敷地賣却과 關聯 83年3月29日頃 入札過程에서 「롯데그룹」系列

3個 會社間에 談合事實이 드러났으나 86年3月28日 公訴時效가 完成되었으며 韓國「트럭 터미널」事件과 關聯 80年9月26日 승항배와 李鶴捧이 共謀하여 合同搜查團 要員들로 하여금 當時 同 터미널 代表理事 김구현 등에게 同인의 所有株式 8萬株를 前 所有者인 승항배의 親戚 이중훈 등에게 讓渡하도록 威脅하여 強制로 株式를 讓渡케 한 점은 87年9月25日 公訴時效가 完成되어 비록 眞相을 밝히고 나아가 犯罪嫌疑까지 發見하였지만 現行 實定法上 處罰이 不可能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過去의 不幸하였던 政治的 遺産을 早速한 時日內에 徹底하게 清算할 것을 熱望하는 여러 委員님들을 비롯한 國民의 要求와 그 歷史的 當爲性에도 不拘하고 適法한 憲政秩序內에서 人權擁護와 證據裁判이라는 刑事訴訟法上의 諸原則을 遵守해야 하는 우리 檢察로서는 이번 事件을 搜查함에 있어 技術的으로 許多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檢察 搜查結果에 대하여 國民 여러분께서 搜查未盡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指摘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法務行政의 責任者인 本人으로서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자희 檢察로서는 주어진 輿件下에서 最善을 다한 結果라는 점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事件別로는 具體的인 搜查結果는 委員님께 別途로 드린 “第5共和國非理 事件別 搜查結果”冊子에 詳細히 記載되어 있으므로 諒解하여 주신다면 時間關係上 別途報告를 省略하겠읍니다.

끝으로 向後方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政府는 이로써 그 동안 汎國民的 疑惑과 非難의 對象이 되어 왔던 이른바 第5共和國非理에 대한 特別搜查部의 搜查를 일단 매듭지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公訴維持를 위한 補充搜查와 搜查進行中인 事件에 대하여는 檢察의 通常的인 組織과 機能으로 徹底하게 對處해 나갈 것이며 또한 앞으로 具體的인 嫌疑事實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地位高下를 막론하고 嚴重 搜查 處理할 方針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國家는 最小限 法秩序를 確立하여

國民이 平安하고 幸福하게 生을 누릴 수 있도록 할 義務와 責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檢察은 國家의 가장 基本的 義務인 法秩序를 確立하여야 할 무거운 責任의 一端을 지고 있는 治安關係機關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근래 匪強盜가 盛行하며 白晝에 婦子女를 拉致하여 人身賣買를 자행하는 등 治安不在 狀態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國民들은 不安해서 못살겠다고 하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檢察은 國民을 더 이상 犯罪의 恐怖 속에 떨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난 5共和國의 檢察이 여러 가지 惡條件과 부득이한 輿件下에서 檢察로서의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檢察이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非難을 받고 있다는 事實을 否認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第6共和國의 檢察은 過去의 不名譽를 씻고 거듭 태어난 새로운 檢察이 될 것이며 社會正義를 具現하는 役軍이 되고 人權을 所重하게 여기는 檢察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檢察은 결코 惡人이 平安하게 잠잘 수 있게 放置하지는 않을 것이며 善良한 國民이 平安하게 그리고 幸福하게 삶을 營爲해 나갈 수 있도록 檢察의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檢察은 正義의 守護者 人權擁護의 旗手 法治主義의 先導者로서의 名譽를 걸고 모든 搜查力을 自由民主主義 守護와 民主治安活動에 注力하여 犯罪의 恐怖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고 國民生活의 安定을 確保하여 國家發展의 基盤을 튼튼히 하는 데에 總力을 傾注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委員님 여러분의 策적질과 聲援과 그리고 激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 마지않으면서 5共非理搜查에 관한 綜合的인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부터 法務長官 報告에 따르는 質疑을 하겠습니다.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 委員님들께 報告말씀이라고 할까요 드려야 할 것은 各黨에서 質疑을 하셔야 될 委員의 總數가 24名입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會議進行方式은 聽聞會 方式으로 해서 民正黨

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平民黨에게 양보를 해서 平民黨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수사결과와 質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聽聞會에서나 일반 證人을 상대로 해서 一問一答式으로 해왔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直問直答이 가능한 것이냐는 걱정을 委員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一問一答을 우리가 하지 말자고 委員會에서 그렇게 결정하기도 무척 힘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平民黨 朴相千委員부터 質問을 해 보고 또 答辯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一問一答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분이 質問을 하고 答辯 준비시간을 주어서 答辯을 하시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든지 한 두분 우선 재량에 의해서 質疑을 하시고 한번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委員長은 우선 會議의 최대한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것이 좋으나 하는 것을 여러 委員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서 가능하면 오늘중으로 끝나도록 會議進行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지금 24名이 質疑를 한다고 하면 시간도 상당히 간단하지 않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러면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平民黨의 朴相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委員 平和民主黨의 朴相千委員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檢察의 5共非理搜查에 관하여 찬사를 보내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잘못된 搜查에 대한 책임추궁의 자리가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전반적으로 이번 檢察의 5共非理搜查의 특징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具體的인 質問을 하겠습니다.

具體的인 質問에 대해서는 一問一答式으로 答辯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檢察의 5共非理搜查의 특징을 보면 이번에 檢察이 발표한 搜查力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온 國民이 분개하고 있는 또 國會가 國政調查權을 발동하여 聽聞會까지 열고 있는 5共非理의 대부분의 사건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國會는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떠들고 있다는 그런 결론에 귀

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5共和國政權은 막대한 權力事業들을 법대로 청렴하게 수행한 善政을 베풀 政權이 됩니다.

예를 들면 日海財團이나 새세대育英會 새세대심장재단은 全斗煥씨 부부가 아무런 個人的 아욕이 없이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고 여기에 엄청난 기부금을 낸 企業人들은 어떤 강요를 받은 일도 없고 특혜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숭고한 목적에 감응해가지고 막대한 銀行負債와 어려운 會社事情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거액을 회사한 도덕군자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마치 「페스타로찌」에 비견할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全斗煥大統領은 「골프」場 內認可에 권한을 관계 行政部處에 주지 않고 직접 장악하고서도 아무런 뒷거래없이 認可를 해주었고 다만 交通部長官 한 사람이 大統領의 뜻을 어기고 단 한 件에 한해서 個人的으로 뇌물을 받은 일이 있을 뿐이라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청렴한 政府에 감응하여 「골프」場 認可를 받은 사람들이 5,000萬원이다 1億원이다 하는 방위성금을 약간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 密室 替費地賣却에 「롯데그룹」이 단독 應札하여 落札받은 것은 대금이 1,000億이 넘기 때문에 아무도 應札안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搜查結論입니다. 우리 이 搜查에 대해서 별 지식이 없는 國民一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國民一般의 輿論입니다. 우수한 人材들이 모였다는 우리 檢察이 왜 이러한 搜查를 했는가... 檢察發表文을 보면 民主化時代가 돼서 刑事訴訟法의 適法節次를 지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항측하고 있습니다. 즉 고문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搜查를 못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는 다음 몇 가지의 基本方針 때문에 搜查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 첫째의 基本方針은 全斗煥씨 관련 夫婦는 搜查對象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것은 방금 長官님께서 시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방침은 輿論調查에 나타난

國民輿論중에서 5共非理搜查에 대해서 가장 너그러운 國民들도 處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真相調查 만큼은 철저히 하라 하는 것이 國民輿論입니다. 이것은 政府 輿論調查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방침입니다.

두번째 檢察의 基本方針이 政治資金은 搜查對象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政治資金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세번째 이번 檢察搜查는 事件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搜查했습니다. 現政權과 敵對의 관계에 있거나 또 있었거나 적어도 現政權과 친하지 아니한 사람들만 處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泣斬馬護의 의지로 5共非理를 청산하겠다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번째로 搜查 根本目的을 망각하고 방만한 자세로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사의 목적은 民主化의 整地作業을 하고 民主化로 가는 전환기에 실추될 대로 실추되어 있는 公權力에 대한 國民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가 안정을 지키면서 先進 民主國家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檢察은 나라의 民主化에 기여하고 公權力에 대한 國民信賴를 회복한다는 歷史意識을 가지고 5共의 獨裁權力이 政權을 私有物化하여 不正을 자행한 부패의 구조를 구조적인 부패를 규명해야 합니다. 또 大統領職의 權限이 寄附金を 모집하는 데 동원되고 行政部處에 맡겨야 할 「골프」場 內認可 權限 등이 青瓦臺로 집중됐으며 그 實相은 어떠한지 또 이에 호응한 經濟人들에게는 어떠한 特惠가 주어졌으며 이에 거부하거나 不應한 經濟人에게는 어떠한 응징이 내려졌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法の 지배의 原則이 어떻게 깃잡혔는지 이러한 것을 밝혀서 이제부터는 法の 지배의 原則에 입각한 民主政治를 해야 되겠구나 나쁜 짓을 자행하면 아무리 權力이 있는 사람도 그 真相이 결국은 밝혀지며 處罰을 받는다 하는 인식을 우리 國民一般으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 이번 搜查의 目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檢察搜查는 政權의 私有物化로 인한 구조적인 부패의 규명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共非理의 축소 은폐와 合理化로 귀결된 점에 개탄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장차 어떤 方法으로 國家의 公權力에 대한 國民의 신뢰를 회복하실지 담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適法節次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변명하시나 이미 제가 말씀드린 政府의 搜查方針 자체가 5共非理를 규명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具體的인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이 質問에 대해서는 長官님께서 一問一答式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問할 것이 많으나 同僚委員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全斗煥씨 夫婦는 아예 調査조차 하지 아니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또 全씨 夫婦를 調査하지 아니하고는 5共非理는 眞相 자체가 규명될 수가 없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調査없이 어떻게 5共非理를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國民輿論에 배치되는데 왜 全씨 夫婦를 調査조차 안했는지 處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調査조차 안했느냐 이것도 答辯해 주시고 또 5共非理의 주역들이 全斗煥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에는 그 이상 搜查進陞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質問에 대해서 우선 全斗煥大統領 夫婦를 조사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죄송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몇 마디 더 물으셔가지고 質問하신 다음에 答辯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편하겠습니까마는...

○朴相千委員 아니 搜查方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搜查方針을 아까 報告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누구의 지시나 하는 具體的인 지시에 따라 한 것은 아닙니다.

大統領께서 談話發表하실 때에도 前職大統領에 대한 調査는 예우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저희 檢察에서 생각할 때에도 前職大統領을 調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우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안하더라도 5共非理 척결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盧大統領의 담화에 前職

大統領은 搜查對象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하여튼 盧大統領의 담화 이외에는 上部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없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 지시가 없었어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朴相千委員 그러면 檢察이 스스로 全斗煥씨 부부를 搜查對象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長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長官이 어느 수사에서 누구를 제외하라 그런 지시는 한 일이 없습니다. 檢察에서 調査하는 데 있어서 全斗煥前大統領 한 사람에게만 진상을 따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이고 또 비록 그 진상을 규명을 하더라도 搜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檢察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前職 國家元首에 대한 예우와 또 對外的인 國家의 체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 檢察의 심정입니다.

○朴相千委員 大統領談話는 前職大統領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담화의 영향으로 檢察이 調査 자체도 안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담화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정을 檢察에서 참작을 했다고 그럴까 檢察에서 수사방향을 정할 때 前職大統領까지 調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였다는 報告를 받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5共非理의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國民의 여망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共非理의 주역인 全斗煥씨와 그 부인의 調査가 불가피한데 방금 그런 方針으로 인해서 5共非理 全體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저는 이 5共非理 수사 결과 日海財團에서 돈을 많이 모금하였다는 사실이라든지 또 心臟財團 또 새세대육영회 등등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다는 사실은 다 밝혀졌습니다. 그 이상 또 責任者가 있다면 全斗煥 前大統領夫婦를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직접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非理는 이미 다 파헤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檢察의 發表文을 보더라도 일정한 한도까지 수사하고 그 나머지는 이를테면 東國에서 日海財團에 낸 기부금중 28億원은 행방불명이다. 그 이상은 조사가 안된다 말이에요. 그것은 全斗煥 前大統領을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28億원이 어디로 갔는지를 具體的으로 搜查를 받은 檢事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약이 온다 이거예요. 5共非理 全體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 문제는 政治資金을 조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역시 관련이 됩니다. 政治資金을 우리가 5共和國 時代에 그것이 制度化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檢察에서 수사를 해야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政治資金에 관한 말하자면 지금 政治資金 陽性化를 위한 法案을 政界의 정치지도자들이 起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共和國 政治資金에 대해서 檢察에서 손을 잘못 대면 그것이 잘못하면 오히려 國民和合과 또 政治社會 安定에 이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檢察은 했습니다.

○**朴相千委員** 지금 말씀드린 東國에서 日海財團 기부금으로 낸 28億원입니다. 政治資金이 아니예요. 그것도 규명이 안된다 이것이에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두번째로는 政治資金을 搜查對象에서 제외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이유라는 것이 政治資金을 檢察에서 손대지 않더라도 역시 그런 문제는 政治的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檢察權이 거기까지 가도 괜찮으냐 이것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렇다면 檢察이 設定한 政治資金의 概念은 어떤 것인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搜查하다가 이것은 政治資金이다 하고 檢察이 獨單的으로 인정해서 搜查對象에서 제외하면 이것은 사실상 搜查를 좌우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政治資金의 定義를 어떻게 내리셨는지? 잠깐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政治默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돈을 갖다 주면 그 默金과 行政上의 特惠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

도 政治資金으로 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學術的인 政治資金의 概念이 아니고 이번 搜查에서 檢察이 設定한 政治資金의 概念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大統領이 政治活動을 위하여 필요한 資金 이렇게 常識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大統領이 그 資金을 받으셨을 때 그 資金을 낸 사람에게 어떤 代價를 주었어도 그것이 政治資金입니까? 뇌물성 자금도 정치자금이나 이것이에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뇌물성 자금을 政治資金이라고 생각해 본 일없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뇌물성 자금은 搜查對象에서 제외를 안 하셨겠네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가령 이런 것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政治資金인 동시에 또 뇌물성 자금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檢察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政治資金部分에 관해서는 調査를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성 政治資金이나 아니냐까지 따지지 못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어떻게 政治資金인가 아닌가를 규정해서 調査하고 안하고를 決定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은 장부를 조사해 본 결과 행방불명된 돈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누가 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大統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前職大統領께 직접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행방이 없으면 일응 우리로서는 그것이 政治資金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前職大統領께서 일단 직접 받으셨고 그 돈이 행방불명이면 政治資金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행방불명이라기 보다 大統領에게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저희 搜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朴相千委員** 그 말씀을 靑瓦臺에서 사용한 돈은 政治資金으로 일단 본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前職大統領 부부가 횡령한 돈이나 流用한 돈도 政治資金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에요. 대단히 위험스런 定義이다. 너무 포괄적이고 대단히 위험스러운 定義를

가지고 政治資金을 규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면 搜查가 즉각 「스톱」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되겠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朴相千委員 그 돈의 사용이 帳簿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은 政治資金으로 보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경우에 前職大統領 夫婦가 流用한 돈도 政治目的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他處에 流用한 돈도 그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버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前職大統領 夫婦의 犯罪라할까 非理는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檢察이 設定한 定義대로 하신다면…

○法務部長官 許亨九 제 생각에는 가령 26億이다 이것이 行방불명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政治資金 어디에 썼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前職大統領의 非理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推定이 되는 것이다 저는 個人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檢察은 가령 日海財團 基金중에 어느 정도가 行방불명이면 그것은 前職大統領의 犯罪로 推定하는 것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犯罪로 推定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政治活動에 쓴 돈인가 하는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個人的으로 蓄財를 했던 政治活動에 썼든 전부 搜查가 그 자리에서 「스톱」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5共非理의 眞相이 밝혀지겠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글썽 5共非理의 眞相이라고 하는 것이 大統領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마다 그런데 그 행방은 밝혀지지 않는다 그 자체가 非理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朴相千委員 그러면 5共非理의 眞相이라고 하는 것은 募金을 하는 線에서 그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個人이 蓄財를 했는지 海外에 逃避시켰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 5共非理의 眞相이 되겠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글썽 朴委員님 견해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朴相千委員 좋습니다. 거기에서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質問입니다.

日海財團 寄附金에 대해서 지금 檢察의 搜查發表文을 보면 強制性도 없고 賂物性도 없으며 순수히 自發的 獻金이다 이렇게 規定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李基澤委員長께서 國會에서 밝혀진 사실까지 合理化를 시켜 놓았다 하는 것이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저 뿐만 아니라 우리 大多數 委員들은 日海財團 寄附金에 두 種類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強制性을 띤 恐喝性 寄附金 또 하나는 어떤 代價를 바라고 준 賂物性 寄附金 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日海財團 寄附金 전체가 무슨 強制性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묻겠습니다.

첫째 恐喝性 寄附金 強要된 寄附金의 경우를 보면 이 強制性을 立證한 資料는 그 동안 國會에서 충분히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日海財團 創立總會 當時에 前職 大統領이 靑瓦臺에서 만찬을 하면서 寄附金을 내라고 하는 것이 大統領 本人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企業人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大統領이 寄附金을 내란다 하는 것을 經濟人들 한테 알렸다 이거예요.

두번째는 募金場所를 靑瓦臺로 決定했습니다. 募金場所를 靑瓦臺로 決定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靑瓦臺에다가 돈을 바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역하기가 아주 힘든 중요한 決定입니다. 또 前職長官인 崔順達씨와 現役 保安隊 大領인 趙成熙씨로 構成된 寄附金 募集特使들이 企業體를 방문해서 권유했습니다.

네째로 이 寄附金에 대해서 拒否의 뜻을 보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國際「그룹」 梁正模씨가 처음에 5億원을 낸 뒤에 特使의 방문을 받고 거부 의 뜻을 밝혔다가 즉시 후회하고 그 特使들을 찾아 다니면서 빌러 다녔습니다. 각처로 찾아다니면서 빌러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國際「그룹」이 그 뒤에 해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 여러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 사람한테… 다섯 사람한테 돈을 뺐을 때 다섯 사람 다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먹으로 때려서 쓰러

뜨러놓고 돈내라고 하면 나머지 네 사람은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저절로 내게 됩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國際「그룹」해체가 日海財團 基金募金과는 관련이 없다고 答辯하실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檢察發表文 자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의 財務部長官이 國際「그룹」의 系列企業 賣却方案을 系列企業을 賣却해서 國際商社를 살린다 하는 방안을 大統領에게 건의했으나 大統領이 이것을 거부하고 國際「그룹」전체를 第3者에게 인수시키는 國際「그룹」해체라는 방안을 채택을 바로 했습니다. 당시 大統領 자신이 이것을 지시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寄附金에 대해서는 全額 損費處理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全額 損費處理로 조치했다는 것은 지금 現行稅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혜가 아울러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를 日海財團에 「寄附金」을 낸 企業人들을 불러다가 하나하나 추궁을 하면 例를 들어 崔順達씨와 趙成熙씨가 와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던가 그때 어떤 심리상태가 되어서 寄附金을 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면 충분히 이것은 刑法上의 恐喝罪가 구성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두 사람 이상이 恐喝을 하면 暴力行爲등處罰에 관한 法律 違反이 되기 때문에 暴力行爲등處罰에 관한 法律 違反이 정당한 罪名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혹 搜查를 소홀히 하더라도 刑法 第123條에 있는 職權濫用罪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돈벌 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내게 만든 것 이 罪에는 다 해당이 될 것인데 강제성도 없고 아무런 罪도 안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檢察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강제성의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恐喝罪나 職權濫用罪에 擬律하지 아니한 근거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日海財團 寄附金 寄託者들이 大統領이 설립자이고 또 大統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寄託者들이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寄附金 割當을 全經聯이 주축이 되거나 각 財團理事會 등에서 추가 募金額을 割當하는 것으로서 寄附金 出捐者들은 法的인 강제성이나 寄附金 出捐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강제성 때문에 하는 수없이 돈을 냈다고 불만한 증거도 우리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 梁正模씨의 경우는 別途입니다마는... 또 梁正模씨가 檢察에 나와서 하는 말도 寄附金에 관해서 어떤 강요를 받은 사실은 없다 이렇게 陳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寄附金은 전부 損費處理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저희 조사 결과는 전부 損費處理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합니다마는 朴委員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한 사실이라든지 혹은 목격한 사실은 직접 陳述하는 證言의 경우에는 一問一答으로 하시는 것이 真相把握에 유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이런 「케이스」처럼 長官이나 總長이 報告받은 것을 다시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一問一答으로 하시기 보다는 몇 가지를 물으셔가지고 저희들도 答辯을 정리해서 報告를 드려야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答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최종스럽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相千委員 몇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檢察 자체가 李鶴捧씨나 張世東씨가 公務員한테 전화걸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또 驚梁津水産市場을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職權濫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전 화건 행위가 職權濫用이라면 불러다가 기부금 내라고 前職大統領이 얘기하고 保安司大領과 前職長官으로 구성된 特使를 일일이 방문하게 한 행위 자체가 일종의 犯罪아닙니까? 이것은 寄附金品募集禁止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國稅廳에다가 나한테 돈낸 사람은 損費處理해 주라고 지시하고 이렇게 한 것이 職權濫用이 아니면 뭐가 職權濫用입니까?

이것이 職權濫用이 안 되면 지금 起訴되어 있는 李鶴捧씨나 張世東씨는 전부 無罪로 起訴했다는 결론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日海基金造成 關與行爲를 職權

濫用으로 訴追할 경우에 主動者인 前職大統領에 대한 訴追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부러 뻔 것으로 보이는데 長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前職大統領의 犯罪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日海財團 募金에 關여한 사람들을 職權濫用으로 처단하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는 생각했지만 그 이상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高級公務員이 靑瓦臺에 있는 사람들이 公務員들 한테 轉化결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은 職權濫用이고 靑瓦臺로 불려다 이야기를 하고 지시하고 서술이 시퍼런 保安隊大領 등으로 구성된 寄附使節을 파견하고 그 寄附使節을 파견한 것 자체가 犯罪입니다. 寄附金品募集禁止法 위반이요. 그 犯罪行爲를 직접시키고 또 國稅廳에 대해서는 나한테 돈낸 사람은 損費處理해 주어라 이렇게 不法을 超法的인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職權濫用이 아니고 무엇이 職權濫用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職權濫用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職權濫用이 안 된다면 李鶴樺씨하고 張世東씨를 起訴한 것은 전부 職權濫用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경미한 행위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죄송합니다.

저희 檢察에서는 그것이 職權濫用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읍니다. 前職大統領의 禮遇때문에 그 이상 그것이 罪가 된다 안된다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읍니다.

○朴相千委員 前職大統領을 왜 起訴안 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關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公訴狀을 쓰자면 前大統領 全斗煥과 공모하여 이래가지고 이렇게이렇게 職權濫用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이것이에요. 공모하여라는 말 이것을 쓰기 싫어서 안한 것 같다 이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동하여 그래도 좋습니다.

다음에 賂物性 寄附金의 경우에 日海財團에 엄청난 액수의 寄附金을 낸 직후나 혹은 그 직전에 不實企業 解體로 인한 企業引受 또 「폼프」장의 內認可 이러한 特惠가 時期的으로

근접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것은 特惠를 주고 모금한 것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賂物罪로 起訴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檢察史上 처음으로 새로운 決定例를 수립한 것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公務員들 아주 편하게 생겼어요. 어지간 하면 賂物이 안 되도록 되었어요 이것이 만약 賂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까 말씀드린 것에 또 되풀이되는 듯 합니다마는 朴委員님께서 強制性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檢察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그 돈낸 사람들이 強制性 自體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냈다거나 강요당했다는 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強制性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朴相千委員 梁正模씨도 強制性이 없다고 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梁正模씨의 경우는 예외인듯 합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그 부분은 왜 職權濫用이나 公갈로 起訴안 했습니까? 梁正模씨한테 5億원반은 것은 起訴해야 할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前職大統領에 대해서는 刑事措置를...

○朴相千委員 아니 前職大統領은 刑事訴追를 안 하시더라도 거기에 關여한 사람들은 刑事訴追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는 拘束해서 起訴한 사람도 있는데 罪名에 그 犯罪事實을 추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前職大統領까지 起訴하고 안 하고를 長官께서 결정하시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梁正模씨 역시 直接的인 강요는 없었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朴相千委員 梁正模씨도 강요안 당했다고 그러다... 梁正模씨는 저희 5共特委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강요당했다고 陳情書씨가지고 다닌 사람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무슨 해체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

○朴相千委員 제가 직접 물을 때 강요당했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 調査가 객관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調査를 한다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생각하여서 제가 일괄 質問하겠습니다. 한꺼번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損費處理 國稅廳에 損費處理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며 전액 損費處理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不法인데 이러한 國稅廳의 不法處事에 대해서는 檢察이 어떤 措置를 취하셨는지 이따가 일괄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세대육영회와 새세대심장재단의 경우도 일해재단의 경우와 똑같은 職權남용과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일해재단의 경우와 함께 구체적인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일해재단과 새세대육영회 심장재단의 기부금 장부가 현재 기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領收證 하고 현저히 틀립니다.

예를 들면 애경유지 기부금인가 거기에 8,400萬원이 지금 영수증은 있는데 장부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장부를 일해재단과 새세대심장재단 새세대육영회의 장부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작성을 했고 이렇게 허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점을 調査를 안했다고 한다면 왜 調査를 안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섯째 質問입니다.

83年度 外國產 소導入에 관해서 당초 農林水産部가 책정한 5萬頭가 새마을운동본부 京畿道 支部長이 金斗煥 前大統領에게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소를 導入하게 해 달라 해서 7萬頭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檢察搜查에서 밝힌 결론입니다.

그런데 소를 導入할 당시에 소 2萬頭的 國內價格과 導入價格의 차액은 얼마이며 그 차액중 얼마를 基金으로 흡수하고 輸入業者의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 소

7萬頭를 누구 누구가 할당 맡아서 輸入을 했는지? 누가 이런 막대한 利權을 차지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全農民들이 알고자 원하는 사실입니다.

일곱번째 質問입니다.

大韓船株 事件에 있어서 윤석민이 株式 포기각서를 쓰도록 外貨流出을 윤석민의 不法行爲를 가지고 협박을 당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檢察은 그런 혐의없다고 인정했는데 당시의 安企部長 張世東씨가 財務部長官 鄭寅用으로부터 윤석민씨의 外貨流出 확인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나는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윤석민씨를 협박했다는 사람들이 이 外貨流出 사실을 무기로 쓸려고 했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시 財務部長官 鄭寅用을 調査하지 않고 搜查를 종결한 진짜 이유는 어디 있는 지?

지금 표면상의 이유는 鄭寅用씨 보고 檢察에 나와 달라고 수차 요구했으나 안 나오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檢察이 자진해서 나온 사람이 이 외에는 조사를 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5共非理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싸움사건에서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 조사하는게 원칙인데 이 막중한 역사적 성격을 지닌 사건을 조사하면서 鄭寅用이란 사람보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調査結論을 내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러 혐의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방금 그 사실에 대해서 鄭寅用씨를 조사 안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大韓船株인가 이 事件을 들고 나온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 事件의 非理를 캐기 보다는 搜查의 方法을 公開하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또 大韓船株 前社長인 윤석민씨의 外貨流出 사실은 드러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윤석민씨가 몇 사람 이원조씨 등을 고발하니까 告發한 事件을 아까 제가 지적했

듯이 정인용씨가 안 나와서 調査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 혐의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놓고 告發한 사람을 지금 外貨流出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배를 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민씨와의 對質問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 구속영장 발부받은 것으로 인해서 또 이 事件을 무혐의로 決定해도 항의를 할 사람을 없게 해 놓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事件搜查가 아니라 事件搜查를 요구하는 사람을 구속하므로 인해서 事件搜查가 안되도록 하는 행동을 지금 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搜查를 잘못했다는 次元이 아니라 대단히 부도덕한 次元입니다. 拘束을 하더라도 이 5共非理 事件調査가 완료된 이후에 같이 구속하든지 나중에 구속하든지 해야 할 일이지 정인용씨는 안 나온다고 소환도 않고 또 出張調査도 않고 윤석민씨는 옛날 事件을 들어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놔서 이런 식의 搜查를 해놔서 그리고 이 大韓船株를 인수한 韓進「그룹」을 調査한 결과 87年度 회사가 지금금 40億원을 이 會社増資 때 會長의 個人株式 납입대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인정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進「그룹」會長 조중훈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立件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質問입니다.

石油事業基金에 관해서 뭐라고 길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 中小企業 試作品開發費와 産業構造 조정용으로 3,700餘億원을 융자 또는 보조해 주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 3,700餘億원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융자나 또는 보조받은 企業體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장부를 調査하고 이 사람들이 政治資金을 낸 일이 있는지 없는지 調査를 搜查를 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만일에 이 부분을 搜查 안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골프」場 內認可 29件 중에서 유독 뉴부산「골프」場만 뇌물을 주고 다른 28個 「골프」場은 뇌물을 준 일이 없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른 28個 「골프」場에 대해서는 어떻게 調査를 했는지 다시 말하면 그 會社의 경리 장부와 그 會社手票의 추적을 해 봤는

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는 前産業銀行數地 낙찰에 관해서 서울시의 건의로 靑瓦臺에서 「롯데」에게 매각하기로 決定을 했기 때문에 다른 會社의 참여 없이 「롯데」계열 세 會社만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發表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가 豫算會計法에 公開競争入札을 하게 되어 있는 이 數地에 대해서 「롯데」에게 주어야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서울시가 이런 건의를 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公開入札을 하는 경우에도 靑瓦臺에서 業體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公開入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외양에 불과하고 실지로는 그 당시 執權者가 지정하는 사람이 낙찰 받는 모양인데 도대체 어떤 方法으로 저 같이 머리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特定業體에게 낙찰이 되도록 하는 지를 모르겠는데 搜查結果 어떤 方法으로 이렇게 特定業體한테 낙찰을 받게 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이 「롯데」에서 낙찰받은 잠실채비지에 대해서는 그 價格이 1,000億원을 넘기 때문에 아무도 응찰을 않고 「롯데」 한 會社만 응찰했다 이렇게 해 놔는데 이것은 入札公告는 어떻게 했으며 다른 財閥企業들이 거기에 응찰을 하지 아니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質問입니다.

美國産 쌀 도입에 관련하여 「코넬」社라는 쌀 輸出會社가 「로비」를 했기 때문에 이미 「퍼미」社라는 會社와 계약한 그 내용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副作用을 애기한 것을 檢察搜查發表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코넬」社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로비」를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코넬」社의 로비 내막을 조사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번째 質問입니다.

住岩「댐」과 陝川「댐」을 東亞建設과 隨意契約을 했습니다. 隨意契約을 한 이유로 東亞建設이 共榮土建을 張玲子事件에서 引受했기 때문에 손해가 많아서 隨意契約을 했다 이렇게 檢察 搜查發表文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豫算會計法 70條의 4 第1項 但書를 보면 隨意契約은 契約의 目的 事業의 성질 등에

비추어서 隨意契約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어떤 會社가 손해보았다고 해서 隨意契約할 수 있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또 豫算會計法 施行令 112條 第1項 各號도 隨意契約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東亞建設과 隨意契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이 工事의 성질상 분명하고 다만 이 工事が 대단히 큰 工事이기 때문에 일정한 資格이 있는 業體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制限競争入札이나 指名競争入札을 했어야 할 事案인데 이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일을 안고 隨意契約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豫算會計法 違反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搜查를 했는지 豫算會計法 違反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建設部는 이 契約後에 이것을 監査院에 通報하게 되어 있는데 監査院에는 과연 通報했는지 안했는지 밝혀 주시고 만일 通報를 했다면 監査院은 어떤 監査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契約과 관련한 뒷 거래를 搜查를 해 보았는지 안해 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세번째 質問이자 마지막 質問입니다.

이상과 같이 檢察의 5共非理 搜查는 獨裁權力の 腐敗構造를 밝혀서 다시는 이 나라에는 獨裁政權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함으로써 民主化의 土臺를 굳히고 權力者들의 職權濫用과 腐敗에 대하여 檢察權을 엄정하게 行使함으로써 檢察權 行使에 대한 國民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이렇게 해서 公權力이 威信을 찾아서 社會安定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 드린대로 또 長官께서 아까 처음 몇 가지 質問에 答辯하신 대로 檢察의 5共非理 搜查는 畧奪씨 夫婦를 제외하고 政治資金을 제외하고 5共和國에 기여했거나 5共和國 核心人物과 친한 사람을 제외하고 이렇게 무수한 聖域을 設定함으로써 사실상 眞相糾明을 하지 못한 채 終了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檢察이 力量이 부족해서나 檢事들이 識見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法律制度가 檢事は 檢察總長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또 檢察總長은 特定事件에 대해서 法務

部長官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 法務部長官은 大統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客觀的이고 中立的인 搜查를 못하게 되어 있는 檢察의 構造 때문에 이러한 事態가 빚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다소 攻撃的인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個人的인 非難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現行的 檢察法制를 가지고는 5共非理를 客觀的이고 中立的으로 搜查할 수 없이 환경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檢察에게 우리가 시켰다 이것이에요.

檢察은 5共非理를 搜查할 適格도 없고 中立的이 될 수도 없고 獨立的이 될 수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中立的으로 해라 하고 獨立的으로 해라 하고 공정히 해라 하고 요구했던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시킨 사람이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없게 하려면 獨立的인 檢事 政治的으로 中立的인 檢事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特別檢事입니다.

그래서 우리 野團 3黨이 지금 特別檢事法案을 成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質問을 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렇게 설명만 해 두면 長官께서 言及을 안하시지 모르니까 質問을 해 놓아야 答辯을 하실 것 같아서 質問합니다.

첫째 法務部長官께서는 野團 3黨이 提案해 놓은 特別檢事法案을 검토를 해 보았는지 또 검토를 해 보았다면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토조차 안 했다고 한다면 읽어 보시지도 안했다고 한다면 또 新聞報道를 보시지도 안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特別檢事法案에 대해서 짐짓 무성의 하신지 그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이 5共非理 搜查對象 縮小 또 5共 非主役들의 非理隱蔽 또 縮小 이런 것을 檢察이 했는데 과연 이 搜查結果를 國民들이 납득하고 따라와 줄 것인지 이 엄청난 非理와 不正을 縮小 隱蔽한 채 公權力이 強硬措置만으로 社會安定을 지킬 수 있을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 檢察權을 책임지고 있는 法務部長官으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特別檢事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法務部長官! 지금 朴相千委員이 質問을 한 데 대해서 지금 당장 答辯할 수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答辯準備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朴相千委員! 그러면 答辯準備를 하도록 하고 다음 質疑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朴相千委員 예.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다음에는 統一民主黨의 盧武鉉委員이 質問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統一民主黨 盧武鉉委員입니다.

원래 내용이 방대하고 事案도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統一民主黨에서는 구체적인 搜查에 관한 事件別로 各委員들이 分擔을 하였는데 本委員이 맡은 부분은 檢察搜查의 搜查 그 자체의 본질적인 방향과 한계에 관한 포괄적인 質問과 그 다음 구체적인 事件에 관해서는 國際「그룹」 및 聯合鐵鋼의 解體 그리고 새세대心臟財團에 관한 것을 묻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만 搜查의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부분은 長官이 즉시 答辯을 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 같아서 一括質問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事件搜查의 본질적 방향에 관한 부분은 政治的 判斷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 새로 書類를 찾아 보고 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政治的 判斷에 관한 부분은 卽問卽答으로 묻기로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質問함에 있어서 항상 質問과 答辯이 서로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一問一答인 경우에는 즉시 그것을 修正할 수 있지만 一括質問일 경우에 質問의 要旨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방향의 答辯이 나와도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는

데요. 이 점에 관련해서는 항상 質問을 解釋하거나 答辯의 焦點을 맞추는데 있어서 이 事件搜查의 目的部分에 그 기준을 두고 항상 質問을 解釋하고 答辯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報告書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지난 시대의 잘못을 청산한다 과거의 不正과 非理를 단호히 剔抉하여 再發防止를 위한 歷史的 敎訓으로 삼아야 한다 그 다음 國民의 疑惑을 풀다 이 목적에 항상 맞추어서 서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체적 事件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國際「그룹」의 解體에 관한 件입니다.

國際「그룹」의 解體에 관한 件에 대해서는 이 報告書에 聯合鐵鋼 部分을 빼고 나면 딱한 「페이지」 정도로 搜查를 終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事件이 搜查의 對象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의 疑惑과 國民이 疑惑을 가질만 한 사정 또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搜查의 端緒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이 한 「페이지」로 과연 國民의 疑惑을 풀 수 있을지 그래서 우선 몇 가지 구체적인 質問을 하겠습니다.

(李基澤委員長, 金重權幹事와 司會交代)

答辯함에 있어서 報告書 內容이 미흡하기 때문에 質問을 하는 것이니까 報告書를 다시 뽑아서 읽는 答辯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國際「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어서 해체 결정이 合法的이었는가 不法的이었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조사하셨는지 조사여부 또는 그 결론 引受社 選定過程에 있어서의 合法性與否 實査에 있어서의 公正性與否 金融 및 租稅惠澤의 合法性 및 合理性與否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결과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國民들은 이 점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合法的이지 않았을 때에는 항상 규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官僚 또는 銀行員이 왜 合法的이지 않은 일을 했는가 하는 데에 다시 의문이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不法을 저지른 부득이한 사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혀 내자는 것이 수사의 요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점이 合法性與否 그리고



不法이었다면 왜 不法을 公務員이 강행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아까 목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國民의 의혹을 풀다는 관점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聯合鐵鋼 實査에 대해서 이미 部分的으로 實査를 해서 일부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가 불 때에는 조무래기들만 잡아 넣은 아주 불공정한 수사라고 생각됩니다. 86년에 이미 지난 해에 조사해서 구속 수사하게 된 事件과 똑같은 내용 요지의 진정서를 檢察이 접수했습니다.

86年2月 釜山 地檢이 접수했고 그 외에 각 기관에 그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왜 檢察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종결했으며 그 당시에는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수사를 시작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東國製鋼「그룹」張相泰씨는 그 앞에도 그러지 않았고 그 뒤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84年 年末계부터 85년에 걸쳐서 엄청난 현금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현금... 새마을 새세대育英會 心臟財團 日海財團 등에 엄청난 多額의 현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企業引受와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企業引受와 관계가 없다면 왜 갑자기 이와 같은 현금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은 동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정신병이 도졌다든지 그런 사유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 새세대心臟財團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새세대心臟財團에 관련된 부분의 檢察報告書를 보면 의혹내용 부분에 서울시의 압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사결과를 보면 서울시의 압력 여부에 대한 아무런 調查結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압력이라는 의혹 내용에 서울시의 압력이라는 것을 기재하게 된 경위는 이것은 어딘가에 수사 단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수사의 단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都下 각 신문에 지금으로는 어떤 國會議員... 그리고 市有地를 싼 값으로 拂下했다가 비싼 값에

다시 轉賣하는 것을 승인했던 데에 관련된 것입니다. 새세대心臟財團이 이것을 韓信工營으로 轉賣한 것입니다. 이 轉賣는 地方財政法에 의해서 위법입니다. 도저히 轉賣를 승인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報告書에도 단순하게 施行規則 정도로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法律違反입니다. 중요한 것은 法律違反이 아니고 압력 여부에 관해서 전혀 조사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檢察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지금 都下 各新聞의 新聞報道나 本 特委 第1小委에서의 서울시 公務員의 證言內容을 혹시 전해 들으시지 않으셨는지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 제가 왜 이 惡役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本 特委所屬 어느 國會議員이 서울시 公務員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靑瓦臺의 政務第2首席 秘書官으로 있으면서 公務員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法律上 안되는 것을 되게 했다 라고 新聞마다 報道가 다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왜 搜查를 하지 않았는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李鶴捧씨가 聯合鐵鋼의 株式讓渡와 관련하여 職權을 濫用했다 라고 하는 犯罪事實의 내용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를 밝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다면 당연히 刑事處罰이 같이 되어야 하고 刑事處罰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점 밝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전혀 搜查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搜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質問입니다.

다음은 檢察의 搜查에 관한 政治的 評價에 대해서 몇마디 묻고자 합니다.

長官께서는 本委員보다는 法曹界의 大先輩이 십니다. 이는 이 자리에서 證言을 하심에 있어서는 적어도 民主主義와 法治主義의 정신이라는 이런 큰 정신 民主主義의 大原則을 먼저 전제하고 法曹人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 答辯에 있어서 아까 報告書에 역시 나와 있듯이 이 搜查가 재발을 방지하는 歷史的 教訓으로서 남아야 한다는 그와 같은 當爲 그리고 報告의 末尾 부분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第6共和國의 檢察은 과거의 불명예를 씻고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檢察이 되어서 正義社會를 구현하는 역군이 되는 檢察像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런 역사적 사명을 생각하시고 그런 歷史的 觀點에서 法曹人으로서 法曹의 선배로서 귀감이 될 만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治的 答辯은 일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問一答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第5共和國의 非理에 대해서 굳이 檢察이 特別搜查部를 만들어서 조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말씀하신 바와 같이 5共和國 時代의 非理에 관한 國民의 의혹을 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盧武鉉委員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國民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本委員이 다시 물어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最高統治權者와 그 權力을 받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도 法的 評價를 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건 소위 그래서 權力型 犯罪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 사건에 대한 國民들의 가장 큰 關心事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점이 있습니까?

最高統治權者와 그 統治權者를 政治的 行政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權力의 책임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犯罪의 主體가 되었다라는 것이 소위 5共非理라는 것의 本質아닙니까? 그 외에 5共非理가 특별하게 취급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결국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5共 時代에 權力에 앉았던 분들의 잘못을 따지는데 있겠지요.

○盧武鉉委員 그런데 이 搜查의 방침에서 보면 全大統領에 관련된 것과 政治資金에 관한 부분은 搜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事件의 本質은 調査하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이 事件에 있어서 가장 頂點에 누가 있습니까?

檢察에서는 어떻게 보아도 좋습니다. 國民

의 의혹을 풀기 위한 搜查가 때문에 國民이 이 5共非理의 가장 頂點에 누가 있다고 믿는다고 보십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우리들이 지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첫째 이유는 과거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왜 잘못했는지 원인을 밝히고 處罰할 사람은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主目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本委員이 물은 것은 목적을 물은 것이 아니고 國民들이 이 구조적인 5共非理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책임에 누가 있다고 보느냐 그렇게 質問했습니다.

다른 答辯 필요없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 견해는 이렇겠지요. 결국 全斗煥 前大統領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되었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무조건 변명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목적이 있다면 7年間 자기 댄에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國家의 元首로서 한때 날리던 그 全斗煥大統領이 TV를 통해서 國民 앞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一般的으로 생각할 때 最高頂點의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위세를 부리던 사람이 國民 앞에 나타나서 참으로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경우에 저의 소견은 一般國民들이 야! 大統領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모두 다 그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듣기 싫지만 변명을 조금 들어주십시오. 또 저희가 소위 國家刑罰權을 發動하는 것은 그 犯行을 한 特定個人을 응징하는데 목적도 있지만은 앞으로 그런 犯罪를 하지 않도록 豫防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떤 犯罪를 지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犯罪人을 다 잡을 수도 없거니와 또 다 잡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한번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것 같으면 全斗煥大統領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雪嶽山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釜山을 가 보니까 깊은 산

중입니다. 入山修道中에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3族을 멸한다고 했는데 全斗煥大統領의 경우는 거의 3族이 다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밑에서 한때 第2人者라고 일컬어지던 張世東씨가 지금 잡혀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왜 이 사람들을 제외하였는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까. 國民들이 어느쪽으로 보느냐까지만 물었습니다.

다른 委員들한테 시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質疑하고 答辯하는 것이지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과연 옳은가 그런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이다 잘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취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委員 長官께서는 그것이 第5共和國의 檢察이 檢察로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 하였던 그래서 잘 이렇다 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옥된 歷史를 청산하고 과거의 불명예를 씻고 거듭 태어난 檢察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長官으로서 후일의 檢察에게 歷史의 귀감으로 남기는 말씀으로 담아줘도 좋겠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은 저의 소신을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檢察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정도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제외할 法的 根據는 없는 것이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그렇겠지요.

○盧武鉉委員 그 다음 再發防止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事件의 가장 中心의이고 核心的인 地位에 있던 사람이 빠져 나가면 또 그 核心的인 地位에 있던 사람을 또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어떻게 再發防止의 목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見解가 조금 다른 듯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大統領이 사과할 정도면 이번에 다른 大統領도 잘못 하다가는 또 사과하고 큰일 나겠다. 이렇게 다 알 것 같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럼 다르게 묻겠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法治主義를 얘기했고 民主主義의 原則을 앞에서 굳이 내세운 이유가 長官이 이와 같은 答辯으로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答辯을 어려워 하실지 혹시나 그렇게 미리 적어두면...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報告書에 의하면 全斗煥大統領이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 全斗煥 이름 안에는 李順子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까? 李順子씨도 당연히 제외되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全斗煥 夫婦를 생각했습니다.

○盧武鉉委員 報告書에는 李順子씨 이름이 없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全大統領과 그 婦人을 제외한다는 뜻은 그들의 法的 責任에 관련된 문제만 제외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調査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法的 責任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調査가 필요할 때 그 調査까지도 免除한다는 뜻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前職大統領 夫婦에 대해서는...

○盧武鉉委員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法的 責任은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法的 責任이 면제된다고 해서 그 사람 아니면 소위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한 不正과 非理를 척결하는데 決定的인 端緒가 되는 여러 가지의 證據가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調査까지도 免除시켜 주는 것이 바로 免除한다는 뜻의 취지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이 여러 가지 見解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檢察이 전부 다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처음 搜查를 開始할 때에 方針을 묻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를 지키다 하여 調査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構造的이고 組織的인 犯罪의 가장 中心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 하면 調査 하나마나 아닙니까? 무슨 調査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정을 밝히는 방법은 前職 大統領 搜查外에도

그 搜查만이 반드시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증거 수집을 하면 調査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읍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있겠지요.

○盧武鉉委員 한 大統領에 대한 예우를 말씀하시는데 法的 責任을 나중에 면제한다 할지라도 한 시대의 잘못된 구조를 밝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歷史的 교훈으로 삼자고 얘기했지요?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歷史的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만한 한 시대의 非理 부정의 구조를 밝혀나가므로써 민족의 장래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예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만 이것은 꼭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本委員의 입장으로는 처벌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히고 그 다음에 사면이라는 방법은 지금까지 政治圈에서 많이 거론되었읍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히고 사면할 수도 있는데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다 이나라의 지식인이 權力과 결탁해서 무슨 부정을 저질렀는가 이 나라의 行政官僚가 또는 이 나라의 많은 權力者들이 국민과 歷史 앞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調査도 못한다 이렇게까지 예우를 해야 될 만큼 그런 사람의 調査에 필요한 資料를 찾아내는데 필요한 것 까지도 물어보지 못한 만큼 이 사람의 인품이 정말 존중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존중되어야 될 만큼 이 사람의 우리나라 歷史發展에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이 報告書에 歷史的 교훈이라는 말은 해야지요. 歷史的 교훈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答辯해 주세요. 長官님의 소신은 한번 答辯이 되면 영원히 長官님의 語錄에 남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맞습니다. 이게 자꾸 되풀이 되는 말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취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金斗煥 前大統領 夫婦를 調査하지 아니한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도 그 당시의 非理가 많이 폭로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으로 해서 국민들은 또 金斗煥 前大統領

夫婦에 대해서 원성도 일어나고 있고 또 소위 우리 公務員 입장 같아서는 아마 公務員들이 잘못하다가는 큰일나겠다 하는 그런 참그야말로 그것을 크게 말하면 歷史的 교훈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本委員이 다른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5共和國이 끝나기 전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을 뿐 다 알고 있었고 지금 檢察이 발표한 수사내용 보다도 훨씬 더 세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폭로되어서 몇사람이 망신당했다고 해서 이것이 재발방지될 만큼 귀감이 되지 않고 이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國民들이 다시는 이런 일 안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효과 보다도 얼렁뚱땅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다. 재주만 잘 치면 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것을 해도 國會議員만 되면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다. 어떻게든 새로운 權力하고 줄을 빨리 잡으면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고 國民들은 역시 재주 잘 치는 사람이 잘살게 되고 큰소리치는 세상이라는 이런 잘못된 풍조를 소위 잘못된 歷史的 교훈을 남기게 되는 이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答辯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하셨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盧武鉉委員 그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이 事件을 왜 1月末까지 꼭 종결했어야 합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저는 政局이 5共和國非理搜查에 매달려 있고 또 그에 따라서 國務委員은 말할 것도 없고 公務員들도 5共和國非理外에는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막상 저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아시다시피 法務部長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傘下에 檢察을 가지고 있어서 소위 法秩序를 확립해야 할 책임의 일단을 가지고 있는데 5共非理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미처 다른걸 생각하지 못 하니깐 지금 民生

治安도 영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國民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報告書에도 간단히 언급했음니다마는 우리 檢察은 惡인이 그렇게 평안하게 베드에서 잠 잘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事件이 일어나고 있고 國民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바당에 이 5共和國非理에… 아마 盧委員님이나 여러 野黨委員이 생각할 정도로 전부다를 조사하면 幾年 걸릴 것입니다. 幾年 사이에 民生은 영망이 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月31日날 끝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때 조사하더라도 이러한 5共和國非理問題는 우리 檢察로서는 끝내는 것이 國家 社會秩序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잘못되었어도 양해해 주시고…

○盧武鉉委員 그 시기설정에 있어서도 역시 政府與黨의 방침을 고려한 것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반드시 방침을 고려했다 안 했다… 政府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 같고…

○盧武鉉委員 그 정도 간략하게 答辯해 주십시오.

5共和國非理搜查 때문에 治安을 유지하지 못할만큼 다른 治安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만큼 엄청난 搜查에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부담이라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부담보다는 저희들 任務지요.

○盧武鉉委員 그러면 本特委에서 조사하는 것이 5共和國非理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治安이나 民生에 좀 어렵게 작용한 民生은 곤란하게 만든 어렵게 만든 그런 요인도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特別搜查部에서 本特委에서 조사한 것 보다 좀더 많이 조사한 것은 더깊이 들어가서 國會에서 밝히지 못한 것을 더 밝혀낸 것은 어느정도가 있으며 지금까지 搜查權이 전혀 없는 그리고 강제권도 없는 記者들이 다니면서 취재해놓은 것 보다 조금이라도 더 밝혀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盧武鉉委員 아주 政治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많이 풀어 주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서 잘 말씀…

○盧武鉉委員 아주 政治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많이 풀어 주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시다시피 刑事訴訟法上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盧武鉉委員 그것은 본시 전제된 것 아닙니까? 刑事訴訟法上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본시 전제된 것이고 국민의 의혹을 풀겠다고 搜查를 착수했다면 착수할 당시 보다 끝났을 때 좀더 국민이 시원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시원해졌습니까?

한계가 있었지요? 좋습니다. 주관적 판단이니까 그 정도 지적만 해놓으시다. 한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밖에야 國會가 調査하게끔 내버려 두지요. 그 바쁜 檢察에서 이것 왜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政府 與黨에서 1月이면 特委를 종결하고 政治를 特委局面에서부터 탈출시킨다 바꾼다. 局面을 전환한다는 이런 政治的 계산이 깔린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轉機가 필요하다 그래서 檢察이 搜查를 하는 척하고 特委 앞에 가가지고 이것 저것 메뚜기 쫓을 것 다 쫓고 대충 담아 넣을 것은 잡아놓고 쫓아버릴 것은 다 쫓아놓고 지금 特委에서 그물을 치고 있는데 그냥 물에 돌던지고 蟹방을 놓아가지고 고기 다 쫓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대충 마무리 해가지고 이지요 하고 내놓고 딱 政治적으로 마무리 짓자는… 지금도 꼭두각시놀음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우리 檢察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좀더 調査를 해야죠. 시작을 했으면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國民이 가장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本委員이 國際件과 新世代心臟財團에 관한 件에 대해서 더 質問이 나올 수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시작하지 말아야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理想的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國民이 만족하시고 모든 議員님이 만족

하시고 與野가 一致하는 그런 搜查가 있었으면 그 이상 뭐 더 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人力의... 사람의 能力의 限界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 제가 辨明같은 말씀을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搜查를 일정한 범위를 搜查範圍에서 제외하고 또 야가 搜查를 일정한 부분에서는 搜查를 하지 않기로 하여튼 搜查의 限界를 스스로 設定한 部分 그것은 長官의 方針입니까? 總長의 方針입니까? 個別檢事의 方針입니까? 그것을 밝혀주시시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은 檢察의 方針입니다. 檢察의 發表일과 동시에 檢察이 저한테 報告도 해왔습니다.

○盧武鉉委員 따라서 檢察의 方針이라는 것은 檢察總長의 方針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따라서 個別檢事로서는 좀더 깊이 搜查를 하고 싶어도 그 限界에 부딪쳐서 搜查를 할 수 없었겠네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檢事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個別檢事가 搜查하는데 뭐 저지 시켰다 그런 말은 못들었습니다.

○盧武鉉委員 제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하려 한다고 하면 長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하게 해야 되겠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시다시피 長官이 個個事件에 대해서 關與를 하지 않습니다. 方針만 정합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總長이 設定한 限界는 個個 檢察이 넘을 수 없는 곳이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盧武鉉委員 그렇습니다.

法律上 檢事가 犯罪의 嫌疑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調查를 하지 않고 멈추는 것은 職務遺棄가 되지요?

違法性阻却事由라든지 責任阻却事由는 別個로 해두고 法律로...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 職務遺棄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異見을 가집니다.

그것이 많은 時間이 걸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檢察은 소위 檢事라 하는 사람들은 檢察權을 發動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犯罪가 하나 있다 이것 잡는다 저것 잡는다 물론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안잡아도 될 소소한 枝葉末端만 잡는다고 檢察力을 거기에 소모를 다 해버리고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것을 안하면 秩序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檢事가 搜查를 안했다고 무조건 職務遺棄가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盧武鉉委員 만약에 그 판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調查를 해 들어가다가 그 事件에서 명백하게 다른 事件이 아니고 調查하려고 시작했던 事件이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인 줄 알고 調查를 했는데 가보니까 B쪽으로 분명히 밝혀지는데도 調查를 멈춘다 그래도 檢事는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一般論으로는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團東을 해보면 여러 사람이 걸려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잡아 넣는다는 것도 그것은 國家權力 檢察權의 濫用입니다. 矯導所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잡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놈을 잡아넣어도 이것은 잡아넣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檢察權의 發動은 성공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檢察을 指導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만 제 質問 마치고겠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辨明을 해서 죄송합니다.

○盧武鉉委員 나중에 個別問題에 관해서 그 答辯에 대해서 補充質問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重權 다음은 新民主共和黨 金炫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炫委員 新民主共和黨 金炫委員입니다.

조금전에 盧委員님께서 質問하시는 중에 몇 가지 다시 疑心나는 것이 있어서 長官님에 대해서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長官님 말씀이 옛날에는 3族을 멸했는데 그 분한테 가보니까 고생 많이 하고 뭐 하더라 했는데...

○法務部長官 許亨九 제가 가 본것이 아니고 몇年前에 제가 登山갔을 때 그리 가 보았는데 순 산골짜기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訂正해 주십시오.

○金 炫委員 長官 말씀에 아까 그렇게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長官은 大韓民國 法務部長官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金 炫委員 맞습니까? 公職者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金 炫委員 지금이 君主主義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닙니다.

○金 炫委員 옛날에 王이 3族을 멸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나던 그 당시인데도 지금 엄연히 憲法에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利는 國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분 한 사람의 장난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밑의 庶民들에게는 失策에 의해서 數千名이 죽어갔다는 事實을 생각할 적에 그래도 그렇게 寬容을 베풀어야 됩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數千名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金 炫委員 光州事態등등... 모든 5共非理事實이 三清敎育隊 등등 數千名이 그분 하나의 政策 잘못에 의해서 數千名이 목숨을 잃어 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長官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죽은 政丞 보다 산 거지가 낫다고 합니다. 옛날로 따지면 지금 長官이 옛날 政丞이겠지요? 죽은 政丞 보다 산 거지가 낫다는 옛 어른들 말씀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長官님이 前職 大統領에 대한 禮遇를 하지만 여기는 國會입니다. 國會라고 하는 것은 本委員이 알기로는 國民의 代表者들이 모여서 國民을 代辯해서 하는 얘기고 울부짖는 얘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알겠습니다.

○金 炫委員 質疑에 들어갑니다. 우선 제가 이 五大洋事件을 가지고 5個月동안 法醫學冊 3卷을 외위하면서 열심히 해온 當事者입니다. 그 5共和國事件에 그 많은 事件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事件을 다루느냐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한데 檢察發表에서 하나의 疑心點을 우선 長官에게 물어봅니다. 전번 發表때는 이경수 이영호 이재호 셋이 29名을 죽이고 이경수가 맨 마지막에 自殺을 했을 수가 있다 했다가 이번에 난데 없는 김길환이라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사람하고 같이 죽었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原因이 어디에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一問一答입니까?

○金 炫委員 예. 一問一答입니다.

아! 옆에서 答辯해주셔도 좋습니다. 왜 저는 一問一答을 要求하느냐 하면 與黨委員님들 미리 이 質疑書하고 사진하고를 다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틀전에 복잡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答辯해 주십시오. 一問一答입니다. 答辯해 주십시오.

○法務部長官 許亨九 모아 가지고 答辯드리도록...

○金 炫委員 아닙니다. 그럼 제가 거시기를 하지요. 제가 答辯을 할테니까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 調査한 檢事가 다 나누어 준 사진에 보면 미안한 얘이지만 屍體 맨밑에 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屍體 맨밑에 이영호라는 사람이 쌓여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었을 수"라는 것은 常識이하의 얘기가 됩니다.

또 이영호는 死斑이 背部에도 있었고 발바닥에도 死斑이 있었고 등등 최소한도 목이 5時間 이상 매달려 있던 屍體라는 것을 法醫學으로 證明하는 것입니다. 그런 屍體가 맨밑에 있었다는 寫眞 證據를 내세우니까 檢察이 갑자기 옛날 縊死였던 것을 絞死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檢察發表自體를 어떤 때는 縊死도 되었다 自殺도 되었다 어떤 때는 絞殺도 되었다 했는데 그럼 이 發表自體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여쭙어 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우선 一般論을 얘기 할 때는 이 搜查過程에 따라서 그 단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다르더라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答辯을 종종드리는 것 같

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金 炫委員**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제가 지금 長官님께 여쭙어 보는 것은 제가 원래 忠南道라 이해를 해주십시오. 분명히 32名이나 죽었던 사건이고 檢事가 5名씩 가 있던 事件이고 京畿道警局長을 搜查本部長으로 해서 忠南道 搜查課長 京畿道 搜查課長을 副本部長으로 해서 엄청난 警察力을 投入했던 事件입니다.

그런 事件에서 屍體가 맨 밑에 쌓여 있었다 등등 정도도 보지 않고 搜查를 해서 그 사람이 단순히 醫師剖檢書에 「닥터」들 剖檢書에 縊死로 본다 라는 말 한마디가지고 對國民에게 檢察發表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저희 檢察이 잘못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 지금 현재는 잘... 그點 나중에...

○**金 炫委員** 제가 얘기한 그대로만 가지고 하신다면 그 많은 人力이 投入이 되어서 屍體가 이렇게 밑에 있었던 사실 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發表를 한 檢察은 大韓民國의 公職者들입니다.

한 사람의 政策失敗나 한 사람의 判斷 잘못으로 해서 엄청난 國民들이 의혹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自殺한 사람이 열두 사람이나 됩니다.

檢察發表文에 대한 質問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法務部檢察局長 金有厚** 죄송합니다. 만일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檢察局長입니다.

檢察發表는 단순히 醫師의 剖檢書라든가 死體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 한 두가지만 가지고 저희가 發表하지는 않았읍니다. 저희는 關係者의 證言이라든가 그동안 여러번에 걸친 調査를 모든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檢事로서의 判斷에 따라서 發表를 해왔습니다.

○**金 炫委員** 됐읍니다.

그러면 지금 現在 大韓民國法에서 모든 屍體를 다루고 있고 搜查權을 가지고 있는 것은 警察입니까? 檢察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警察이 주로 搜查를 하는데 搜查指揮權은 檢察이 가지고 있습니다.

○**金 炫委員** 現 搜查權은 警察에게는 없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搜查權이 있습니다.

○**金 炫委員** 그 사람들이 任意的으로 - 搜查할 수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 原理를 말씀드리자면...

○**金 炫委員** 아나 搜查權이 어디 있는가만 정확한 現行法上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現行法上 搜查權이 檢察에도 있고 警察에도 있습니다.

○**金 炫委員** 이런 殺人事件이나 등등에 대한 搜查權이 警察에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있습니다.

○**金 炫委員** 분명히 알겠읍니다.

다음 死體에 대한 指揮權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死體檢屍는 檢事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 炫委員** 死體에 대한 모든 것은 檢察이 하게 되어 있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러나 司法警察官도 指揮를 받아서 檢屍할 수 있습니다.

○**金 炫委員**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그것은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 炫委員** 이 事件이 어느 정도로 國民에게 의혹을 사는데 檢察이 責任이 있는지를 우선 한가지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大田市長 官印이 찍혀서... 아까 쪽 나누어 드렸읍니다. 이 寫本은 29日 새벽 1時서부터 11時까지 났다고 警察이 發表를 했습니다.

한데 이 火葬場에 간 屍體를 보니까 전부다 "27日날 未詳" 죽은 것으로 이틀씩 당겨서 死亡確認을 하였습니다.

이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自殺이든 他殺이든 死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屍體 自體 死體입니다. 證據物이 되는 것은 유일한 屍體인데 그 屍體를 이틀씩 死亡日字를 앞당겨가면서 大田市만 그런 것이 아니라 京畿道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쪽 道에 다 이틀씩을 앞당겨가면서 火葬을 30日 다 시켜야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法務部長官은 그 당시 그 死體에 대한 責任을 져야 될 檢事에 대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法務部長官 許亨九 같이 答辯하는 게 안중섭니까? 나중에 모아가시고...

○金 炫委員 그대로 答辯해 주십시오.

○法務部長官 許亨九 제가 지금 우선 常識으로는 그렇습니다.

殺人事件이다 變死事件을 調査를 해보면 아주 專門家가 아니면 死後經過時間을 鑑定하는데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젊을 때 뒷사람보고 제가 그런 것을 建議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大韓民國에는 法醫學을 專門하는 醫師가 없기 때문에 殺人事件을 조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으니까 法務部에서 豫算을 확보해서 法醫學者를 양성하자 하는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醫師들이 물론 專門家니까 우리 檢事보다는 낫습니다마는 法醫學 해가지고는 밥을 먹기가 힘드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醫師 불러놓고 法醫學 鑑定해 보면...

○金 炫委員 長官님! 됐습니다. 答이 다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간략하게 質問을 하지요.

29日 1時서부터 11時까지 죽었고 剖檢醫들이 도착한 것이 그날 저녁... 30日 아침 10時부터 剖檢을 시작하면서 剖檢醫들은 절대 死亡時間을 떼지 않습니다.

빨리 火葬을 해서 끝내야 되니까... 檢事 指揮를 한 것을 읽어드리지요.

“死體 檢屍하여 死因 규명후 他殺의 혐의가 없으면 遺族에게 引渡할 것...” 이것 通例의인 얘기입니다. 死體는 遺族에게 引渡하고... 引繼하고 無緣故者는 行政處理할 것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이것을 꼭 長官님께 여쭙 봐야 되느냐... 30日 모조리 火葬을 시키라고 종용을 하다보니 우리 大韓民國法上 火葬場에서 死亡確認이 떨어지고 24時間이 지나지 않으면 火葬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現行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윤 회실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30日 가서 바로 火葬을 시키려니까 29日 10時면 10時에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30日 10時以上에 매는데 剖檢醫가 아까 長官님께서 말씀하듯이 時間을 못적으니까 29日 죽은 것으로 못만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28日 죽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時間을 쓰기 싫으니까 28日 죽은 것으로 만들어야 30日 火葬이 됩니다. 28日 몇時라고 못적으니까 “27日 미상” 해놓으니까 30일부터 얼마든지 火葬을 시켰고 하나 여기서 급기야 의심가는 것은 뭐냐?... 어느 남편이 그 부인 하나를 나간지 3·4年 되어서 자식도 안보던 년 내가 왜 인제사 屍體 引受하나 해가지고 引受을 안했습니까.

그랬더니 뒤에 붙인 것이 “死體는 遺族에게 引繼하고 無緣故者는 假埋葬할 것”하는 現行法을 따르지 않고 보통 假埋葬을 해야 되는데 “行政處理할 것” 해서 洞長이 1萬5,000 원인가를 내고 할 수 없이 火葬을 했습니다.

그러면 死體를 그렇게 빨리 하루만에 이틀만에 剖檢 끝나자마자 그날 다 없애야 되는 것은 證據湮滅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쨌든 變死體에서 지금 現行法에 假埋葬을 시켜야 되는데 대개... 他殺 혐의가 있으면... 하면 분명히 29名은 檢察報告 말마따나 32名이 있다가 3名한테 죽임을 당했던 2名한테 죽임을 당했던 한 명한테 죽임을 당했던 교살당했다 했습니다. 絞殺은 他殺인데 그 교살당한 屍體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루만에 火葬을 一律的으로 시키셨나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누가 火葬을 시킨 사람이 있었는가요? 그것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것 警察官들이 자기들이 그냥 火葬을 시킨 것 아닙니까?

○金 炫委員 그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死體에 대한 責任은 兩쪽 道에서 한 道만 그렇게 되었다면 혹시 이것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 그렇지만 京畿道 忠南 똑같이 27日 字로 死亡診斷이 다 人爲證明... 洞長들이 붙여서 심지어 그 洞長은 내 관공비에서까지 꺼내가지고 할 수 없이 火葬을 했습니다 하나 그렇게 死體處理가 될 수 있을까요?

○委員長代理 金重權 金委員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金委員께서 質問의 방향이나 要旨들이 事實確認에 관한 具體的 事件을 말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國務委員인 長官으로서 具體인 事件을 모르기도 하려나와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충실한 答辯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가장 정확히 알고 가장 客觀的으로 알려고 하면 그것을 搜查한 檢事나 또 搜查官을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金委員께서 바라는 것도 形式的인 그런 答辯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專門的이고 客觀的인 答辯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具體인 事件에 관한 事項에 대해서는 一括해서 質問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준비한 충분한 答辯을 들으시고 그것이 부족하시면 다시 補充質疑를 통해서 파헤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本 委員長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政治的인 판단에 관한 것이나 價値判斷에 관한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一問一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金委員께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金 炫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님!

제가 지금 質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꼭 아프게 씹는 것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長官에게 물어보는 것은 현재의 견해... 정확한 것을 이런 경우일 때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 것이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이것이 이런 추측을 가지고 證明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일이 떼어서 앞에 갖다놓아 드렸습니다.

이 事件은 檢察報告에 의하면 29日 1時서부터 11時까지 죽었다고 했는데 꼭 드렸으니까 보시면 전부 다 27日 死亡한 것으로 떼어져서 火葬이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大韓民國에서 있을 적에 앞으로도 있어서 될까요? 그것만 答辯해 주세요.

(金重權幹事, 李基澤委員長과 司會交代)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서는 안되지요.

○金 炫委員 안되지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리고 이 事件의 문제

는 누가 죽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事件全體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部分的으로 그런 節次的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搜查가 전부 잘못됐다 그렇게는 答辯드리지 않습니다.

○金 炫委員 제가 지금 長官님에게 물어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國民의 代表로서 32名씩 죽어갔고 이로 인해서 빛을 잃어서 16名이 죽었고 全國民이 이것을 5共에서 다루어봐라 했기 때문에 지금 5共和國 非理의 문제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어느 한두사람의 質問은 아닌 것으로 알아주십시오.

그것은 잘못 된것이지요.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死體를 이렇게 갑자기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없애면 이 檢察이나 혹은 搜查官들이 證據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안되지요.

○金 炫委員 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長官님께서 분명히 公職者라고 그랬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公職者입니다.

○金 炫委員 公職者이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公職者입니다.

○金 炫委員 大韓民國 國民이 뽑은 大統領이 任命했기 때문에 長官님이 되신 것이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그렇습니다.

○金 炫委員 현재 國立科學搜查研究所는 私設機關입니까? 무슨 機關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도 官公署입니다.

○金 炫委員 國立科學搜查研究所지요?

그것 왜 만들었다고 法務部長官은 생각하십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물으시는 뜻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걸같아서 제가 答辯하기가...

○金 炫委員 꼭 필요하기 때문에 國民의 稅金을 써가면서 公務員들을 두고 하는 것이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렇지요. 물론...

○金 炫委員 그런데 우리 大韓民國 檢察은 國民의 稅金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 國立科學搜查研究所에서 나온 剖檢書를 내가 필요한 것은 한두個 고르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認定하지 아니한다 이럴수 있습니까?

다른 反證이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가 犯罪搜查를 하는데 혹은 法律問題를 따져볼때 法律事實과 관계되는 어떤 사실 혹은 어떤 犯罪事實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실이 있고 證據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調查해보면 물으면 엉뚱한 말을...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그것은 사실은 전혀 事件과 관계가 없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에 우리 檢事는 그 중에서 이 事件判斷하는데 證據가 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적으라고 하고 그 중에 證據가 되는 것이 있고 證據가 안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다. 事件에 관계되면 필히 해야 되고 관계없는 것은 안 해도 된 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렇습니다.

○金 炫委員 그러면 女子의 死體를 다룰적에 가장 먼저 醫師들이 가거나 檢事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必須的입니다.

女子死體가 있으면 제일 첫번째의 가서 다루는 것이 어디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性犯罪나 이 말씀입니까?

○金 炫委員 臍을 다루게 되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金 炫委員 그 臍을 다룬 상태를 틀림없이 國立科學搜查研究所에서 아까 보여 드렸지만 지금 현재 SM「테스트」에서 이렇게 寫眞까지 찍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檢察發表에는 酸性磷酸尿素라고 하는 것은 人體內 어디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陽性反應만 가지고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했는데...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은 醫師말이 아닙니까? 醫師말을 인용해서...

○金 炫委員 檢察發表에도 醫師말을 인용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國立科學搜查研究所에서 다시 答辯을 한 것을 보면 學問上으로도 인정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내가 물겠습니다. 그러니까 包括적으로 우선 묻고 일일이 質問들어 갑니다.

그러면 열명의 醫師中 한 사람의 견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 國立科學搜

査研究所에서는 「닥터」가 몇 분이나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계시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러시겠지요.

○金 炫委員 한사람 의견보다는 여러사람 의견이 낫겠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酸性磷酸尿素가 전체에 다 퍼져있어서 이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제가 배운 學說로서는 우리몸안에 있는... 男子 몸안에 있는 精液은 酸性磷酸尿素가 白血球에 4,000倍 以上 있기 때문에 S·M「테스트」는 어느 일정한 試藥에 의해서 그 농도 이상이 되어야 染色이 되는 것으로 되기때문에 현재 오늘도 우리 大韓民國 國立科學搜查研究所에서는 男女關係 性犯罪에서는 이 S·M「테스트」方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日本도 쓰고 있고 한테 유독 12名이나 나온 陽性反應을... 이렇게 寫眞까지 찍어놓은 것을 醫師 하나가 나는 인정하기 싫다라고 했고 전번 틀림없이 최상규박사 當事者 4명은 틀림없이 저희들은 正常的으로 해서 國立科學搜查研究所의 職員으로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안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國會에 나와서 答辯을 했습니다. 當事者는 그러면 지금 博士의 말을 引用했다고 하는 것은 國立科學搜查研究所에 가보면 1課 2課해서 生物學課 動物學課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變死體를 보면 胃液 精液 등등을 전부다 갔다가 剖檢醫들이 일일이 檢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生物學者들이 일일이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이 대개 物理現象으로서 앞에 나오는 剖檢醫의 방법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무슨 「테스트」 무슨 「테스트」醫學「테스트」는 剖檢醫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生物學者들이 하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들 말을 하나도 안 믿어 주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앞뒤가 다른 모순이겠습니까? 앞으로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最小限度 國立科學搜查研究所長 누구해서 도장찍어 나온 이 公證書와 똑같은 書類를 인정 안하신다면 저부터도 長官님을 인정 안하고 質疑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죽은 사람과 특수한 관계라든지 나중에 搜查를 해 보니 그 중에 내 동생이 있다 그 犯人으로 추적되는 사람이 科學搜查研究所의 所長이다하

는 특수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으로 拒否할 방법은 있어도 어느 醫師 하나가 採擇을 안했다 그래서 안할 자신이 있나오. 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檢察發表에 의하면 천장에서 3日씩 生活해서 意識不明化 되다시피하고 분명히 男子 넷 女子 28명이었었는데 男子넷이 12名 調査한 12名 全體에서 精液反應檢査가 나왔습니다. 陽性이... 이를 科學的으로 얘기하면 絶對性에 의해서 안되지만 우리 一般生活로 한다면 28名을 調査했다면 28名이 다 나온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고로 4名이 28名 다 관계할 수 없고 最小限度 12名을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内部的 所行은 아니다 기다라는 아주 중요한 判定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데 그런 문제를 아까 長官님 말씀대로 꼭 이 관계하고 꼭 필요하면 採擇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採擇할 용의가 없는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우리 金 炫委員께서 그 事件을 깊이 연구하신 데에 대해서 敬意를 정말로 표합니다.

제가 젊을 때 아닌게 아니라 強力事件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殺人事件을 많이 調査해 보았는데 精液에 관한 한 불행히도 제가 별로 그런 事件을 못해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專門的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結論的으로 물으시는 것은 누가 누가 말하는 데 그것을 採擇안해도 좋으냐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實體的 眞實을 判斷하는데 있어서 그 量이 많으니까 無條件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判斷이 반드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직접 調査를 안해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個中에 짜가지고 5名 6名이 가령 싸움을 했는데 저 사람이 때리더라 그 중 한 사람 안때리더라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봐야지 한사람 말이... 그 사람 말이 다섯 사람 6名 말보다 더 實體的인 眞實에 일치된다고 생각할 때 역시 그 한 사람 말을 갔다가 證言으로 採擇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런지 안그런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一問一答하시니까 결국 제가 推象的인...

○金 炫委員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144回 非理調查特委 2小委 할적에 「페이지」 參考人 최상규 그 당시 生物學者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네사람이 했고 그것은 틀림없이 믿어도 됩니다. 實務者로 현재도 國立科學搜查研究所 2課 生物學 博士... 현재도 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는 사람이 믿어야 된다 當事者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체험한 事件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大邱에 제가 檢事를 하는데에 어떤 아가씨가 強姦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本人을 불러오보니 強姦 절대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득이 強姦 당 했다는 사람 17살먹은 處女애 입니다. 父母를 불러가지고 정 이려면 천상 科學的인 鑑定을 해보는 수 밖에 없는데 좋으냐 父母들이 좋다 그래서 鑑定을 해보니까 세 사람은 소위 處女膜 破裂이다 판단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破裂이 아니다 라고 나오고 나머지 사람은 破裂이다 나오고... 그런데 각각 所信이 뚜렷해요. 할 수 없어서 다시 또 네 사람 다 불러왔습니다. 불러가지고 또 어느 病院에 가지지고는 그 父母님 같이 參席을 해가지고 破裂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破裂이라고 보는 사람은 왜 보느냐 說明을 들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處女의 特性이 處女膜에 先天的인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 한 醫師가 딱 들춰 보면서 다른 세 醫師한테 이것 보세요. 이것 先天的으로 그렇지 破裂이 아닙니다. 그래 세 사람은 이것가지고 판단을 한 그런 例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니까 無條件 實體的인 眞實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金 炫委員 아니! 맞습니다. 長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多數와 少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國立科學搜查研究所 生物學部 현재 勤務하고 있는 사람들 「팀」이 현재도 우리 大韓民國에서는 SM「테스트」方法을 쓰고 있고 우리보다 先進國인

日本에서도 이 方法을 쓰고 있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결국은 精液이다 말씀이 지요.

○金 炫委員 精液反應이다 됐습니다.

寫眞으로 찍혀서 나왔을 정도니 이는 저희 들이 언제든 저희들 名譽를 걸고 합니다. 해서 速記錄에도... 名譽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精液反應 有無를 가지고 따지는데... 精液反應 有無와 寫眞을 가지고 따지는데 분명히 현재 國立科學搜查研究所를 어느 檢察에서 어느 公務員이 他 機關에서 所長으로 찍어서 나간 것을 정해서 분명히 보여드렸습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陽性反應으로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殺人이나 아니냐 할 정도의 문제가 신중한 문제인데 우선 완전히 排除한다는 것은 그러면 약간 이상은 있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렇겠지요.

○金 炫委員 께름직하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金 炫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大韓民國 檢察은 어느 現場에 갔을 적에 他殺嫌疑나 事故嫌疑가 몇%나 있으면 調査를 합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 「프로테이지」를 물으시니까 答辯하기가... 그 答辯을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金 炫委員께서 質問하시기를 警察官이 搜查權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관계됩니다.

檢察이라 하는 搜查機關이 있고 搜查 指揮權을 가지고 警察官이 搜查를 하는데 그러면 檢察하고 警察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事件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檢察은 주로 頭腦를 써가지고 하는 事件... 法律的인 문제가 있을 때 檢察이 주로 합니다. 例를 들면 知能犯같은 것은 檢察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이런 科學的 搜查가 필요하고 機動力이 필요하도 人力이 필요한 것은 警察이 주로 합니다.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法律的으로 필요한 知識... 그럴 때는 指揮 監督을 檢察이 합니다. 그 이유는...

○金 炫委員 됐습니다. 長官님! 제가 물은

것은 몇 %정도나... 가보아서 自殺같기도 하고 他殺같기도 한데 하는 의미가 대개 몇%나 있으면 搜查에 着手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을 몇 %라고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他殺의 嫌疑가 있으면...

○金 炫委員 嫌疑가 있으면 하는 것이 99%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런 것은 아니지요.

○金 炫委員 몇 %정도... 50%만 넘어가면 합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글세 우리가 嫌疑라 할 때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프로테이지」보다는 여러가지 自殺이 아난...

○金 炫委員 嫌疑가 있으면 한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맞습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本 質問에 들어가기 전에 檢察의 失手부터 하나 하고 들어가지요.

檢察은 전번에도 이 搜查를 다루는데... 이것은 짚고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근처에도 오지 않은 노순호때문에 處理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事件을 終結하지 않고 1年3個月씩을 끌었다 그 때 그렇게 對答했다가 사실 노순호는 그 당시 指名手配를 받아 있던 자기 때문에 警察이 27日서부터 드나들었기 때문에 거기 事件 現場에 절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明示해 드려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內查終結을 하셨더군요. 한데 제가 이번에 2小委 委員長으로 調査를 하면서 보니까 押留物件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事件終了를 안했다고 했는데 五大洋事件에 대한 押留物件이 잔뜩 있습니다.

“押收目錄”해 가지고 이것이 꼭 있는데 最小限度 가장 중요한 이경수가 목매달아 죽은... 이것 複製된 것입니다.

이 끈같은 것은 값어치도 안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 끈조차도 없었다면 지금에 와서 搜查할 意思는 전연 없었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제가 報告를 받기로는

押收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搜查擔當者가… 그 擔當者는 檢事의…

○**金 炫委員** 長官님 시간없습니다. 자꾸 돌리지 말고요. 제가 提示하지 않습니까? “押收目錄” 해가지고 押收했다고 되어있어요. 우리한테 報告한 것은 押收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아니고… 長官님! 押收했다고 押收目錄表에 나와 있습니다. 目錄表에 나와서 押收를 했던 物件이 警察 檢察손에서 사그리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안남고… 그렇다면 얼마전까지 事件終了를 하지 않은 檢察로서 그 물건 자체가 다 없어졌다면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長官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현 長官님이 長官되고 나서도 그때 事件終了가 안됐었는데 그 이후에 2小委에서 요구하기를 그 당시 사용되었던 끈 가방 좀 보여줄 수 있느냐 하니까 警察애기 “紛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紛失되었답니다. 그러면 大韓民國에 32명의 事件이 미심쩍어서 1年3個月씩 檢察이 調查해야 되겠다고 갖고 있었던 그러한 엄청난 事件에서 실제 他殺이나 自殺이나를 가려볼만한 마지막 物證인 그 당시 押收物件이 紛失되었다면 이는 大韓民國이 無法天地입니까? 안개政局입니까? 립니까? 紛失되었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警察官이 어떻게 紛失했는지 그 報告를 받지 못했습니까마는 끈의 경우에는 이미 死體檢屍를 하고 剖檢過程에서 그것이 確認이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寫眞 撮影까지 되어있다고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故意로 紛失할 사람같으면 寫眞도 안하고… 어떻게 紛失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볼때…

○**金 炫委員** 그것은 檢察이 혹 事件을 送致받아 다 끝냈는데 이번 國會에서 불이나듯 뭐하듯 하다보니까 그 당시 치위야 될 物件임에도 값어치나가지 않는 物件이기 때문에 거기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判斷해서 없어졌습니다 하는 것은 몰라도 그 당시 전번에 제가 法務部長官님 오시라고 해서 質疑를 할적에만 해도 事件終了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노순호 때문에 못잡아서 열심히 調查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하고 對答을 하셨습니다. 長官님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당시 사용되었던 끈이나 가방이나 혹은 藥이 있으면 혹 極毒物이 들었음는지 再鑑定 좀 해보게 있으면 내놓아라 했더니 紛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警察이 紛失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長官이 집에서 家長으로서 失言하는 것은 認定해도 여기 나와서 失言하는 것은 認定안되지요. 그 어마어마한 32명의 生命을 다루어서 그래도 大韓民國 檢察이 어떻게 하든지 다루어 보겠다고 1年3個月씩 送致를 안 받는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온 物證을 전부 다 紛失했다면 이는 故意的이라고 봤을 때 어떨까요? 사용된 끈 가방 등등 중요한 것이 없어졌어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저희는 그것을 報告를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金 炫委員** 그러면 제가 여기서 委員으로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테니까 만일 없어졌을 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大韓民國을 이끌어나가시겠습니까? 法務部長官 정확하게 對答하십시오.

○**法務部長官 許亨九**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金 炫委員** 그렇게 또 된다면 故意的이라고 봐도 괜찮겠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故意的이 되지요.

○**金 炫委員**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하나 죽는 事件도 말입니다.

警察官들이… 檢事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精神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꼭 필요한 證據를 갖다가 이 친구들이 엉뚱한데에 보내놓고 그래서 나중에 檢事가 나와서 證據 찾아보면 어디가고… 그런 例도 있습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다. 長官님! 이것은 원래 雜犯들이나 個人事件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大韓民國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長官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부다 全敬煥 李基百등등 高位層과 관련있어서 請負殺人이다 등등 外國에 나가면 全敬

煥이가 건달들 시켜서 다 때려죽이고 다 情交하고 해서... 外國에서는 우리 나라가 東邦禮意之國이 아니라 여기 죽은 사람들의 32名中 16名이 家族關係입니다.

엄마 딸 엄마 딸 며느리 딸 그 男子 4名中에 子息 들 조카 자기 4寸거리 다 關係를 가진 아주 破廉恥한 이런 나라로 만들어져 있는 엄청난 事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드리면서 한번 다시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冊만보니까... 이 冊은 겨우 教科書다. 이 冊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冊갖고도 안되겠다.

法醫學 冊을 12券을 샀습니다.

血液學冊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長官님이... 弄談하는 것 아닙니다. 冊을 출테니까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 있는냐고 물어보면 다 외웁니다. 다 외워서 따져 보아도 血液學冊 다 보아도... 이 法醫學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대요.

왜 필요하냐? 人權입니다.

산 사람에게 權利를 뺏아가면 산송장이니 있을 필요도 없고요 죽은 사람에게서 權利를 뺏아가면 動物도 그런 動物이 없이 추한 動物이 되니 그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死者들의 人權도 분명히 있거 때문에 4대를 모십니다. 100年 넘어들... 1年마다 한번씩 그 분들을 기억하고 그 분의 業績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데 그래서 이 剖檢冊이 꼭 필요하겠지요. 대충 아실테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봅니다.

美國에서 있었던 事件의 예로 冊表紙에 나와 있습니다. 콧수염이 있어서 射入口... 現代版銃으로 쏘죽었는데 自然死로 判定되다가 剖檢醫가 이상하다 해서 콧수염을 꺾고 보니까 조그마한 射入口가 돼서 銃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딱 그것 하나로 해서 犯人을 잡았다 해서 表紙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法務部長官이 아실테고요. 우리나라 法醫學은 아직도 뒤쳐져 있습니다. 아까 長官님이 말씀하셨듯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法醫學은 별로 연구를 안하는데 이 冊들이 왜 그렇게 좋은가 하고 日本書籍을 다시 보니까 이것은 高大에 계시는 文博士님 아것은 延大에 出講하시던 禹상덕博士님

두 분의 冊만 대표로 갖고 나왔습니다. 이 두분의 冊이 왜 그렇게 좋은가 또 거의 같은가 했더니 日本冊 美國冊을 89% 베껴더구 만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대충 그렇습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절대 불변입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原色圖4와 3과 같이 繪死體 死斑이 背部에 있다면 그것은 강력히 他殺을 시사하는 것이다 할 정도로 나왔는데 앞에 표지를 보니까 他殺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고 自殺을 표시한다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요번 質疑을 해보니까 그것은 教科書의인 것이다. 왜? 醫師 선생님께서 말려들기 싫고 같은 醫師들이 해놓은거라 될 수 있으면 有耶無耶 答辯을 해놓으셨더구만요. 이것을 前提條件으로 하면서 質問에 들어갑니다.

이경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常識的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엇그저게 그대로 書類를 보내드렸고... 「剖檢醫는 현장을 보지 않고는 屍體의 自·他殺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요번 檢察發表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똑같이 죽어 있어도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의 時間差異 場所差異 모든 것이 나니까... 그런데 答辯은 뭐라고 나왔느냐 한번 읽어드리지요. 醫師들이 어느 정도 피해서 대답을 했는지... 「死體에 나타난 소견만으로는 自·他殺의 감별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剖檢醫가 직접 現場狀況을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으나 與件이 부득이 할때는 현장에 臨場하였던 搜查官의 충분한 說明이면 가능하다고도 하겠다. 事件이 여의치 않으면 충분히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檢事 다섯분이 가 계셨습니다. 剖檢醫들이 剖檢을 하러갔을 적에 이런 狀況을 꼭 說明해 줘야 원칙이지요. 그렇게 하고 剖檢을 시켰어야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이 옳지요.

○金 炫委員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전번에 이 문제에 가장 지금 反撥을 하고 있는 黃迪駿博士는 「저는 전연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 寫眞입니다.」 사람屍體가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을 보여줬더니 이 屍體

는 저는 처음 봅니다. 이런 것은... 이것이 이경수라면 이영호라면 自殺이나 他殺이나 아! 맨 밑에 있다면 이 사람 他殺이지요. 여기 速記錄에 남아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큰일나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縊死라고 했는가 「저는 그런 狀況을 못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때 剖檢醫의 잘못입니까? 그 당시 모든 搜查를 指揮했던 立會했던 檢察의 잘못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檢事의 잘못이겠지요. 다만 제가...

○金 炫委員 됐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法務部長官 許亨九 檢察도 할 말을 또 해야 안되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檢察이 잘못된 것을 뭐 잘한 것같이 말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 強力犯 搜查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知能犯搜查는 거의 檢察이...

○金 炫委員 됐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矛盾點이 4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30歲 밑에 어린이들 파트하는 것은 朴순자의 조종이다 그러나 나는 그 事故를 몰랐다. 처음 안 사실입니다. 이것 참 이상하다. 이것은 내가 法醫學的으로 判斷해도 어허! 이상하다. 寫眞을 보면서 한 얘기가 이렇다면 내가 왜 法醫學的으로 그렇게 判斷합니까? 이런 式으로 대답을 하니 그러면 隱蔽를 하기 위한 거냐? 故意的인 隱蔽는 아니었겠지요. 누가 실수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事件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번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黃迪駿 博士님께서 빠져 나가시는 것은 저한테 주장이 個別的으로 네번 다섯번 만났습니다. 本醫師는 所見書에다가 自殺 他殺을 論議해 본 적이 없다 나는 縊死다 이렇게만 적었지 自殺·他殺을 論議해 본 적이 없는데 檢察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金委員님 왜 나를 자꾸 들볶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번 檢察 얘기는 醫師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參照했다. 檢察局長이 그 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러면 國民은 죽어갔는데 檢察은 「닥터」에게 「닥터」는 檢察에게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될까요. 두 분이 相議해서 答辯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저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檢察의 주장이 옳습니까? 「닥터」의 주장이 옳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 事案의 眞相을 발견하고 論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하나 하나 따져야 된다는마는 어떤 큰 搜查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하나 틀렸으니까 전부 틀렸다 그렇게 結論을 내시면 實體的 眞實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다. 그 事項은 지금 檢察은 「닥터」가 그렇게 診斷을 떼어 와서 우리는 그것으로 했다. 전번에 檢察局長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새로운 진상을 가르켜 주면 우리가 열심히 搜查하겠습니다 하고 速記錄에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黃迪駿 博士를 만나보니까 自·他殺을 난 論議해 본 적이 없는데 목 매달아 죽었다고 縊死라고 말했는데 檢察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을 왜 나한테 크럽니까?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느냐고... 힘 약한 國民은...

○法務部長官 許亨九 무슨 말인지 난 암담 들어도 모르겠는데...

○金 炫委員 보세요! 醫師는 檢察 핑계내고 檢察은 醫師 핑계 대니 누구 말을 믿느냐고요!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니 醫師는 檢察을 檢察은 醫師를 그 말씀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檢事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다른 證據없이 醫師가 말도 안했는데 醫師가 그러더라. 이렇게 하고 했다는 말씀을... 우리 檢察이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지...

○金 炫委員 法務部長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구만. 縊死라고 해서 전부다 自殺이 아니랍니다. 이 冊상으로 보면 縊死 목 매달아 죽은 중에는 90%정도가 自殺이고 나머지 10%는 偽裝自殺 즉 教唆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다고만 했지 自殺했다는 用語를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檢察은 「닥터」가 縊死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典型的인 縊死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自殺한 걸로 봤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러면 그것은 檢察이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醫師가 自殺이라고 단정도 안했는데 檢察이 만약 自殺로 단정했다면 다른 이러 이러 한 證據에 의해서 또 醫師의 말도 이런 말도 있고 해가지고 이것이 自殺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지 여러가지 조사해 놓고 醫師 말한 마디만 가지고 단정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金 炫委員 그러면 전번에 옆에 계신 局長이 잘못 대답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당시 조사를 해서 醫師의 의견을 참조해서 「닥터」의 의견을 참조해서 세 사람이 의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판정을 하고 나머지 確證을 잡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 즉 똑같은 여기서 醫師... 목 매달은 縊死와 「닥터」 醫師의 차이때문에 자꾸 「닥터」라고 합니다. 「닥터」의 의견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옆에 계신 局長...?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렇게 말했다면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金 炫委員 局長님 잘못된 것입니까? 그때 局長이 그렇게 答辯을 했으니까요...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문국진博士의 「最近 法醫學」 原色圖面 4-3을 나타내면 강력히 他殺을 示唆하는 것이 教科書의으로 본다... 이것은 速記錄에 남기고 가기 위한 作業입니다. 여기서 專門의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色痕이라고 합니다. 「色痕은 색구라고도 하며」...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法務部長官님이 檢事 辯護士다 하셔서 저보다 많이 아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많이 알지 못합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다.

그래서 이 色痕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했는데 우선 목매달아 죽은 屍體에서는 그 色痕을 가지고 自殺이나 他殺이나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큼니다. 왜 그러냐? 대개가 남이 죽어서도 목을 매달아 놓고 자기가 죽기도 하고 거기서 縊死냐 絞死냐 하는 것이 法的으로도 생겨있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色痕에 관해서 法醫學會에다가 質疑한 것입니다. 色痕이 頸部를 一周하였을 경우 縊死인지 絞死인지 했더니 答辯이 色痕이 結節部位에서 소실되며 결여되는 일이 없이 완전히 一周한다면 絞死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 炫委員 그래 놓고 醫師한테 물어서 그런지 이 事件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흐려주었더군요. 絞死로 보이는 것이 보통이나 끈의 종류와 묶인 상태 등에 따라서 縊死일 可能性도 自殺 했을 可能性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닥터」들의 재미난 用語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일부러 저 뒤에다 떼어서 質問을 했습니다. 뭐라고 質問을 했느냐 하면 동봉한 끈은 伸縮性이 있다고 보는가 매끄럽다고 보는가 했더니 양심들은 있으니까 이것은 매끄럽지 않고 伸縮性이 없다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國立科學搜查研究所에서 나온 答을 볼 때에 또 문국진博士 「最近法醫學」 99「페이지」를 볼 적에 틀림없이 一周하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읽어드리지요. “典型的인 縊死의 경우 前頸部에서는 실골과 감상연골 사이를 지나기 때문에 거의 수평을 보이며 가다가 같은 성장을 보이다가 直頸部에 이르러서는 사상방을 이루며 점차 희미해져서 後頸部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소실되며...” 그 다음 우상덕博士의 冊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縊死인 경우에는 완전히 결여된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결여된다 소실된다는 것은 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이경수의 屍體는 거기 보내 드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頸部 後頸部 則頸部를 완전히 돌면서 일주를 했다는 것을 剖檢醫 黃迪駿博士의 剖檢書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만 法務部長官에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정도일 때 搜查를 종결하고 어느 정도일 때 搜查를 하느냐? 왜 縊死일 적에 남이 絞死를 했을 적에 이것이 일주되는가를 제가 法醫學者 여러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물어 보았더니 이렇게 되더구만요. 法醫學으로 보다 보니까 나

중에 文理를 깨달으니가 法醫學이 아니더라도. 이치상으로 重力으로 향하려고 하는 힘에서 垂直을 이루고 物體는 매달리고 밑에는 떨어져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패이는 만큼 뒤가 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답해 온 것은 彈力성이 있거나 혹은 매끄러울 때는 혹 들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教科書의으로 나올 적에 분명히 소실된다 결여된다 했는데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반된 것입니다. 縊死 목매달아 죽은 것이 그렇다면 결여되어 버렸으면 이는 분명히 他殺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동봉한 끈은 무엇이나? 제가 괜히 내 마음대로 동봉한 것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큰일나게요. 殺人の 문제인데... 警察이 빼놓은 사진 중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세 사람 네 사람 옷감가게에 다 가서 이 천이 무엇인가를 천 專門家에게 확인해서 옆에 있는 자까지 확인해서 그 「센티」에 따라서 그대로 복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 들었을 때 彈力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는 최소한도 알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色痕 하나로 본다면 法醫學會의 答辯上으로 보아도 거의 99.9% 아니 100%가 絞死입니다. 教科書에 나온 대로 다 되어도... 이랬을 적에 이런 事件을 가지고 1年3個月씩 -있다가 뭐라고 答辯을 했느냐? 어느 檢事가 하셨는지 그 분 法醫學 공부 좀 하라고 하십시오. 살아 있을 적에는 色痕이 생기고 합니다. 그러나 목숨이 떨어져서 12時間 10時間 넘어간 뒤에는 생활사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色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法醫學입니다.

한데 檢察發表는 뭐라고 했느냐? 시체를 내려 놓으니가 그것에 의해서 色痕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國民을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檢察의 힘에 의해서 그냥 한 두 자 적어서 내보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까?

長官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죽은 다음에는 色痕이 생기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는 法界 30年 이상 계셨으니가 사실 것 아닙니까? 내려 놓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彈力성이 없어지고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色痕 색후가 안 생깁니다. 그러한

常識的인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 있던 시체를 내려 놓으니가 色痕이 생겼다 라고 이번에 檢察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事件을 이렇게 萬人이 보는데서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檢事 영감에게 일러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으로 이러니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國會에서 하는 것보다는 檢察 자체에서 체면을 찾으시오 하고 사실 당사자에게 일러 주었더니 겨우 풀러놓은 시체가 연결되더라... 안 됩니다. 그것은 10名이면 10名의 法醫學者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檢察이 이번에 발표하기를 죽은 다음에 내려놓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法醫學으로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것은 絞殺이라고 하는 것을 長官님은 認定하시야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런 경우에 실지 調査도 안해 보고 더구나 科學的인 지식이 필요한 事件에 관해서 長官이 옛날에 몇 件 해 보았다고 해서 여기서 단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專門家한테 맡겨가지고...

○金 炫委員 그러면 長官은 여기에 個人으로 나오셨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니올시다.

○金 炫委員 大韓民國 法을 다루고 있는 모든 法에 대한 責任者로서 國民의 代表에게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일러드렸습니다. 檢察 이번 발표가 그 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가 色痕이 一周했다 그러니까 매달았다 내려 놓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려놓은 死體에는 色痕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럴 것 같습니다.

○金 炫委員 그러면 檢察이 그렇게 발표하고 職務遺棄 아닙니까? 잘 모르면서 아는 양 對國民에게 특히 지금 4千萬 國民이 전부 다 신경을 쓰고 있는 이 5共發表인데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이게 자꾸 변명같아서... 檢察로서는 記錄調査하고 現場 가보고 또 專門家 의견 듣고 法醫學者 의견 듣고 해가지고 綜合的인 判斷을 한 것입니다. 그 判斷이 部分的으로 잘못 되었으면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변명같습니다마는 檢察이 사람이지만

神처럼 100% 다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조금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全體的 사건 판단에서 잘못이 없으면 그런대로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 炫委員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분들의 판단 잘못으로 數百萬의 國民은 죽어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國民의 代表들에게 또 지금처럼 대충 잘못된 것 그 殺人事件이 풀리지 않고 있고 이번 內查終結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 質問합니다.

제가 드린 사진을 보시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後頸部 측근의 색도가 같은 것은 縊死인지 絞死인지 一般的으로 縊死인 경우는 매달은 반대쪽이 힘이 더 강하게 되고 나머지는 흐리게 된다. 頸部에 힘을 받기 때문에... 本質問의 경우처럼 頸部전체가 같은 色痕이라면 이것은 縊死다. 長官님이 직접 公務員이시니까 모든 건강상태 양호하니까 長官으로서 發命을 받으신 것입니다. 한번 제가 드린 寫眞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色痕이라는 用語를 아시는 것만 해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研究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똑같다면 그것은 自殺로 보기는 힘들지요?

○金 炫委員 그러니까 寫眞을 한번 직접 제일 윗분이 확인하셔서 일개 檢事에게 맡기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는 法務部長官님께서 다시 판단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縊死體는 완전 死體 공중에 떠있는 縊死體가 아니고 지금처럼 발목이 땅에 닿아 있는 縊死體입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이 博士님들이 저한테 얼마만큼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는가를 알기 위해서 質疑를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 몇 %의 體重의 힘을 받는다 그랬더니 良心的으로 教科書와 절대 안틀리게 대답했어요. 上半身을 높이 하고 무릎이 주변에 닿지 않는 복상이라면 體重의 40%라고 教科書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4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키는 161cm 體重은 59kg 40%라면 겨우 24.5

kg의 힘을 받습니다. 24.5kg의 힘을 받았는데 法醫學上 이렇게 깊이 나머지 縊死體들과 비교를 해볼 적에 常識的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저보다 研究를 더한 것 같아서 굉장히 答辯하기가 힘들니다.

○金 炫委員 이게 보통 一般의인 縊死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死體를 보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까 金委員님 말씀을 전제하면 自殺이 아니고 他殺일 可能性도 있지만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색구가 고르지 않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앞은 깊고 뒤는 조금 약한 것같네요.

○金 炫委員 조금 약하지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自殺해서 11時間을 매달아 놔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앞쪽으로 쏠리지 그렇게 다 똑같은 리는 없는거예요.

이것 하나만 判定해 주십시오. 이게 自殺이라고 한다면 이 色痕은 너무 깊지요. 다시 얘기한다면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그것도 전형적인 縊死 완전 縊死 그러니까 肉體가 완전히 공기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닿아서 體重의 40%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 사람 키는 161cm에 몸무게는 59kg 그것에 40%를 하면 24 내지 25kg을 받는 사람으로서 너무 깊게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저는 잘 알지 못하는 판단을 나보고 자꾸 하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速記錄보고 뭐라 말씀하실 텐데 저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答辯합니까?

○金 炫委員 지금 長官이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長官은 틀림없이 모든 건강이나 이런 것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大統領이 發命을 낸 公務員입니다. 公務員이 우선 당장 여기서 똑같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것과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이쪽이 더 무겁게 힘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는 기본적인 판단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렇게 깊게 파고들어갔죠. 이것은 걸로 걸린 상태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 同一人이 아닙니까?

○金 炫委員 同一人이 아닙니다. 이게 더 힘을 받은 것같죠?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런 것같이 보이네요.

○委員長 李基澤 金委員님! 잠깐 얘기를 듣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會는 어느 團體나 어느 個人的 委員會가 될 수 없고 역시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金 炫委員이 五大洋事件을 말아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데 대해서 정말 委員長으로서도 敬意를 보냅니다.

그러나 質問을 하는 것은 檢察이 이번 5共非理를 조사한 結果를 발표한 데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전달하고 또 미심쩍은 것을 묻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結論을 내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여러 가지 狀況的 判斷으로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 要點의 點으로 質疑만 해 주시고 檢察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承服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發表가 아니냐 지적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長官의 答辯만 들도록 해야 이 會議 自體도 오히려 能率의 率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金 炫委員 한 시간만 더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는 젊어서 그런지 금년 滿 40이 안됐습니다. 人生이라는 것은 돈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없는 것은 없으면 그만입니다.

지금 서른두 名의 生命이 다루어지는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지적했듯이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데 檢察은 엇그저께 內查終結을 해서 發表를 해 버렸습니다.

○沈兜求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長官! 지금 金委員이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五大洋事件의 搜查結果가 檢察發表는 自殺로 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搜查終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金 炫委員의 계속적인 證據提示는, 他殺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金 炫委員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하는 과정에서 長官께서 他殺이라는 측면도 是認을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事件에 대한 眞實與否가 도리어 가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自殺이 아니고

他殺이라는 事實證據提示를 충분히 전부 받아들이고 결론적인 말씀만 答辯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 炫委員 자! 이경수 매달린 사진을 證據로 제시하면서 물어봅니다.

(國務委員席으로 다가가 法務部長官에게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長官이 보시기에 이 밑에가 다른데 보다 붉습니까 안 붉습니까? 그 정도는 판단해 주시겠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깨보다는 조금 붉습니다만 사진적은 光線의 방향에 따라서 부부적으로 돌출된 어깨부분은 연하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金 炫委員 저도 그것은 압니다.

그 다음에 이 발밑에 분명히 이것이 死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분명히 붉은 색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지요. 여기도 사반이 나타났고...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런 것 같습니다.

○金 炫委員 그런데 이 발바닥에서는 볼 수가 없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專門家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金 炫委員 아니 이것 하나만 長官이 公務員으로서 분명히 색깔이 현저하게 다른데 무엇이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이 정도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場所飄亂)

그러면 色度差異는 현저하게 나지요? 그것은 인정하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色度差異는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묻었다고 하나까 뭇이 묻은지... 色度差異라고 하는 것이 말이지요. 이것하고 발바닥 사이는 빛깔이 다릅니다.

○金 炫委員 됐습니다. 長官이 다르다고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이경수는 他殺입니다.

지금 제시했던 그 동안에 묻은 것은 이미 어저께 그저께 다 주었던 것이고 檢察發表로 31名을 거기서 죽이고 죽었다는 이경수 목매달은 사진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시면 황토흙이 묻어서 지워지지 않았

입니다. 31名을 죽일려고 이 이부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전부 다 하려면 발바닥은 깨끗하게 다 닦여야 됩니다. 한데 발바닥에 황토흙이 그대로 묻어 있는 채로 죽어 있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이 황토흙입니까? 빛깔은 이것하고 좀 다르지만 그것이 황토흙인지 나는 도대체...

○金 炫委員 여기에 제시한 것은 제가 만든 사진은 하나도 없고 內務部를 통해서 國會로 제출받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死斑問題도 法的으로 나오기를 法醫學 協會에서 7時間 8時間內에 더 이상은 움직이지 못 한다 但 예외도 있다 그러면 大韓民國은 예외 예외하는 쪽으로만 해서 事件終結을 할 수 있는지 法醫學 教科書에 나온 대로 사실 보통 다 이렇게 된다 하는 쪽으로 搜查를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長官님이 분명히 색깔이 틀리다고 했고 해서 나머지 質疑는 나중에 書面質疑하는 것으로 해서 質疑를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民正黨 金仁泳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泳委員 民正黨의 金仁泳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원래 質問方式을 一問一答式으로 하려고 하였읍니다마는 지금 同僚委員들의 一問一答式 方法을 보니까 정확하고 확실한 答辯을 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것 같아서 本委員은 一問一答式을 지양하고 일단 質問을 드린 후에 나중에 정확한 答辯을 구하겠읍니다.

먼저 새세대心臟財團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83年11月25日 保社部가 心臟病患者治療基金造成 目的으로 心臟金庫設立計劃案을 마련해 가지고 細部的인 검토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同計劃案이 取消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心臟財團設立 및 基金募金 이전에 이미 12億 상당의 基金이 조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言論에서도 報道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의 12億원중 10億원이 保社部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資金의 출처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10餘億원이나 되는 巨額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設立認可 당시에 2億원의 基金으로 한다는 議決事項을 무시하고도 3,000萬원만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번째 質問입니다.

최근 國會 5共特委 第1小委에서 東部「그름」이 동진제강을 引受하는 時點에서 새세대 30億 새마을 20億 해서 무려 50億원을 한꺼번에 기부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런 巨額을 기부한 이유와 政經總着에 의한 特惠與否를 搜查하셨는지 또는 搜查를 아예 해 보지도 않으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새세대育英會에 대한 서울시의 補助金 支給의 妥當性 與否에 관해 묻겠습니다.

檢察 發表에 의하면 서울시 交付金 9億9,050萬원은 育英會 敷地 本館 建物 費用으로 兒童福祉法 규정에 따라 適法하게 支給되었고 節次上 關係 法規를 위반한 점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事實인지의 與否와 關係法規란 어떠한 法規定을 적용해서 적법했다고 주장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새세대育英會의 두번째 質問입니다.

現代「그름」 鄭周永會長이 새세대育英會에 25億원을 기부하였는데 靑瓦臺에서 보관하고 있던 育英會의 帳簿上으로는 鄭周永會長이 20億원을 기부한 것으로 記載되어 있고 나머지는 鄭仁永씨가 5億원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帳簿가 상이한데 그렇다면 어떤 帳簿를 믿어야 할지 本委員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檢察側에서 이 帳簿를 불신하고 搜查를 하였는지 그 관계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역시 새세대育英會의 基金管理와 運營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82年3月31日 서울信託銀行으로부터 無記名 開發信託利子로 받은 2,470餘萬원과 애경유지「그름」會長 張英信씨가 李順子씨에게 전달한 85年5月30日字 5,000萬원이 記帳 누락된 것은 同 金額이 育英會에 入金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確認되었으나 관련 職員들의 陳述과 關係書類만으로는 그 使用處를 확인할 수 없었다 라고 檢察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그 具

體的인 搜查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5共特委에서 수개월동안 심도있게 조사도 했고 時間을 가장 많이 보냈던 財團의 하나인 日海財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共聽聞會등 지금까지의 國會特委 조사활동에 의한 것 같으면 日海財團은 遺族을 돕는 補助金 23億원을 전액支給한 뒤에 財團의 運營資金이 고갈된 가운데 있다. 財團設立 自體가 稅金遺脫을 위한 變則的方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財團의 存續對策을 구상한 끝에 별도로 企業體別로 寄附金을 募金하게 되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檢察資料에서는 83年11月1日 靑瓦臺 敎育 文化 首席秘書官이 同 財團基金은 遺族을 돕기 위한 補助金 23億원과 企業人의 出捐金으로 충당토록 하는 民間形態의 財團法人 設立 計劃案을 前任 大統領에게 報告하여 承認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遺族補助金 23億원을 遺家族에게 全額支給한 뒤에 財團 運營資金이 고갈 되어서 企業人으로부터 寄附金을 각출하였다는 그러한 것과 두번째로는 遺族補助金 23億원과 企業人 出捐金을 합해서 日海財團의 基金으로 충당했다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檢察에서 發表했듯이 寄附金 募金の 강제성 여부가 또 다른 次元에서의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長官의 見解를 묻겠습니다.

역시 日海財團에 대한 質問입니다. 日海財團 設立目的 변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소위 定款變更 事項입니다. 日海財團의 최초 設立目的이 殉國外交使節의 遺子女에 대한 獎學支援事業에서 시작해서 國家安保 또는 平和統一分野의 研究機關으로 主目的 事業이 확대 改編된 定款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순수성 여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檢察搜查 資料에 의하면 定款變更의 주된 이유로 遺家族에 대한 補助金支給이 완료되어서 國家報勳處의 既存 援護制度를 통해서도 遺子女에 대한 獎學事業 推進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기왕에 조성된 寄附金을 安保統一問題研究등 보다 가치있는 分野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國家報勳處의 주된 업무가 國家有功者 및 遺

子女에 대한 生計支援 및 獎學事業으로 알고 있는데 檢察의 國家報勳制度 활용 주장은 日海財團을 設立한 高位公職者가 國家報勳處의 所管業務조차 몰랐다는 것으로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長官의 見解를 묻겠습니다.

역시 日海財團에 대한 質問입니다. 基金造成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質問입니다. 日海財團 基金 造成 과정에 있어서 前任 大統領이나 張世東씨등 그 측근들이 基金 出捐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檢察 搜查 發表에서 밝히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主張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日海財團의 基金造成은 最初 財團基金 목표액이 600億원으로 策定되어 있었으나 前任 全大統領의 지시에 의해 300億원으로 축소되었고 1년에 100億원씩 3개년 分割 募金한다는 방침이 全經聯에 통보되었고 企業別 募金額이 할당되어 基金이 모금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모두가 비록 개별 企業人에게 구체적으로 基金募金を 요청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前任 大統領의 300億원 축소지시 100億원씩 3개년 分割 募金이라는 발상 자체가 이미 企業人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長官의 見解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財團基金 募金 開始이진 10億원의 出處에 日海財團 基金 募金 開始 이전인 84年1月25日 財團基金으로 預置된 10億원도 前任 全大統領이 運用기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出處에 대한 搜查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묻겠습니다.

張世東씨는 前任 全大統領으로부터 84年1月25日 財團運營基金 名目으로 10億원과 84年3月5日 新世代育英會 敷地 買入 代金 11億6,000萬원등 두번에 걸쳐 상기 금액들을 借用하였다가 그 후에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前者는 84年3月5日 이회건의 寄附金으로 後者는 契約解除로 반환된 돈으로 각각 변제했는 바 84年3月5日이라면 우연일지는 몰라도 이회건씨의 10億원 寄附日과 新世代育英會의 敷地 賣買 契約書 체결일과 동일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관성 여부 및 각 借用金에 대한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長官의 見解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日海財團의 마지막 質問입니다. 日海財團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日海財團 基金募金에 出捐한 企業에 대한 特惠性 與否라고 보겠습니다. 日海財團이나 새세대육영회 心臟財團 등에 企業인들이 중복해서 기부한 金額이 도합 무려 1,000億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出捐企業 중에는 5共和國에서 성장한 企業들이 많다는 巷間의 의혹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해서 檢察에서는 어떠한 搜查를 하였는지 그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報告가 끝나고 質疑를 시작한 時間이 3時25분부터입니다.

지금 6時30분까지 네 사람이 質問하는데 꼭 세 時間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政府에서 答辯을 하고 이 會議의 性格上 반드시 補充質疑가 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質疑를 하고 答辯을 完了하려면 앞에 네 사람하신 분중에서 좀 길게 質疑하신 委員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4黨이 네 委員이 質疑하는데 約 네 時間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子正까지 앞으로 各黨에 한 사람씩 할 수밖에... 하면 벌써 子正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저 나름대로 計算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委員會 會議를 좀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기 위하고 또 效率性을 우리가 좀 가지기 위해서라도 委員들 質問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겠다... 要約하시고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政府側에서도 答辯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간단명료하게 補充質疑가 가능하면 나오지 않도록 좀 答辯準備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까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6時30분이니까 法務部側에서 答辯準備할 시간도 드릴 겸 또 저녁시간도 됐습니다. 그래서 停會를 하고 여덟 時에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32分 會議中止)

(20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성원이 되었습니다. 續開를 하겠습니다.

法務部長官 委員들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法務部長官 答辯드리겠습니다.

朴相千委員님과 盧武鉉委員님 金 炫委員님과 金仁泳委員님 네 분의 委員님께서 하신 質疑에 答辯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朴相千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면 國稅廳에 損費處理하도록 지시한 사람과 損費處理한 國稅廳의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요지의 質問을 하셨습니다.

수사결과 損費處理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稅法에 따라 損費處理를 하거나 課稅를 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不法이 있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日海財團 새세대育英會 心臟財團등에 있어서의 誠金募金에 있어서 강제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募金에 대한 出捐會社에 대한 不實企業 引受나 골프장 내인가등의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또 물으셨습니다. 金仁泳委員님도 유사한 質問을 주셨으므로 같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檢察은 基金出捐과 관련하여 特惠與否가 문제된 財界人士들에 대해서 真相糾明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환 조사하여 그들의 非違與否를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日海財團 새세대育英會 心臟財團 등의 寄附金 寄託者들이 大統領 또는 令夫人 등이 設立者이고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寄附金 割當은 全經聯이 주축이 되거나 各財團理事會 등에서 追加募金額을 할 당한 것으로 寄附金 出捐者들은 한결같이 法的인 강제성이나 寄附金出捐으로 인하여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반복할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이들의 寄附金 寄託이 내심으로는 특혜와 관련된다는 생각하에 寄附金 寄託事由中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라는 客觀的으로 특혜와 관련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또 그 畜附金の 귀속이 公益財團 또는 社會福祉法人으로 돌아간 이상 法律上 별다른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日海財團과 새세대育英會 心臟財團의 장부는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했고 그 장부는 허위 작성되었다고 보는데 허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관해서 조사를 하였는지 안했으면 調査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日海財團 새세대育英會의 장부는 처음에는 通帳 기타 메모 등에 의하여 作成하다가 帳簿記帳 方法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日海財團의 경우는 1986년 11월 頃부터 1987년 7월 頃까지 公認會計士 任昭赫의 지도에 따라 證憑資料에 의거 日海財團 事務處에서 作成하였고 새세대育英會는 82년 4월 頃부터 總務部長 강중문이 預金通帳 利子計算書 등 資料를 기초로 靑瓦臺 第2附屬室에서 作成하였고 心臟財團의 帳簿는 誠金接受時마다 靑瓦臺와 財團事務局에서 사실대로 作成하였으며 그 내용은 비록 한 두가지 누락이나 착오가 다른 資料에 비추어 인정되는 점도 있지만 사실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愛敬油脂代表 張英信이 새세대育英會長 李順子에게 찬조금 5,000萬이 이 育英會帳簿에 記帳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서 이 돈의 使用處를 밝히기 위하여 育英會 帳簿作成者인 강중문 前大統領부인의 秘書官 金東妍 또 靑瓦臺 前總務首席秘書官 전석영 등 당시 資金管理를 보조하던 關係職員을 조사하였고 育英會帳簿를 정밀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나 關係職員중 이 돈에 관여한 사람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帳簿記帳없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의심이 들지마는 帳簿上에도 전혀 근거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使用處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 83年 外國產 소 導入 過程에서 2萬頭의 外國 소를 追加導入하였는데 그 소 2萬頭의 國內價格과 國際價格의 차이는 얼마이며 그 差額중 얼마를 기부하고 輸入業者의 利益은 얼마인가 하는 취지의 質問을 하셨습니다.

83年 2月 18日 農林水産部에서 새마을所得增大

肉牛導入協議會를 개최하여서 83年에 한하여 2萬頭를 追加導入하고 導入價格과 分讓價格의 差額을 새마을部落 基金으로 造成키로 협의를 해서 83年 6月 28日 農林水産部는 83肉牛導入物량을 7萬頭로 확정을 하고 導入計劃을 畜協中央會와 各 市道에 시달하였으나 83年 3月 10日 大統領 裁可過程에서 導入價格과 分讓價格과의 差額은 畜産振興基金으로 造成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輸入畜産物의 販賣收益金은 畜産基金으로 造成되어 運營되고 있으며 輸入소 導入으로 인한 導入價格과 分讓價格과의 差額도 畜産振興基金으로 入金되어 왔으며 畜産振興 基金은 畜協中央會에서 管理運營하고 있고 83年 84年에 農家に 入殖된 肉牛 總 8萬 1,215頭의 分讓價格 667億 300萬 원과 導入價格 488億 6,000萬 원과의 差額인 178億 4,350萬 원도 畜産振興基金에 入金되어 事故補償費 防疫事業費 事後管理費用 등으로 12億 8,135萬 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165億 5,215萬 원은 현재 畜産振興基金 2,894億 4,000萬 원에 포함되어 農家に 대한 融資金 2,258億 6,400萬 원 및 需給調節資金 등으로 運營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導入은 畜協이 하였고 導入價格과 分讓價格의 差額은 畜産振興基金에 入金되었으므로 輸入者의 利益은 없었습니다.

다음 質問의 요지는 檢察發表에 따르면 前安企部長 張世東이 鄭寅用長官의 尹錫民外貨流出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鄭寅用이 外貨流出 사실을 포기각서 강요의 무기로 쓰려한 것은 인정되는데 鄭寅用을 召喚 調査 안하고 搜查를 종결한 참 이유는 무엇이나 鄭寅用을 왜 召喚하여 調査하지 못하였느냐 하는 취지의 質問을 하셨습니다.

鄭寅用을 召喚하지 못한 것은 88年 8月 1日부터 5年任期인 ADB 아시아開發銀行을 의미합니다. ADB의 副總裁로 鄭寅用씨가 취임하여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서 全家族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B의 副總裁는 政府의 추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인 個人資格으로 ADB의 總裁의 추천과 理事會의 議決로 결정되었고 또 準外交官의 身分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昨年 12月 22日 頃부터 4회에 걸쳐



財務部次官을 통하여 召喚要請을 했음이다마는 鄭寅用은 ADB의 業務轉轄와 ADB理事會의 決議가 필요하다는 內規등을 설명하면서 귀국할 수 없다는 回信을 보내 왔읍니다.

鄭寅用 前 財務部長官을 召喚하기 위하여 檢察로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했읍니다마는 鄭寅用의 召喚을 강제할 수 있는 方法이 없어서 89年1月7日 書面質疑書를 우송하여 89年1月21日 陳述書를 받았으나 그 陳述書만으로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어서 현재 搜查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간접으로 召喚에 응하도록 하며 前 大韓船洲 社主 尹錫民의 소재도 조속히 파악하는 등 여러 方法을 강구하여 眞相을 밝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質問의 요지는 尹錫民의 外貨流出 사실을 檢察에서 調查하지 않다가 李源祚 등을 고발을 하니까 고발한 사람을 拘束令狀을 받아가지고 출석하지 못 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이나 하는 취지의 質問을 하셨습니다.

88年10月18日 國會財務委의 外換銀行監査 이후에 大韓船洲 秘帳 등에 대한 內査를 하던 중에 88年11月17日 搜查에 착수하여 이관회 임종만등 前 大韓船洲 幹部등 6名을 召喚調查하고 88年11月21日 尹錫民 등이 告訴狀을 제출하고 출석에 불응하였으나 搜查結果 尹錫民이 秘資金을 횡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尹錫民에 대한 소재수사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石油事業基金에 관하여 中小企業 試作品 開發 및 산업구조 조정용으로 소용된 3,700億원을 용자 또는 보조받은 企業體를 대상으로 政治資金 등을 낸 일이 있는지 搜查하였는지 搜查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려는 취지의 質問을 하셨습니다.

油開公이 石油事業基金을 가지고 직접 企業體를 상대로 용자한 것이 아니라 國策銀行인 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外換銀行등 3個 銀行이 각자의 대출기준에 따라 3,700億원을 각기 中小企業 試作品 開發 및 산업구조 조정용으로 용자 또는 보조하여 주었기 때문에 檢察로서는 各 企業體를 상대로 政治資金 유

용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搜查를 하지 아니 했읍니다.

그 다음 韓進「그룹」 조사결과 40億원이 增資될 때 株式納入代金으로 사용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왜 업무상횡령으로 입건하지 않았는가 하는 質問을 하셨습니다.

韓進이 大韓船洲 인수와 관련해서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수수하였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韓進「그룹」의 지출장부를 조사하던 중 87年度 假支給金中 40億원이 韓進그룹 계열회사 增資時에 趙重勳會長등 특수관계인 8名의 株式納入代金으로 일시사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86年3月31일부터 88年8月31日 사이에 趙重勳會長등 韓進그룹 특수관계인 8名 명의의 增資總額 402億원에 대한 資金出處를 조사 확인하였더니 趙重勳會長의 妻와 자녀 조양호등 5名 명의의 增資分 149億원의 資金出處가 불분명하여 본인 등에게 資金出處를 확인하였더니 出資金中 約 102億원은 株式賣却代等 개인소득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하나 나머지 약 47億원은 贈與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贈與稅 탈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國稅廳으로 하여금 贈與稅를 추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골프장 內認可 29件中 유독 뉴부산골프장만 뇌물을 주고 다른 28個는 뇌물을 준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搜查結果는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檢察에서는 이와 같은 內認可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되는지에 대해서 골프장 業主들을 조사하고 관계장부를 압수하여 엄중조사한 결과 87年 당시 交通部長官이던 車圭憲이 87年 8月末부터 12月18日 사이에 평소 가까이 지내는 박동일 등으로부터 경남양산군온산면내곡리에 있는 뉴부산「골프」장을 內認可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락한 다음 사례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서 도합 5億8,000萬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 골프장 內認可 과정에서 犯法行爲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한성의 경우에 5億원 또 光州의 경우에는 全南道에 5,000萬원 통도의 경우에는, 새마을성금 10億원 제일의 경우에는 日海財團에 5億원 골드에 대해

서는 京畿道에 5,000萬원 가야에 대해서는 日海財團 5億원 또 팔공에 대해서는 大邱市에 10億원 또 蔚山「골프」장에 대해서는 蔚山市에 30億원 중부에 대해서는 心臟財團에 10億원 또 춘천에 대해서는 江原道 30億원 선산에 대해서는 郡民會館 建立基金 10億원 또 利川 KAL에 대해서는 日海財團에 22億원 濟州 KAL에 대해서는 育英會에 7億원 心臟財團에 10億원 또 태평「프라자」에 대해서는 育英會에 4億원 日海財團에 15億원 心臟財團에 8億원 이렇게 돈을 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한성이하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認可에 있어서는 이 돈내는 것 자체가 許可條件이었습니다. 그 말은 京畿道하면 京畿道の 사업에 필요한 5,000萬원내면 許可해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뇌물수수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行政行爲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犯法行爲는 車圭憲씨가 한 것은 명백하게 許可條件과 관계없는 청탁에 의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입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前 産業銀行의 부지낙찰에 관하여 서울시의 건의로 靑瓦臺에서 「롯데」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다른 會社 참여없이 롯데 계열 3個社만 응찰했다 했는데 서울시가 이러한 건의를 한 경위를 밝히고 公開入札의 경우에도 靑瓦臺의 업체자정이 결정되면 어떤 방법으로 다른 會社를 참여 못하게 하는지 그 방법을 밝히고 麗室 替費地의 단독응찰에 관하여 다른 財閥企業들이 응찰을 안 한 이유를 밝히려는 취지의 質問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産業銀行의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기로 政府方針이 정해졌다고 합니다마는 매매방식을 公開競爭으로 하느냐 隨意契約으로 하느냐는 전적으로 産業銀行側에서 關係法令과 관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韓國産業銀行이 政府投資機關이므로 政府投資機關 豫算會計法施行令에 의거한 韓國産業銀行 會計規定上 매매계약방법은 一般競爭에 의하도록 한 規定에 따라 公開入札에 의한 賣却節次를 밝은 것이고 公開入札時 「롯데」계열 3個社만 應札한 것은 同 부지가 「롯데」의 駐車場 확보와 관련되어 「롯데」에 매각하기로 1979년에 方針이 정하여졌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바가 있어서

他 業體가 양보하여 應札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檢察에서는 이러한 政府方針을 이용하여 서울시 關係公務員들이나 韓國銀行職員들이 매각과 관련해서 금품수수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金聖培 당시 서울시市長 등 서울시 公務員 4名과 崔昌洛 당시 韓國産業銀行總裁 등 産業銀行 任職員 3名 趙東來 「롯데호텔」사장 등 「롯데그룹」 任職員 7名에 대하여 면밀한 檢査를 벌였으나 公訴時效가 완성된 談合入札 外에 범죄혐의를 찾을 수 없어서 內査終結을 하였던 것입니다. 「롯데」계열 3個 會社가 談合入札을 한 것은 單獨入札時 應札金額이 入札豫定價에 미달될 경우 流札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고 적법한 公開競爭入札方式을 갖추기 위한 「롯데」측의 내부방침에 따른 것이고 서울시가 韓國産業銀行側과 롯데간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추구를 한 외에 매매방식과정 등에 관하여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麗室 替費地의 單獨應札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1987年11月 하순 「롯데그룹」의 辛格浩會長이 靑瓦臺에서 全斗煥大統領을 면담할 때 替費地 賣却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全大統領이 廉普鉉 서울시市長에게 替費地賣却을 지시하여 同年 4/4分期중으로 賣却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入札公告를 거쳐서 87年12月12日 入札을 실시 落札者인 「롯데」에 賣却하게 된 것인데 入札 및 賣却過程에서는 違法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또 反對給付를 받는 것을 확인할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美國産 쌀 導入과 관련하여 「코넬」社의 로비에 따라 「퍼미」社와의 契約違反을 하였다고 했는데 「코넬」社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로비」했는지 밝히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넬」社가 美國議會에 대하여 「로비」활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 「코넬」社의 조정에 의하여 美國議會在 美國政府의 日本쌀 수출동의에 대한 聽聞會를 개최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취지로 된 1981年1月16日 美國 大使館側의 전문이 있었고 81年1月12日 訪韓한 美國 「존 브로」 下院議員이 「글라이스틴」 駐韓美國大使와 함께 申秉鉉副總理를 면담하면서 韓國이 美國産 輸入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이유로 聽聞會를 개최하여 日本쌀 수출동의를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한 面談錄이 있으며 실제로 美國下院議員 113名이 全斗煥 前 大統領 앞으로 「퍼미」社와의 契約締結에 관하여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로 된 서한이 발송되어 당시 監査院 등에서 監査까지 하였는데 이 서한과 監査院의 監査結果報告書가 있습니다.

이러한 美國大使館側의 전문내용과 面談錄 美國下院議員의 서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코벨」社가 美國議會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인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住岩「댐」과 陝川「댐」을 東亞建設과 隨意契約한 이유가 共榮土建引受로 인한 損失補償의 취지라고 했는데 豫算會計法 第70條의 4 第1項 但書는 契約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隨意契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法施行令 112條第1項 各號는 이를 나열하고 있는데 반드시 東亞建設과 隨意契約할 성질이 아니고 制限競争契約이나 指名競争契約에 부쳤어야 할 事案으로 본다고 하시면서 質問을 주셨습니다.

東亞建設은 83年12月12일부터 87年7月29日 사이에 建設部傘下 水資源開發公社가 발주한 陝川 多目的「댐」建設 및 住岩 多目的댐 建設과 관련하여 合計 1,540億의 工事を 隨意契約으로 受注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隨意契約하게 된 경위는 82年4月 財務部가 委員님 지시하신 대로 共榮土建을 東亞建設에 引受시키면서 그 引受로 인한 損失金 900億원에 대한 補償策으로 이 工事を 隨意契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隨意契約하게 된 것이 適法인지 여부 및 特惠與否를 조사하였으나 달리 犯罪를 구성하는 등 違法事實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建設部에서는 本件契約과 관련하여 調達廳에 東亞建設과의 隨意契約을 의뢰하여 調達廳에서 隨意契約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그 隨意契約締結로 建設部에서 監査院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監査院의 監査結果는 아직 檢察에서 공식적으로 通報받은 바가 없습니다.

檢察에서는 그 외에도 이 隨意契約과 관련한 金品授受등 犯罪를 구성할만한 혐의점을 집중 搜查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5共非理 등의 공정한 搜查를 위하여 特別檢事制度를 도입한 용의유무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檢察로서는 과거 不正과 非理를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여 國會에서 5共非理特委까지 구성하게 되고 特別檢事制까지 논의하게 된 데 대해서 여러 委員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많은 자성도 하고 있습니다.

特別檢事制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가 이릅니다.마는 최근 言論에 보도된 特別檢事制度 內容은 檢察存在意義를 배재함은 물론 憲法精神에 비추어 옳지 못하고 그리고 實效性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도 3회에 걸쳐 特別檢事制度를 채택한 바가 있지만 이는 建國初期나 革命的 상황하에서 모두 憲法의 明文規定에 따라 설치된 것이었고 모두 후에 그 處理內容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特別檢事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예는 美國뿐인데 이는 檢事가 政治的 고려 또는 選舉에 의하여 任命이 되고 身分保障도 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리 나라와 法體系가 다른 등 檢察組織과 法體系의 特殊性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制度는 美國에서조차 끊임없이 違憲論議가 있어 그 이름을 「스페셜 프로시큐터」에서 「인디펜던트 카운슬러」로 변경할 정도였습니다.

「이란 콘트라」사건도 이미 特別檢事が 任命된 지 2년이 되었으며 그간 수사비용만도 1,200萬弗에 이르고 數千種 이상의 文書들이 조사되었으나 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는 등 實效性에 많은 問題點이 노출되어 최근에는 美國에서조차 特別檢事制度에 강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朴委員께서 檢察總長은 法務部長官의 지휘 감독을 받고 檢事は 總長의 지휘를 받으니 이 制度 自體가... 制度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檢察이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 特檢制度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檢察制度는 日本의 制度와 같습니다.

日本도 檢察總長은 法務部長官의 지시감독을 받고 또 檢察總長은 一般檢事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日本의 檢察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는 과거에 造船疑惑事件이라고 해서 政府가 부패했을 때 檢察에서 그 政府의 腐敗公務員을 용감하게 파헤쳐가지고 그때 큰 社會的 문제가 일어났고 급기야는 그 해 가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마는 內閣이 도괴된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나카」首相을 拘束한 것은 역시 日本檢察이었습니다.

저희 制度와 똑같은 制度입니다. 문제는 그 檢察이 日本처럼 잘 일을 했느냐 아니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特別檢事制度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檢察廳法은 최근에 法을 고쳐가지고 檢察總長의 任期制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즉 檢察總長은 소신대로 搜查를 하고 소신대로 지휘감독하라 그러한 의도가 그 制度에 깔려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現行 檢察廳法에 의하면 우리 檢察은 얼마든지 美國의 特別檢事 이상으로 또 日本의 檢察 이상으로 일을 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소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委員님께서 이번 수사에 임하는 檢察의 자세를 비판하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먼저 이번 사건을 수사한 檢察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檢察은 中立의 立場에서 오로지 불편부당의 자세로 非理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지난 時代의 잘못된 점을 청산하는 한편 엄정한 司法處理를 통하여 國民의 의혹을 씻어줌으로써 政治 社會의 안정에 기여하고 公權力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檢察의 수사는 가능한 限 빠른 時日內에 진척되지 아니하면 나라 전체가 과거의 어두운 면으로만 빠져들어 산적한 懸案의 해결과 밝은 장래설계를 위한 단합된 國民의 힘이 여러 갈래로 흩어질 것이라는

판단아래 大檢察廳에 第5共和國 特別搜查部를 設置하여 集中的으로 搜查活動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搜查上 證據蒐集이나 公訴時效 完成등 法律上으로 制約도 많았음이다. 마는 이번 檢察의 5共非理 搜查를 통하여 全斗煥 前 大統領의 親兄 全基煥 등을 비롯한 親姻戚 대부분과 張世東 前 青瓦臺警護室長 前職閣僚 등과 상당수를 拘束하였으며 全斗煥 前 大統領의 夫婦 自身도 지난 時代의 잘못에 대한 責任을 痛感하고 山寺에 隱遁하여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檢察의 이번 5共非理 搜查結果는 세세한 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고 國民의 評價 또한 個個人的 立場과 歷史의 未來를 보는 視角에 따라 한결갈을 수는 없겠음이다. 마는 檢察로서는 주어진 與件下에서 非理의 真相糾明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檢察은 모든 搜查力을 民主治安活動과 自由民主體制의 守護에 주력해 나가면서 5共非理에 관하여도 通常的인 組織과 活動으로 犯罪의 嫌疑가 나타나는 대로 추호의 주저없이 계속 剔抉해 나가므로써 國民의 信賴 받는 檢察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金 炫委員님의 質問에 答辯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순서대로 答辯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朴相千委員 質問에 答辯하셨고 本委員의 質問에 대한 答辯이 없었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盧武鉉委員의 質問에 答辯드리겠습니다.

國際「그룹」解體와 관련하여 解體決定의 合法性 與否 引受者 選定過程의 合法性 與否 實査의 公正性 및 引受企業에 대한 金融 및 租稅支援의 合法性 및 合理性에 대하여 質問 하셨습니다.

먼저 國際「그룹」整理 및 引受者 決定經緯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盧武鉉委員 合法與否만 答辯해 주세요. 合法이다 不法이다 이렇게만 答辯해 주세요. 경위는 필요없어요. 경위는 報告書에 나와 있

으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合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補充質問하겠습니다.

解體決定의 法律上 性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法에 根據해야 하며 어떤 法에 根據해서 合法的으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이것 우선 다음 質問에 答辯...

○盧武鉉委員 合法이라고 하셨으니까 바로 答辯하셔야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補充質問하시면 또 모아 놓았다가 또 答辯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지 저도 이것 정리를...

○盧武鉉委員 바로 答辯하셔야지 한참 후에 答辯듣고 答辯듣고 그게 무슨 答辯입니까?

合法이라고 하니가 合法이 무슨 根據에 의한 것인지...

○法務部長官 許亨九 내용이 結論은 合法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어째서 合法이냐를 알려면 역시 또 따져 봐야 알지 제가 숲 事件을...

○盧武鉉委員 合法與否를 搜查를 해야 되는데 이미 搜查를 했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따져 보기는 뭘 따져 봐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搜查結果를 제가 또 答辯드리려면 역시 좀 정리할 時間이 필요합니다.

○盧武鉉委員 무슨 정리가 필요합니까? 質問이라는 것이 合法이냐 아니냐고 할 때에는 解體의 法律的 性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解體行爲는 곧 法律行爲아닙니까? 그렇지요? 司法上의 法律行爲아닙니까? 法律行爲면 이 法律行爲는 어떤 法에 의해서 銀行法이든지 아니면 民法이든지 商法이든지 어떤 法律에 의해서 어떤 法律에 根據해서 解體한 것이며 合法이다 不法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搜查안했으니까 答え 나올 수가 없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렇지 않습니다. 搜查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政府 關聯部處의 政策決定과 企業主와의 合意에 따라서 決定이 된 것이기 때문에 不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우선 解體決定 이렇게 말하는 데...

委員長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補充質問할 權利가 있습니다.

銀行에 負債가 많기 때문에 解體가 된 것이지요?

그냥 쪽 들어 보십시오.

○法務部長官 許亨九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國際「그룹」을 비롯해서 많은 不實企業의 解體決定이라는 것은 通常의인 용어로 解體決定이라고 하지만 法律上 債權銀行이 債務者에 대해서 擔保權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擔保物에 대해서는 그것이 一般的으로 擔保는 抵當權의 規定에 의해서 擔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讓渡擔保의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역시 抵當權의 規定에 의해서 擔保物이 處分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그것이 債務의 辨濟에 充當하게 되는 것인데요. 抵當權에 의하면 반드시 競賣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競賣法에 의한 競賣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讓渡擔保의 경우라 할지라도 競賣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競賣가 아니라 할지라도 競賣를 하게 되는 擔保物의 處分이 반드시 競賣節次를 거치게 하는 그 立法趣旨를 최대한 살려서 擔保物 處分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떠한 債權者가 債務者가 제공한 擔保物에 대해서 擔保權을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債權者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 債權者는 銀行입니다. 이 銀行이 債權實行에 당하게 될 때에는 銀行法 그리고 監督院 規定 其他 銀行 自體의 여러 가지 規定에 의해서 處理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規定에 의하면 系列企業社의 경우에 正常化計劃 소위 自救努力의 支援이라는 방식이 있고 第3者引受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不實이라고 판정되면 그 다음에 第3者引受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正常化計劃에 의해서 自救計劃을 支援할 것이냐 이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銀行規定에 의하면... 金融團規定에 의하면... 이 두가지 방식 이외에는 모두 다 違法입니다.

그러면 不實與否를 판단한 資料는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두가지의 방법중에 어느 쪽

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銀行 自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했으면 그 判斷資料는 과연 適正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해서 第三者引受가 될 때에도 第三者引受 方式에 있어서는 擔保物의 處分이기 때문에 民法 기타 競賣法 등의 規定에 따라서 競争에 의해서 가장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實査는 공정해야 됩니다. 實査의 公正性은 結果的으로 公正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 公正性이 擔保될 수 있는 節次를 밟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國際를 비롯한 여러 不實企業의 整理過程에 있어서 이와 같은 節次가 다 이루어졌는지 與否 그리고 實査가 一方的으로 不公正하게 되었을 때는 債務者가 특별한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法規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擔保物을 處分한 결과 債務者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결과에 있어서는 背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損害額의 算定도 아울러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權力이 그것을 銀行에 지시했다면 教唆犯이라도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각도에서 調査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合法하고 뻔히 버리면 그만입니까? 先輩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제가 좀 치밀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質問도 예상해 가지고 즉각즉각 答辯을 드려야 옳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사실 자세히 검토를 하긴 했는데 지금 기억을... 여러 件이 되어서 사실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盧委員 말씀하신 法的節次 전부 그대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事件의 경우에는 擔保權의 強制實行이라면 물론 競賣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當事者의 합의가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競賣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民法 608條에 의하면 代物辨濟豫約의 禁止規定이 있습니다. 그리고 讓渡擔保에 있어서도 강한 讓渡擔保와 약한 讓渡擔

保의 概念規定이 있습니다. 너무 專門的으로 들어가는 것같은데요. 當事의 約定이라고 해서 남의 擔保物을 마구잡이로 뺏는 것이 아닙니다. 擔保物을 귀속시켰을 때도 그것은 귀속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精算業務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法院의 判例를 보면 檢察이 누차 많은 犯罪에 관해서 起訴를 하고 그에 따라서 法院에서 나온 判例를 보면 擔保物을 取得했을 때는 擔保權의 實行을 위해서 또는 債務辨濟를 위해서 擔保物의 所有權을 취득했을 때는 그 擔保物을 處分해서 債務에 精算할 때까지 他人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라고 해서 가장 적절한 方法으로 선량한 管理의 主要義務로서 평가하고 精算業務를 이행하지 않을 때 背任으로 처벌받습니다.

檢察은 반드시 그렇게 지금까지 처벌해 왔습니다. 當事者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이... 그 質問이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當事者間에 어떤 합의를 보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만약 합의도 없이 제 마음대로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옳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합의자체가 強壓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被害者가 지금 他殺당했다 그리고 강제로 뺏겼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解體의 결정은 2月4일부터 大統領하고 財務部長官하고 사이에 오고가고 2月7일에 거의 그 윤곽이 具體的으로 결정되었는데 2月13일에 銀行長이라는 사람이 貸出 더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株式을 전부 處分委任承諾書를 받았습니다. 債務者로부터 處分委任承諾書를 받은 순간 財務部에서는 이미 解體決定이 나 있었고 銀行長은 債務者에게 貸出을 앞으로 더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處分委任承諾書를 받았습니다. 이런 무슨 사기극을 벌여 놓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아무 調査도 안하고 被害者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는 他殺당했다 나는 강제로 뺏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納得할 수 있을만한 調査를 안해 놓고 合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調査를 못했으면 못한 것이고 政治的으로

이미 他殺된 것으로 지난간 것인데 매달리면 뭐 우리 民生安定에도 지장이 있고 檢察이 할 일도 못하고 時局만 시끄럽고 하니 까 대충 문 단기로 했다 그래서 調査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合法이다 뭐가 合法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꾸중하시는 것도 일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盧武鉉委員 가장 國民이 의혹을 가지고 被害者가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本委員이 물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 점에 관해 搜查報告書에는 단 한줄의 이야기도 없고 이게 日本檢察을... 제 나라 首相을 搜查해가지고 起訴하고 하는 日本檢察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韓國의 檢察입니까 이것이...

比較할 것을 比較하셔야지요. 어찌 日本檢察과 韓國檢察을 갖다가 比較할 수 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比較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檢察도 그러한 方向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여기 이 搜查結果가 大韓民國 第6共和國의 檢察像이다 이렇게 보편 되겠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5共非理 지나간 搜查하고 그것과 뭐 다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우리 檢察은 좀 잘해 보겠다 이런 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것 오래된 것 資料도 힘들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檢察에서 열심히 해도 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盧武鉉委員 1個 國會議員이 소상하게 調査해 놓고 있는 일을 國會議員이 調査하는 것을 檢察이 그 방대한 搜查組織을 가지고 資料도 힘들고 時間도 흘렸고 그것 무슨 말씀이십니까?

檢察하고 國會하고 그러면 機能을 바꿀까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은 반드시 아까 金炫委員도 보통 搜查 有經驗者 아니면 모르는... 하는 것을 研究했습니다.

檢察가 搜查하는 것이 專門이니까 다할 것

같지만 그 檢事들 警察에서 보내오는 竊盜事件만 해도 山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國會議員이 한 문제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檢事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또 더구나 우리 盧武鉉委員께서는 상당히 모든 것을 깊이 들어가는 後輩인데 그리하시면... 아! 실지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우리 檢事들 한번 가 보시면 모두 다 記錄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맨날... 어떤 檢事는 不平합니다. 이것 우리 뭐 맨날 보내오는 일이나 해야 한다고...

○盧武鉉委員 長官님! 그 듣고 있는 後輩 얼굴 화끈거리게 그렇게 答辯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게 아닙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무슨 말씀을... 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여기에 지금 27名의 檢事 108名의 專門要員을 投入해가지고 調査를 했다고 말씀해서 놓고... 그리고 맨 처음에 이미 目標가 歷史的 敎訓을 남기겠다는 정말 각오가 단단하게 하고 시작한 搜查가 國會議員 몇이서 일렁일렁 뭐 여기 이 書類 내와라 저 書類 내와라 해 가지고 몇 장 내 주는 것 가만히 앉아가지고 갖다 주는 것 받아 가지고 얘기한 것보다 더 감감하게 앉아 가지고...

○法務部長官 許亨九 하여튼 충분한 搜查가 못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저 盧委員님도 辯護士를 하셨기에 어느 정도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싶습니다마는 저도 辯護士해 보니까 檢事할 때 제대로 그 判例研究하기 상당히 힘들었는데 辯護士를 하니깐 그것이 먼저 첫째 하나 돈을 받았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盧武鉉委員 長官님!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 委員님! 그것 진짜입니다. 어찌면 한 件을 가지고 열흘 20日 判例研究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判事 檢事보다도 그 件에 관해서는 내가 상당히 研究가 많이 된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 특히 盧委員이야 충분히 그런 能力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는데 참 우리 檢察의 調査가... 이것 진담입니다.

○盧武鉉委員 이것이 보통의 搜查라면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時代의 잘못을 清算하고 과거의 不正과 非理를 단호히 척결해서 再發防止를 위한 歷史的 敎訓으로 삼아야 된다는 國民的 輿望에 따라... 하는 搜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따지고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의 答辯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大統領 談話의 趣旨를 받들어... 이런 것도 좋은데요. 그냥 자꾸 國會에서 이리 길게 떠들어대는 것이 政局에 별로 安定이 될 것 같지도 않고 政府 與黨에 별로 이롭지도 않은 것 같고 大統領에게도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짐을 떠맡아 볼 수 없을까 이래서 가로 말아 이렇게 政治的으로 부득이 搜查를 했다 이렇게 報告書가 써 있다면 本委員은 절대 한 마디도 안 따집니다.

그런 搜查로서는 100點짜리니까요. 5共非理 調查特委의 活動을 아주 稀釋化시키고 오늘날 歷史的 課題가 무엇인지를 稀釋化시키는 데에는 100點짜리 搜查結果이기 때문에 더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序頭에 분명히 歷史的 課題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歷史的 課題임을 내세우는 자리에서 檢察이 國會議員보다 하다 보면 바빠서 못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答辯하신다는 것은 이것 조롱하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바빠서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문제에 관해서 더 깊이 研究를 하셨는데 우리 檢察이...

○盧武鉉委員 疑惑의 本質에 접근해 들어가야지 왜 疑惑의 本質에는 접근해 들어가지 않고 核心에는 접근해 들어가지 않고 마치 政府에서 지금까지 長官이나 銀行長의 報告書 解體經緯報告書 읽은 內容 그대로가 搜查記錄에 結果報告書에 올라와 있으니 무슨 장난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部分 答辯해 주십시오. 結果的으로 지금 聯合鐵鋼의 實查過程에서는 不正이 있어서 사람이 拘束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結果的으로 얘기하면 앞에서부터 解體 決定에서부터 引受者選定 그리고 實查過程의

公正性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發生한 事實이고 이것은 훌륭히 背任을 구성할 수도 있는 素地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盧武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質疑를 하시고 또 答辯을 들었던 朴相千委員도 補充質疑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答辯 다 듣고 補充質疑...

○盧武鉉委員 補充質疑를 하는데... 다음에 補充質問 더 안 하겠습니까. 이것 뭐 뻔한 건데요.

○委員長 李基澤 더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委員長으로서 할 얘기가 많습시다마는 어쨌든 지금 우리 委員들이 저도 序頭에 여러 가지 暗示的인 얘기를 했습시다마는 결코 委員들 지금 네 분이 質疑를 한 데 대해서 政府答辯 지금 첫째 두번째에 막혀 있습니다마는 檢察의 搜查發表가 相當部分 사실 國會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도 지금 제대로 못 할 정도라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성질 급한 結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실한 答辯이 지금 못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마 우리 전부가 다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會議은 會議의 本質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事件의 眞相을 糾明하는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檢察이 이렇게 事件을 搜查해서 發表를 했는데 마무리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國會가 보는 점은 이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만 지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委員長으로서 判斷을 해 봅니다. 그런 점도 參考로 하셔가지고 다음에 盧武鉉委員 質問에 대해서 성실히 答辯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金炫委員 指摘事項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 꼭 이것은 事案의 성격상 補充質疑를 해야 될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가능하면 問題點만 指摘해서 補充質疑를 해 주시기를 委員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長官도 그 補充質疑를 당하지 않도록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하세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 다음에 東國製鋼이 84年 내지 86년에 公開된 獻金을 했는데 特惠가 아니라면 獻金을 하게 된 經緯와 趣旨



가 무엇이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東國製鋼 會長 張相泰는 聯合鐵鋼 引受前 新世代心臟財團에 22億원을 出捐한 事實은 있읍니다마는 新世代心臟財團의 寄附金은 聯合鐵鋼 引受의 事前工作으로 認定할만한 資料가 없고 그 外에 이 新世代心臟財團에 대한 出捐으로 인하여 東國製鋼이 어떠한 特惠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아니 하였읍니다.

그 다음에 心臟財團敷地를 韓信公營에 轉賣하는 과정에서 靑瓦臺의 壓力을 搜查하였는지도 搜查의 端緒는 무엇이었는지 市有地拂下후 轉賣한 것은 違法이 아닌가 搜查結果 李鶴捧 議員의 職權濫用과의 차이는 어떠냐 이런 質問을 하셨습니다. 心臟財團敷地 市有地轉賣를 搜查하는 과정에서 市有地拂下후 韓信公營의 轉賣하는 節次上 문제가 파악되어서 서울시 關係者와 前靑瓦臺 서울시 擔當秘書官을 調查하였읍니다. 그 상세한 경위를 보면 心臟財團이 85年7月11日 서울시로부터 17億2,150萬원에 5年 分割納付條件으로 分納하던 땅을 87年11月24日 韓信公營에 20億500萬원에 賣渡한 사실이 있는데 그 賣渡過程에서 당시 靑瓦臺 政務秘書室 서울시 擔當秘書官이 分納金 納付完了 전에 賣渡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이 敷地에 관한 名義를 心臟財團에서 韓信公營으로 變更하여 줄 것을 協調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서울시에서 이 요청을 檢討하는 과정에서 管財課長등 實務者들은 兒童福祉事業 支援目的에 違背되고 承繼對象者가 公益法人이 아니라는 이유로 反對意見도 있었으나 財務局長이 副市長 市長의 決裁를 받아 名義變更을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名義變更承諾이 地方財政法의 施行規則인 서울시 市有財產管理 및 處分業務 施行細則에 違背된 行政處分인 사실은 인정됩니다마는 그 당시 副市長은 名義變更을 하는 것이 施行細則에 違反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公益法人은 心臟財團에 불필요한 經費를 支出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서울시市長의 承認만 있으면 名義變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心臟財團과 서울시간에 作成된 賣買契約書 6條를 根據로 서울시에 名義變更을 協助要請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擔當秘書官이 서울시에 위 취지의 名義變更을 許可하여 주도록 協助要請한 사실

犯罪가 成立된다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判斷되었읍니다.

이 행위는 犯意가 없어 犯罪가 成立된다고 보기는 어리우므로 李鶴捧 議員의 職權濫用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聯合鐵鋼 資產再評價와 관련하여 1986年2月 接受된 陳情事件이 이번에 前 聯合鐵鋼 專務 이철우등 2名을 拘束한 事件과 동일한 事件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들을 뒤늦게 拘束한 이유 및 그 陳情事件의 處理結果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檢察로부터 報告받은 바에 의하면 委員께서 質疑하신 사실은 86年6月頃 당시 解雇勤勞者인 강은호의 妻 유정자가 聯合鐵鋼社長 정재덕을 相對로 同人이 聯合鐵鋼 資產評價 實查와 관련하여 會社의 生產品인 冷延鋼板의 生産日字를 週及記載하여 會社에 財産上 損害를 입혔다는 요지로 告發한 事件으로서 搜查結果 정재덕은 實查作業과는 전혀 無關하다고 犯行을 극력 否認하고 그 外에 달리 犯罪事實을 立證할 證據가 없어 86年12月26日 無嫌疑 決定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철우등 2名을 拘束한 事件은 지난 88年5月6日 聯合鐵鋼 正常化 推進委員會 박규식등 勤勞者 691名이 告發한 事件으로서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件과는 別個의 事件이며 달리 事件處理를 遲延하였거나 뒤늦게 關係者들을 拘束한 것은 아닙니다.

○盧武鉉委員 한 마디만 보태겠습니다. 本委員이 말했던 聯合鐵鋼 陳情件은 86年2月13日에 냈다가 取下했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心臟財團의 土地件에 관해서는 지금 答辯하신 것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檢討해서 書面으로 나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알겠습니다.

○盧武鉉委員 本委員의 의견과는 매우 다릅니다.

다른 委員님의 質問時間을 뺏고 싶지 않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알겠습니다.

다음 金 炫委員께서는 五大洋變死事件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委員長 李基澤 長官! 지금 金 炫委員이 자리를 잠깐 비웠으니까 朴相千委員이 補充質

疑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朴相千委員 時間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政治資金을 檢察이 이번에 政治資金은 搜查對象에서 제외했다고 했는데 政治資金의 개념을 어떻게 정했고 어느 범위까지를 政治資金으로 보았는지 제가 물었는데 答辯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구태여 묻느냐 하면 長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政治資金은 搜查가 「스튜」되었어요. 中斷되었어요. 이것은 金斗煥의 搜查除外와 더불어 이번에 檢察의 5共非理搜查에서 5共非理의 眞相이 糾明되지 아니하게 한 最大의 障礙要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概念設定도 해 놓지 않고 無條件 政治資金을 搜查對象에서 제외할 경우에 어떻게 眞相이 糾明되겠는지 이래서 묻습니다.

이 政治資金의 定義를 어떻게 設定하셨는지 卽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다음에 또 물으시면...

○朴相千委員 이것은 그러면 다음에 書面으로 答辯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日海財團의 寄附금이 強制性을 띠었다고 하는 것을 證據로 몇가지 들었습니다. 大統領이 靑瓦臺로 불려서 指示했고 保安司 大領등을 보내서 강요했고 또 國際「그룹」에 膺懲을 함으로써 다른 企業들을 恐怖에 떨게했고 이런 여러 가지 證據를 대서 이 정도면은 恐嚇罪 내지는 職權濫用罪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證據를 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答辯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答辯이 있는데 公益財團에 寄附금이 歸屬되었기 때문에 犯罪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第3者인 公益財團에 寄附금이 歸屬된다고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職權濫用罪의 構成要件에 아무런 沮害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不良輩가 資產家를 협박해 가지고 너 全財產 公益財團에 寄附해라 해서 그 사람이 寄附하지 않을 수 없게 했을 때 그 暴力輩가 아무런 犯罪가 안될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法理上 납득할 수 없는 答辯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습니다.

受益者 公益法人이라고 해서 반드시 恐嚇罪가 된다 안 된다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마는...

○朴相千委員 그러면 職權濫用罪를 적용하지 않는 根據가 무엇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事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公益法人에 돈이 들어간 경우와 어떤 行爲를 하는데 그런 경우와 어떤 일 個人들이 어떤 利得을 본다는 것과는 판단할 때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公益法人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하고 여러 가지 綜合해 보면 그것은 犯罪로 보기 어렵다 이런 判斷을 했습니다.

○朴相千委員 犯罪로 보기 어려운 것이 公益法人에 돈이 들어간 점을 참작했지요. 情狀의 문제와 犯罪成立 有無와 情狀의 問題를 혼돈하고 계신다고...

○法務部長官 許亨九 예. 情狀的인 面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어떤 事案을 판단하는데 參考資料가...

○朴相千委員 罪는 되지만은 公益法人에 냈기 때문에 이것은 立件 안 했다할지 이렇게 쓰셔야지 犯罪가 안 된다고 그렇게 했으니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損費處理를 지시한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新世代育英會 新世代心臟財團 關係證人들을 訊問할 때 李順子씨로부터 損費處理를 하도록 해 달라는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證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 損費處理한 것이 稅法에 따랐고 아무런 不法이 없다고 答辯하셨는데 지금 國稅廳에서 내 놓은 寄附金 稅務處理實態 確認結果라는 油印物에 이 損費處理가 잘못 되어 가지고 追徵을 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도 나타나고 있고 5「페이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 나중에 檢討합시다. 지금 다른 분들 時間 땀기 싫어서... 이것도 書面答辯해 주세요. 그리고 外國產 소 導入에 관해서 畜協

이 畜産基金으로 全額 利益이 吸收되었고 輸入業者는 아무런 利得을 본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믿기 어려운 것이 소 2萬頭의 追加導入을 建議한 새마을運動 京畿道支部長은 당시 全斗煥大統領에게 새마을運動의 活性化를 위해서 소를 輸入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建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利益이 없는 일을 가지고 새마을運動 活性化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만일 그 자체로 利益이 없었다고 하면 畜産基金의 일부를 새마을運動本部가 가져다 쓴 일이 있는 지금 이것도 書面答辯해 주십시오. 그리고 産業銀行 敷地落札에 관해서 靑瓦臺에서 미리 特定業體에 주기로 방침을 決定해 놓고 豫算會計法上 公開競争入札을 하게 한 것이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 應札을 못하도록 한 것이 不法이나 아니냐를 물었는데 이것 答辯이 없습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 아까 答辯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것은 前職 大統領 계실 때 1979년에 이미 그렇게 決定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남들이 다 알기 때문에 入札 자체를 다른 사람은 參加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調査結果는요.

그러니까 「롯데」끼리... 자기들끼리 하기는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 못하도록 누가 妨害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1979년... 벌써 몇 년前 아닙니까?

79年度에 그 당시에 大統領이 그렇게 아파 양해한 것 같습니다.

○朴相千委員 그 사실을 우리는 몰랐는데... 國民들은 몰랐는데 어떻게 다른 業體들이 알았을까요?

다른 業體들이 어떻게 全大統領이 「롯데」에게 주기로 한 사실을 알았느냐 이거예요? 다른 國家機關이 다른 業體들에게 여기에 應札할 만한 業體들에게 이것은 大統領이 「롯데」에게 주기로 했으니까 너희들은 入札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連絡을 했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이것이 상당히 공공연히 알려졌다 그렇게 調査가 되고 있습니다.

産業銀行 敷地는 79年4月 서울市에서 당시 朴正熙大統領에게 報告하여 「롯데호텔」에게 賣却하기로 이미 指針을 받았던 것인데 그 후

産業銀行 移轉場所確保 등이 어려워서 遲延되고 있다가 80年1月 서울市에서 全斗煥 前大統領에게 報告를 한 후에 이 방침을 確認하여 서울市에서 産業銀行...

○朴相千委員 아니 그것 다 읽으시지 마시고... 어떻게 다른 業體들이 알게 되었느냐는 것이예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業界에서 79年 이래 그 敷地의 「롯데」 賣却方針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이렇게 調査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敷地가 크고 또 要地고 해서 저도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마는...

○朴相千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住岩「댐」과 陝川「댐」을 東亞建設에서 隨意契約한 것 이것 豫算會計法 違反이나 아니냐를 물었는데... 이것 豫算會計法 違反이지요?

隨意契約할 性質이 아니기 때문에 指名競争入札이나 制限競争入札에 붙었어야 할 것을 隨意契約 한 것은 豫算會計法에 違反되는 行爲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것 좀 더 檢討할 時間을 주십시오.

○朴相千委員 그것도 書面答辯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答辯안해도 좋은데 監査院에 通報를 해서 監査院이 監査를 했으면 檢察에서 搜查를 할 때 監査院 監査結果는 가져다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監査院 監査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搜查終結했다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5共搜查때문에 民生治安이 제대로 안되어서 戒嚴도가 들끓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民生治安이 제대로 안된 것은 警察力이 時局治安에 動員되었기 때문이지 5共非理搜查때문에 民生治安이 안된 것이 아닙니다. 檢察에서 5共非理調査를 제대로 했으면 다시말하면 國民들이 公權力의 正當性에 대해서 信賴를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社會安定과 民生治安이 확실하게 돼갑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묻는 것이 아니고 견해만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特別檢事法을 野黨이 提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憲法精神에 違憲이고 또 檢察의 存在意

義를 말살하는 措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言及을 하겠습니다. 美國의 特別檢事는 選舉制이고 그 能力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美國에서는 特別檢事를 했는데 우리 나라는 檢事는 檢事が 專門職이고 公務員이기 때문에 特別檢事が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3權分立에 違反된다는 점에 대해서 3權分立을 憲法에 明文化한 趣旨부터 잘못 해석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은 長官님께서 속으로 아시다시피 3權分立을 해 둔 이유는 과거에 專制國家와 같이 3權을 立法 司法 行政權을 한 사람의 君主에게 集中시켜 놓았을 때 國民의 自由와 權利가 確保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세 갈래로 나누어가지고 各各 맡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機械적으로 엄격하게 分離해 두는 것이 아니고 서로 牽制와 均衡을 取하도록 함으로써 國民의 權利와 自由를 確保하게 한다는 데 趣旨가 있기 때문에 이룰데면 지금 檢察權은 行政府에 속합니다라는 現行 刑事訴訟法은 告發人の 裁定申請에 의해서 法院이 檢察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 刑事訴訟法上의 裁定申請이 違憲이라고 하는 論難은 한번도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또 立法權은 명백히 國會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大統領이 法律案拒否權을 行使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立法權을 國會가 가진다고 해서 立法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外部機關은 전혀 關與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行政權은 政府가 가진다고 해서 行政에 대해서 立法府나 司法府가 전혀 關與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세계에서 가장 3權分立이 철저하게 되어있는 美國에 있어서도 이 特別檢事制가 違憲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美國의 경우에는 美國 法務省이... 法務長官이 特別檢事提請을 하면 法院이 特別檢事를 任命하게 되어 있습니다. 特別檢事의 任命權이 公務員 任命權 자체가 法院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昨年 6月29日에 美國 大法院은 「울슨」事件에서 이것은 違憲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野黨이

構想하고 있는 特別檢事制는 大統領이 特別檢事를 任命하고 다만 特別檢事의 候補를 大韓 辯協이 推薦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複數로 推薦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違憲인지 이것은 앞으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日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檢察制度가 똑같지마는 日本檢察은 「다나카」首相을 拘束하고 기타 政治的事件을 훌륭히 解決해 내고 있는데 구태여 日本하고 똑같은 制度를 가진 韓國에서 特別檢事制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日本의 경우는 「다나카」首相을 日本에서 實質的인 政權을 쥐고 있는 最高 責任者를 搜查해서 拘束을 했습니다.

韓國 檢察은 全斗煥씨를 拘束하라는 말도 안했는데 全斗煥씨에 대해서는 搜查 자체를 忌避했습니다.

日本 檢察과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日本 檢察은 「다나카」首相을 搜查를 했을 뿐만 아니라 拘束해서 訴追를 했어요. 그런데 韓國 檢察은 全斗煥씨에 대해서 搜查만 하라고 해도 眞相만 糾明하라고 해도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래 놓고 日本 檢察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日本 檢察은 「록히드」事件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典型的인 政治資金事件을 搜查해서 「다나카」首相을 拘束했어요. 그런데 政治資金의 概念도 規定해 놓지 않고 무조건 좀 이상한 것은 搜查를 「스톱」시키면서 이것은 政治資金이니까 搜查 안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日本 檢察 자세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 日本 檢察에서 「다나카」首相을 拘束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 과거에 「사또」 自民黨幹事長을 拘束하고 한 것은 그렇게 日本歷史上 劃期的인 分水嶺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평상시인데 그런 搜查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共和國 당시에 政權이 일종의 私有物 비슷하게 돼가지고 腐敗가 構造的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골프」場 內認可權 같은 완전히 行政業務에 속하는 것이 靑瓦臺로 집중되어 있고 거기서 돈을 안주면 認可가 안되는 이런 構造的인 腐敗가 누적돼 가지고 완전히 習慣化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

해쳐서 檢察에서 밝힘으로써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權力者의 腐敗가 안 생기게 하고 또 國民들이 檢察權을 信賴하도록 해서 民主化에 기여하도록 이런 중대한 歷史的 使命을 띠고 있고 日本 檢察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日本의 狀況과... 우리나라는 지금 民主化로 가는 歷史的 轉換期인데 이때 檢察이 좀 民主化에 기여해 주시오 이때 공정한 搜查를 해서 國民들로 하여금 檢察을 믿게 해주시오 公權力을 믿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했는데 이때 搜查를 이렇게 해놓고 政治資金의 概念도 정하지 않고 政治資金 搜查 못한다 日本에서는 「다나카」를 拘束하는데 全斗煥씨는 아예 調査도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5共非理調査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特別檢事도 안하겠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 國民이 누가 納得하겠어요! 그래 이점은 지금 여기서 答辯하실 준비가 안되신 것같으니까 이점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 다음에 野團의 法案에 政府의 태도를 결정할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하면 과거의 特檢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과거의 特別檢察部는 일종의 革命檢察部 혹은 特別檢察部라는 별개의 機構를 構成해 가지고 또 特別裁判部를 構成해 가지고 革命裁判을 했지만은 지금 野團 3黨이. 요구하고 있는 特別檢事制는 長官이나 總長 다시 말하면 執權勢力의 指示를 받지 않는 獨立的 位置에 있는 1인디펜던트 카운슬(Independent Council) 이것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搜查를 해달라 그리고 그 대부분의 搜查도 현재 있는 檢察 檢事들을 파견 받아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歷史上에 있었던 憲政史에 있었던 特別檢察部나 革命檢察部하고는 전혀 質이 다른 겁니다. 다만 檢事が 몇 사람 있는데 이 檢事들은 政治的 影響을 받지 않고 공정한 搜查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안하겠다 그거예요. 이것도 안하고 무슨 재주로... 내가 답답한 것이 政府나 民正黨이 앞으로 무슨 재주로 國民들에 대한 公權力의 威信을 확립해서 어떻게 社會安定을 시킬지 이렇게 안하면서 어떻게 社會安定을 시킬지 妙方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 사람한테 알려

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에 이 法案을 그야말로 客觀的으로 檢討하면서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한다고 公稱하시는데 拒否權 行使에 신중을 기해 주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答辯 계속하세요. 共和黨 金 炫委員이 共和黨에서 代表性을 지닌 質疑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共和黨 지금 여기에 계시는 委員들께서 答辯을 해 달라는 要請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許亨九 金 炫委員께서 五大洋變死事件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박한 知識과 資料를 바탕으로 檢察搜查에 대한 問題點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敬意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檢察은 五大洋事件이 발생한 이래 계속 內查 중에 있다가 國會5共特委에서 疑問點을 提供하여 다시 現地 警察에 搜查本部를 設置하고 廳에서 내려온 유재순 등 參考人 및 剖檢醫 鑑定人을 調査하고 또 參考人을 帶同 2次에 걸쳐 現場檢證 및 失蹤者所在搜查 등 積極的인 搜查活動을 展開한 바 있습니다.

搜查한 결과 現場狀況 死體剖檢結果 變死者들의 龍仁工場에서의 行蹟 現場에서 발견된 「메모」紙 內容 등을 종합해 볼 때에 第3者에 의한 他殺이라는 資料를 발견하지 못하고 88年1月24日 內查終結하였으나 지금 이후라도 他殺인 것을 인정할 만한 資料가 있으면 언제든지 搜查를 再開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質疑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檢討를 하겠음을 報告드립니다.

그 다음 金仁泳委員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새世代心臟財團事件과 관련하여 保健社會部의 心臟金庫設立計劃案이 取消된 背景은 무엇이며 心臟財團이 設立되기 이전에 이미 12億원의 基金이 造成되었고 그 중 10億원이 保社部에 의하여 造成되었다는데 그 出處는 어떠하고 定款에 基金으로 먼저 3,000萬원을 出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첫째 保社部의 心臟金庫設立計劃이 取消된 背景을 말씀드리면 83年11月25日 保社部는 84年부터 91년까지 265億원의 心臟病患者治療基金을 造成한다는 내용의 心臟金庫設立計劃案을

마련해서 運用主體를, 新世代育英會로 하는 것이 1案이고 民間團體로 하는 것이 2案이고 國立醫院으로 하는 것이 3案으로 하여 그 方案을 檢討하던 중 84年1月 金正禮 保社部長官의 建議로 新世代育英會에서 하고 있던 心臟病患者支援事業을 擴大하기 위해서 별도의 心臟財團을 設立함으로써 保社部の 心臟金庫計劃案 중 1案이 採擇된 結果가 되어 保社部の 心臟金庫設立計劃은 자연 取消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 心臟財團設立 전에 造成된 12億원의 出處는 8億원은 韓一合機 金重源등 4名이 낸 돈이고 4億원은 育英會의 84年 心臟病患者診療事業費豫算金額을 移管받은 돈입니다.

셋째 基本資産 出捐에 관하여는 3,000萬원을 出捐하였다가 후에 2億원으로 增額한 것입니다.

그 다음 東部「그룹」이 東進製鋼을 引受할 때 心臟財團 등에 50億원을 寄附한 이유와 그 特惠를 搜查하였는지의 與否를 물으셨습니다.

東部「그룹」은 그들이 84年7月31日 東進製鋼을 引受한 것은 競争入札을 거쳐 正當하게 落札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달리 그 주장을 반복할 만한 資料가 없으며 84年10月31日 30億원을 心臟財團에 20億을 새마을에 내었으나 기타 경위나 入札過程 등을 檢討하고 關係資料 등을 調査한 結果 心臟財團이나 새마을基金을 낸 데에는 現職 大統領이나 그 一家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던 점은 否認할 수 없지만 基金 出捐者들이 어떤 惠澤을 받으려고 의도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法廷問題가 될 特惠를 받은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市中에서 新世代育英會에 補助金 9億餘원을 支給하였으나 法에 違反되지 않는 것이라고 搜查結果를 발표했는데 서울市中에서 新世代育英會에 補助金を 支給할 수 있는 法的인 根據는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서울市中에서 新世代育英會에 交付한 補助金支給에 관한 法的 根據는 社會福祉事業法 第13條 및 兒童福祉法 第27條에 의하여 支給된 것입니다.

그 다음 現代「그룹」 鄭周永會長은 新世代育英會에 25億원을 寄附하였다고 하는데 新世代

育英會의 帳簿上으로는 鄭周永會長이 20億원 5億원은 鄭仁永이 寄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眞相은 어떤 것인가고 물으셨습니다.

現代「그룹」에서 新世代育英會에 낸 總額은 25億원인데 그중 鄭仁永 名義로 5億원을 낸 것으로 記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한 結果 鄭仁永 名義로 記帳된 5億원은 83年6月17日 鄭世永이 現代「그룹」 名義로 기부한 10億원중 5億원인데 鄭仁永 名義로 기재된 경위는 鄭仁永이 위 金額을 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育英會의 名譽會員 명부에 鄭仁永의 姓名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장부 정리 과정에서 鄭周永 또는 鄭世永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판단될 뿐 사실과 다르게 사실 조작하였을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贊助金의 入金을 보조한 金東妍이나 장부 기장을 담당한 강정문의 陳述도 모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세대육영회와 관련하여 82年3月31日 서울信託銀行에 無記名으로 預託된 2,470萬원과 85年5月 애경유지 장영신이 李順子에게 전달한 5,000萬원의 使用處에 대한 搜查 與否 및 그 結果를 물으셨습니다.

檢察은 새세대육영회의 贊助金 부분에 관하여는 企業體의 장부와 傳票 領收證 및 稅務申告書 등의 자료와 李順子 會長이 직접 관리하던 장부 및 육영회 事務處에서 관리하던 장부 등을 대조하였고 收入利子 부분에 관하여는 金融機關의 元帳과 육영회에서 보관 중인 장부와 利子計算書 預金通帳 등을 대조하여 記帳漏落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結果 82年3月31日 서울信託銀行으로부터 받은 無記名 開發信託 利子 2,474萬1,760원과 장영신 애경유지 代表가 기부한 82年12月27日字 1,000萬원과 85年5月31日字 5,000萬원이 기장에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장에서 누락된 金額 중에서 84年12月27日字 寄附金 1,000萬원은 장영신이 직접 生活館備置 彫刻代金으로 彫刻家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85年5月31日字 寄附金 5,000萬원은 李順子 會長에게 전달되었으나 육영회 장부상 入金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利子 2,474萬1,860원은 육영회의 서울信託銀行 記帳에서引出되었으나 역시 入金 처리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었음

니다. 이 돈의 使用處를 밝히기 위하여 姜正勳 育英會帳簿作成者 金東妍 前大統領夫人秘書官 전석영 前靑瓦臺 總務首席秘書官 등 당시 資金管理를 補佐하던 關係職員을 조사하였고 육영회 장부를 精密檢討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關係職員중 이 돈의 사용에 關係한 사람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利子는 장부 작성 이후인 82年4月인 점에 비추어 장부 記帳時에 누락되지 아니하였나 보여지고 5,000萬원은 장부 기장 없이 사용되지 않았는가 의심이 들지만 장부상에도 전혀 근거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精確한 使用處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 1아웅산 遺家族 支援金 23億원과 關係하여 日海財團의 설립 經위에 關係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檢察의 搜查 결과 報告書 記載內容이 사실과 부합하므로 檢察의 搜查結果報告書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日海財團의 設立目的이 殉國外交使節遺子女獎學支援事業에서 國家安保 및 平和統一을 연구하는 研究所의 設置 運營 등으로 변경된 經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財團의 事業目的은 최초에는 殉國外交使節遺子女獎學支援事業으로 했다가 84年12月5日 定款 改正時에 國家安保 및 平和統一을 연구하는 研究所의 設置 運營 社會指導者 育成을 위한 獎學事業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遺家族들에 대한 支援金 지급이 마쳐졌고 殉國外交使節遺子女에 대한 一般獎學事業은 國家勸勵處의 既存 援護制度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기왕에 조성된 基金을 國家安保 및 平和統一研究 社會指導者 育成 등 가치있는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에서 변경된 것으로 報告 받았읍니다.

그 다음 全斗煥 前大統領이 張世東 前警護室長에게 84年1月25日 日海財團에 運營資金으로 빌려 준 10億원과 84年3月頃 새세대育英會로부터 土地를 購入하기 위하여 張世東室長에게 전달한 11億6,000萬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84年1月25日 全斗煥 前大統領이 財團의 運營資金이 없어 張世東 前警護室長에게 10億원 및 84年3月 새세대育英會로부터 土地를 購入하기 위하여 張世東 前警護室長에게 전달한

11億6,000餘萬원은 全斗煥 前大統領의 個人所有 돈으로 특별히 불법하게 취득되었다는 혐의가 없어 그 出處를 調查하지 않았읍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議事進行發言하세요.

○崔洛道委員 平和民主黨의 崔洛道委員입니다.

長官께 忠言을 드리자고 하면 고생을 참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本委員이 듣기에는 꼭 애정 없는 연애를 다룬 지루한 小說을 읽는 것같은 기분이올시다.

長官께서는 中立的 立場에 서서 不偏不黨 搜查를 했다고 공언했지만 11月26日 盧泰愚 大統領의 特別談話精神을 존중해서 政治資金에 대해서는 搜查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공공연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大統領의 特別談話를 존중해서 政治資金部分에 대해서는 搜查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바로 檢察이 中立的 立場에 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大統領의 特別談話를 존중해 가지고 박종철大檢 搜查本部長이 1月31日 회견한 것을 보면 이번 檢察搜查에서 政治資金에 관한 部分이 드러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檢察은 이번 搜查에서 盧泰愚 大統領의 12·26 特別談話精神을 존중해서 政治資金에 대해서는 搜查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長官이 우리 委員會에 제시한 圖書類를 보면 檢察은 中立的 立場에서 서서 不偏不黨한 자세로 일을 해가지고 公權力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基本方針아래 일을 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執權與黨의 總裁이며 이 나라의 모든 檢察搜查를 最終的으로 책임지고 지휘해야 되는 法務部長官을 임명하고 지휘하고 있는 大統領의 特別談話를 존중해가지고 政治資金에 관한 部分은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中立的 檢察의 태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 “特定個人을 미리 搜查對象으로 지정하거나 제외하는 등 搜查의 限界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前職大統領에 대해서만은 搜查를 하지 않았다고 長官께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特定人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前職大統領에 대해서는 搜查를 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시인하고 있어요.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日本의 檢察과 우리 韓國의 檢察制度가 같다고 그랬는데 더 훌륭한지도 모릅니다. 日本의 檢察보다 우리 韓國의 檢察에 더 우수한 「엘리트」들이 많이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을 한 그 장소는 日本만큼 우리는 되어 있지 못합니다. 日本은 「다나카」首相을 拘束할 수도 있고 立件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 나라 最高政治責任者의 特別聲明을 존중해서 하는 檢察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制度가 아무리 같고 더 훌륭한 檢察이 있더라도 日本은 「다나카」首相을 拘束 立件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大統領의 特別談話를 존중하는 한계 내에서 搜查를 하면서 中立的 입장에 섰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同僚委員들이 質問해서 答辯 도중에도 불충분한 答辯 명료하지 않은 答辯 때문에 書面으로 答辯을 요구했고 또 長官께서도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여러번 答辯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덟시간동안 會議를 해가지고 네 사람이 質問하고 答辯하는데 제대로 補充質問도 못하고 중요한 答辯은 뒤로 書面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앞으로 20명이 質問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特委의 운영을 제대로 해서 檢察 搜查가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를 밝히기는 이미 어려운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搜查를 최종 책임지고 있는 法務長官의 그러한 견해가 이 眞實을 파헤치려고 하는 5共特委의 입장은 아주 판이하게 다르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會議를 이렇게 더 진행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會議를 더 진행해서 실지로 檢察이 공정하게 搜查해서 公權力을 回復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짐작하기에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委員長께서도 잠시 停會를 해 各 黨間의 意見을 모아가지고 法務長官을 상대로 質疑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檢察 搜查에 대해서 제대로 搜查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밝히고 나서 會議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8시간을 해서 네 사람이 質問했는데 答辯을 못 들었습니다.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搜查에 임했다는 것을 충분히 다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委員長에게 잠시 停會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한번 이 會議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協議한 연후에 續開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 崔洛道委員이 이것은 正式 動議가 아니고 우리 委員長에게 意見開陳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停會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번 많은 會議經驗이 있지만 또 停會를 해놓으면 5分 10分 20분에 끝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그러한 崔洛道委員의 의견을 살려서 4黨幹事가 좀 나가서 가지고 장소를 좀 따로 해서 앞으로 會議進行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그것을 의논을 좀 해주시고 그동안에 시간이 아까우니까 會議는 進行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좀 양해를 崔洛道委員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4黨幹事들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答辯이 다 끝났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平民黨의 林春元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春元委員 平和民主黨의 林春元委員입니다.

밤도 늦고 해서 간단 간단하게 要點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5共非理의 범위는 國會에서 선정한 44件이 모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의 초점을 그 범위로 한정된 것은 결국 權力型 不正과 非理에 대하여 檢察權의 척결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長官의 견해는 어떤지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犯罪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搜查에 착수하여야 할 實務를 가진 檢察이 大統領의 特別談話를 기다려 수사에 착수한 것은 職務遺棄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答辯해야 합니다.

셋째 第6共和國 출범직후부터 5共非理를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팽배하



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搜查着手를 계속 자연하여 結果적으로 關係人들로 하여금 중요한 증거를 인멸시키도록 방치하였던 것은 檢察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도보다는 政治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점에 대하여도 확실한 答辯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國民輿論은 檢察의 이번 수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檢察이 더욱 철저히 5共非理를 파헤쳐 주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國民의 여망을 외면한 채 檢察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特別搜查部를 해체한 것은 檢察權의 포기가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도 答辯해 주시고 長官은 일반서민생활사범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아까 答辯했는데 그것을 믿을 國民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長官은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 진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5共非理의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는 特別檢事制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野團의 요구는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보는데 長官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答辯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國民들은 이 制度를 활용해서 5共非理의 척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長官은 알아야 합니다.

長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에 우리 國會에서는 特別檢事制를 채택할 것인바 長官은 우리 國會가 결정한 特別檢事制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인지...

여섯째 檢察이 三淸教育隊人權非理 등 9個 事案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全斗煥 前大統領과 그 친·인척의 財産海外逃避 의혹에 대하여도 搜查하였는지 搜查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도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全斗煥 前大統領의 良才洞 제2사저 신축 토지구입자금 9億7,660萬원 및 延禧洞 私邸 新改築資金 16億원의 출처에 대해 檢察이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현 서울市長은 5共시절 延禧洞 私邸와 관련 당시의 區廳長 등을 오히려 昇進시켜서 중용하고 있는 것은 6共和國이 5共비리

척결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野黨總裁들이 司法的 處理를 요구한 6명에 대하여 끝내 司法處理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張世東을 구속한 범죄사실은 國會特委가 문제제기한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日本으로 출국했던 許文道씨가 귀국하였는데 앞으로 同人을 출국금지하고 5共非理搜查次元에서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인 答辯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政治資金調達過程에서 實定法에 저촉되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檢察이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政治資金 문제를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政治資金과 관련된 비리에 現執權層이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을 수가 없음에 이점에 대해서도 長官이 眞實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澤委員長, 金令培委員과 司會交代)

열세번째 檢察은 日海財團은 물론 새세대育英會 및 새세대심장재단의 基金造成 過程에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基金流用事實도 없다고 밝혔으나 日海財團 基金造成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現代「그룹」 명예회장 鄭周永씨 등이 기금조성과정에서 일부 강제성이 있었다고 國會聽聞會등에서 시인한 점에 비추어 이 같은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씻어주는 커녕 공권력에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長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全斗煥 前大統領이 재임기간동안 企業人들이 새마을 성금으로 1,495億원 日海財團에 598億5,000萬원 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에 458億원 합계 자그마치 2,552億원을 기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전액 損費處理하여 免稅惠澤을 준 사실등에 대해서도 財閥總帥라도 理事會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이 될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財閥總帥는 자기 會社의 돈을 任意로

그렇게 갖다 써도 法에 저촉받지 않는 무슨 특별한 法이라도 있는지 長官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새세대육영회에 대해서 現代「그룹」 鄭周永씨가 25億원을 기부하였는데 靑瓦臺에서 보관하던 육영회 장부상은 20億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부한 사실이 없는 정인영씨가 5億원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장부조작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것은 왜 조사하지 않았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長官은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84年12月 國稅廳 調査局에서 國內航空貨物運送業體에 대한 稅務調査를 중단한 것은 당시 韓國貨物協會會長 홍순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데 그 진상 및 稅務公務員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長官은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韓進「그룹」이 大韓船洲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假支給金 40億원이 조중훈 會長 등 2名の 株式納入代金으로 사용된 사실이 발견돼 이들의 增資總額 402億원에 대한 資金出處를 확인했으나 149億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도 長官은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여덟번째 不實企業 整理 關聯特惠與 否를 확인하지 않는 등 政經癒着부분에 대해서 왜 搜查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長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搜查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不實企業整理 疑惑과 관련해서 李源祚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鄭寅用 前 財務長官을 소환조차 않은 것은 搜查意志가 박약한 것으로 보는데 아까 答辯에서 ADB의 副總裁이기 때문에 소환을 할 수 없었다고 長官이 答辯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입니다. ADB의 總裁는 日本 財務省의 일개 局長이 總裁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副總理까지 역임한 者가 그밑에 가서 副總裁를 하는데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못볼러 온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ADB總裁 副總理하면 엄청난 職位에 있는 것처럼 우리 國民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는 ADB가 무얼 하는 곳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長官의 答辯은 참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鄭寅用씨한테 모든 것을 미루고 그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음으로써 모든 不實企業과 관련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이 政府의 속셈으로 本委員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 사람을 불러다 확실히 밝힐 것인지 안 밝힐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지금 鄭寅用씨가 書面陳述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무번째 1980年11月6日 서울地方檢察廳에서는 被告人 승항배에 대한 이 사람의 사건번호는 78고단 5371號인데 업무상횡령등 被告事件과 또 사건번호 79고단 8597號 有價證券偽造등 被告事件의 公訴를 취소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長官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89年1月31日 기소된 被告人 승항배에 대한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法律違反 즉 業務上橫領등 被告事件은 그 橫領金額이 459億원에 달하고 있는 등 죄질이 중한데도 불구하고 不拘束 起訴한 이유가 무엇인지 長官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의 마지막 質問을 하겠습니다.

前 民青聯議長 金權泰씨를 고문한 李根安 警監을 상당한 시간이 넘도록 검거하지 못하는지 檢舉하지 않는지 長官은 그 眞實을 이 國會에서 밝혀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眞實들이 長官이 이 國會에서까지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그저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나라의 公權力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의 檢察의 장래를 위해서 長官은 소신있는 眞實을 이 國會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同僚委員들의 다음 質疑時間을 위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代理 金令培 다음은 金東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統一民主黨 金東周委員입니다.

먼저 質疑를 하기 전에 法務部長官이 언제 檢察總長에서 그만 두었습니까?

몇 年度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1981年12月입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니까 約 8年만에 돌아오셨지요? 그 당시에 辭表를 냈지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에.

○金東周委員 제가 듣기로는 그 때 低質炭 搜查를 너무 잘 지휘했기 때문에 그 당시 搜查한 檢事들이나 幹部들이 전부다 그 職에서 左遷 당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는데 사실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런 것으로 압니다. 제가 辭退한 후에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소문이 많았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리고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 同僚委員들의 質問이나 또 約 8年間 野人生活를 그것도 公職에서 충분히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軍事獨裁政權의 하나의 피해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本委員이 質問을 하고 長官이 答辯을 하는 이 현상 자체도 웃지 못할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尙斗煥政權에서 부당한 처벌을 받아서 그 당시에 한 30年동안 하던 公職을 떠난 檢察總長이 또 우리 全國民이 어느날 하루 최루탄「가스」 안 먹은 날이 없고 또 많은 民主人士 學生 勤勞者가 심지어 죽기도 하고 焚身自殺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작은 소위 6共和國이라고 하는 民主化가 되어 나간다는 이 政權下에서 法務部長官을 맡았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許長官 같은 분이 그동안 8年동안 野人生活를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과연 法務部長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同僚委員들의 質問이나 長官의 答辯을 들어보니까 사실 長官이 그 동안에 쓴 시간도 길고 또 檢察搜查에 직접 관여를 하고 감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檢察局長이 答辯해도 좋습니다. 이 第5共和國非理調查結果라는 책을 대관절 몇 권을 만들었습니까?

○法務部檢察局長 金有厚 제가 그것은 정확히 報告받지는 못했지만 100餘卷정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金東周委員 이것은 틀림없이 行政府에서는

國民들에게 弘報資料로 쓸 것이고 또 먼 훗날 우리 後孫들은 全國民이 第5共和國의 非理가 많았다고 하지만 이 책에 의하면 罪가 하나도 없다고 할 거예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 책에 記載된 내용은 檢察總長이나 法務部長官이 歷史앞에 證人이 되어야 하는 것이예요. 여러분들 聽聞會에서 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國會議員들이 밤잠 안자면서 與野를 막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가 搜查經驗도 없고 高等考試를 합격하거나 搜查에 대한 專門知識도 없지만 어떻게든지 이 5共非理를 하루속히 명확하게 國民에게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再發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새벽 다섯시 여섯시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조사한 사실을 또 그 근거로 해서 5共非理聽聞會를 열어가시고 심지어는 그 證人들에게 答辯을 받아 낸 사실까지도 은폐하고 조작을 한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12代때에도 民主化鬭爭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檢察을 정말 이 地球上에 이런 檢察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심지어 學生들간에는 檢察이 족제비나 뭐니 하는 별명이 붙어야 되고 學生들의 民主化자는 鬭爭에 대해서는 전부가 求刑이 같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檢察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第6共和國에 모처럼 與野와 全國民이 合意해서 작은 이 民主化된 檢察像 더구나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許長官께서 이 檢察을 책임을 지면 틀림없이 이제 잘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 너무나 실망이 큼니다. 全面再搜查해야 됩니다. 長官은 어대로 이것을 가지고 國民을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거나 第5共和國의 非理가 清算되었다고 이렇게 만일 주장을 한다면 솔직하게 長官하고 저하고는 家門이 같은데 이 家門의 웃음거리요 먼훗날 歷史의인 罪人이 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檢察은 職位高下를 막론하고 전부 책임을 물으세요. 만일 盧泰愚大統領이나 다른 外部機關에서 檢察에 壓力을 가했다면 그 사람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고 27名の 檢事와 108名の

搜查官이 이렇게밖에 搜查를 못했다 하면 전 부다 문제가 있는 사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支廳에서 고생하는 檢事들로 바꾸어서 다시한번 搜查해 볼 용의는 없는지를 長官에게 묻습니다.

우리 國會議員들이 搜查專門家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제가 몇가지만 예를 들어 이야기 할테니 長官이 일괄해서 答辯해 주세요.

제가 물을 것은 檢察搜查중에서 日海財團 새세대육영회 「골프」장 內認可 서울시 不正替費地 賣却 을지로 再開發 다섯가지만 묻겠습니다.

새세대육영회 心臟財團은 엄연히 公益福祉法人團體임에도 불구하고 450億이 넘는 엄청난 資金을 財界로 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면서 基金 자체를 法人體에 넘기지 않고 大統領 부인인 이순자씨 개인이 假名 또는 무기명 등으로 사사로이 변칙 운영 管理하는 과정에서 일부 基金이 流用된 事例가 발생하였을 뿐만아니라 國家團體인 安企部와 서울特別市로부터 헐값으로 받은 敷地를 不法 轉賣하는 등 파행적 운영을 저질렀음은 우리가 證人들의 訊問過程에서 밝혀졌습니다.

國家의 건전한 法秩序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一國의 大統領 부인이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직접 資金管理와 利權에 개입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5共特委 調查過程에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大檢中央搜查部는 이순자씨에 대한 搜查는 커녕 아예 關聯調查 記錄조차 의도적으로 묵살시키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現 檢察과 法務部는 아직도 大統領이 全斗煥씨라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本委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檢察의 庇護 隱蔽事實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國會 5共特委에 提出한 새세대육영회와 心臟財團寄附金管理臺帳 및 經理臺帳은 허위 조작이었음이 1月30日 5共特委 第1小委員會 證人訊問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檢察은 이를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現代「그룹」 정세영會長이 提出한 새세대육영회와 心臟財團寄附金의 영수증과 이미 特委에 提出되어 있는 寄附金 管理臺帳과 정밀 대조한 결과 영수증은 있으나 臺帳

에 누락된 金額은 두件에 12億이 있음이 밝혀져 育英會와 心臟財團 장부는 전혀 신뢰성이 없음이 드러났으나 檢察搜查 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現代「그룹」속에도 大檢中央搜查部에 同 金額의 차이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檢察은 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는 5共非理를 搜查하여 서둘러 終結 지은 檢察搜查가 진상 규명은 커녕 國民을 기만하고 얼마나 한계적인 搜查였던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本 特委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現代「그룹」은 영수증은 있으나 육영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7億은 81年9月16日字로 再發行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83年6月18日字 正人명義의 5億은 現代重工業 정몽준名義의 3億원이 장부에 기재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月17日字 現代重工業 정주영會長 名義의 10億 중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12億에 대해서는 檢察은 전혀 搜查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全額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日海財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日海財團은 長官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聽聞會에서 全國民에게 사실대로 밝혔습니다. 日海財團寄附金의 強制性이라 하는 것은 아마 全國民이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檢察이 強制性이 없었다는 發表를 한 것은 이것은 정말 國會에 대한 도전이요 國民을 기만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예를 들면 鄭周永證人의 聽聞會證言에서 梁正模씨의 國際「그룹」해체는 經濟原則上 잘못 된 것이라 하면서 募金의 強制性에 대해서는 안 내서 경을 쳐 破産하느니 내는 것이 낫다고 證言했습니다. 速記錄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처음의 15億은 100億을 募金하는데 동조했지만 나머지 金額에 대해서는 자기도 편히 살기 위해서 냈다 이것입니다.

또 조성희保安隊 陸軍大領도 83年4月 프라자호텔과 롯데호텔에서 財界代表 10餘名을 모아서 基金割當을 할때 그 당시에 일부 企業人들은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하는 證言을 했습니다. 또 梁正模씨도 자꾸 나쁜 인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梁正模씨가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國際그룹이

강제로 부당하게 어떤 法의 절차를 밟지 않고 倒産 당했다는데 대해서는 동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梁正模證人도 崔順達 初大理事長의 방문을 받고 지금 이렇게 수백억의 寄金을 모은다면 먼 훗날 말썽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진실한 충언의 한 마디에 金斗煥 政權으로부터 國際「그룹」이 倒産되는데 絶對的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陳述되었습니다. 또 靑瓦臺에서 張世東 警護室長 밑에 있는 會議室 또 安家 또는 金斗煥씨가 企業家들을 불러서 만찬 등을 통해서 直接間接的으로 압력을 가 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百潭寺에 가 있는 金斗煥大統領이 延禧宮을 떠나면서 「國民여러분 죄송합니다」하고 27分間 눈물을 글썽 거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本人이 그런 죄를 지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檢察에서는 強制性이 없고 이렇게 아무 혐의가 없는 것 같이 수사를 해서 이런 國家돈을 들여서 책을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金令培委員, 李基澤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리고 日海財團 관계로 해서 두사람을 구속시켜 놓은 모양인데 제가 聽聞會때 그걸 이야기했는데 警護室法 위반이지? 하니가 장세동씨가 是認했습니다.

그다음에 職權濫用입니다. 日海財團의 장부를 보면 10億의 횡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순달씨 조성희와 김인배事務處長間의 引繼引受 書類에 보면 신한銀行이 낸 10億과 警護室長이 보관한 5億해서 15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또 日海財團의 犯罪者가 어떻게 張世東 金麟培 두 사람 뿐입니까? 前法務部長官 李鍾元은 私文書 偽證 아닙니까? 혹은 나는 法專門家가 아니지만 뭐 안 걸립니까?

그 사람은 소위 公益法人의 監事로서 虛偽文書에 捺印해서 監査를 받은 양으로 官廳에 報告하고 또 國會에서 偽證하고 帳簿를 83年 7月에서 88年3月까지 3年度 것을 한 차례 만드는 거기에 監事가 도장을 찍고 虛偽經理를 인정한 이런 사람도 刑事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公益法人인데...

또 理事會 會議錄을 虛偽造作하여 記名捺印한 現世宗研究所所長 金基桓은 罪가 안 됩니

까?

또 거기에 보면 전부가 지금 현재 犯罪소굴인데도 나는 이 金麟培에 대해서 지금도 業務上: 橫領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 우리 金炫委員이 五大洋事件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執着力이 있어요.

金麟培 다시 불러서 調査해 보세요! 罪가 없을 것입니다. 金斗煥 大統領이 냈다는 匿名의 20億과 15億에 대해서 처음에는 國際그룹의 梁正模 것이다 하다가 이 사람 것 저 사람 것 하다가 돈 받은 날짜가 맞지 않으니가 나는 조작한 하나의 張世東 또는 그 주위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서 金麟培란 사람이 억지 懲役을 살고 있는지 싶어요. 이것 한번 내가 私的으로 부탁하니가 良心宣言을 한번 받아보세요.

또 日海財團의 지금 寄附金이라 하는 것은 새세대心臟財團과 育英會의 寄附金이라 하는 것도 그 金額은 金斗煥씨와 李順子 밖에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거기에 있는 經理帳簿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전부가 조작된 것입니다. 公益法人의 公金을 假名 또는 無記名으로 또 다른 사람 名義로 120億씩 이렇게 시켜도 됩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렇게 政權이 바뀌니까 얼마가 있다 그래서 내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새세대育英會에 235億 心臟財團 223億 日海財團 598億 새마을誠金 1,491億 합치 2,552億입니다.

아까 答辯할 때 長官께서는 法에 따라서 損費處理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틀렸습니다. 그것 長官 다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答辯 안해도 좋습니다. 100% 損費處理 받는 것은 國家機關입니다. 地方自治團體에도 됩니다. 이것은 公益法人 金斗煥씨가 總裁로 있고 李順子씨가 會長 또는 理事長이라 해서 100%... 이것은 違法입니다.

어느 사람의 指示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指示가 없으면 이 大韓民國에 있는 全國稅廳 또는 稅務署 全公務員들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約公式의인 2,500億을 損費處理 하면서 내가 새세대育英會와 心臟財團을 調査하면

서 혹시 稅務署에서 이것 領收證 確認調查가 어디에라도 한번 왔더냐 하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靑瓦臺에서 보내주는 感謝狀같은 名譽會員證도 100% 靑瓦臺에서 보내주는 人事狀도 100% 損費處理 이것이 아마 계산하면 約 1,000億이 된답니다. 전문적인 계산은 안했습니다. 이 1,000億원의 稅金을 결과적으로 國民이 더 부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이 金斗煥 李順子씨를 第6共和國의 檢察이 召喚은 못할지라도 出席要求書를 한번 발부해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檢察은 경우에 따라서 직접 가서라도 한 번 調查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大韓民國法에 大統領은 赦免權은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現職 盧大統領이 搜查를 하지 말아라 안해라 어떤 聖域을 만드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大統領이... 또 아까 法務部長官께서 말씀하시기로 前職 大統領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뭐 예외나 이런 것을 보아서 사실 어디 指示는 받지 않고 했다 이러는데 金斗煥 李順子씨에 대한 搜查를 계속하지 않으면 法務部長官이 解任당해야지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特別委員들이 與野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의 政局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이 政局을 풀어 나가겠습니까? 調查는 하셔 가지고 犯罪事實이 되면 아까도 末尾에 國會報告書에 보니까 職位高下를 막론하고 철저히 搜查를 앞으로라도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調查하셔야 됩니다. 金斗煥씨 李順子 調查없이 내가 檢察들도 보면 딱해요. 저도 친한 檢事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犯人은 감추어 두고 가지만 치니까 이 搜查가 되는 것입니까? 이 國會議員 報告받는 내 자신도 부끄럽고 報告하는 長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잘된 調查다 하고 이 이상 더 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國民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法務部長官에게 警告합니다. 만일에 이 本委員이 진심으로 忠言을 올리는데 다시 所信을 가지고 아까 法務部長官 앞으로 하면 몇 十年 하겠어요? 所信있게 다시 特別搜查部를 구성을 하든지 다른 진짜

용기있는 檢事들을 구성을 해서 再搜查를 함으로써 모든 疑感이 풀리게 되고 아까 長官께서도 걱정했지만 時局도 조용해지고 또 時局이 조용해지면 檢察이나 警察이 一般治安에 신경을 쓰게 되고 民主主義는 뿌리가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長官도 國民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과연 長官을 누가 이렇게 지금 현재 훌륭한 長官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 말이에요. 長官이 진심으로 그렇다면 長官이 정신차리시오!

또 「골프」場 內認可部分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場을 29個중에서 그 당시에 明星 한 個만 合法的으로 그 당시에 許可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場을 하려면 원래 많은 敷地가 필요합니다. 최소 30萬坪 이상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軍事保護地域이 있고 山林保全地域이 있고 絶對農地가 있고 정상적으로 各 部處마다 혐의를 받으려면 2年 3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렇게 29個나 이렇게 꿀떡해 자시고 아무 不正事實이 없었다 발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檢察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또 아까 그 중에서 法務部長官 아마 部下들이 허위로 지금... 國政監査 大邱에 가서 직접 내가 밝혀낸 것이 있는데 大邱의 팔공「골프」場의 경우 慶北道에 10億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50億입니다. 50億을 내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골프」會員權이 안팔린다고 해가지고... 이 「골프」場을 내줄 때 보면 非公式的으로는 돈을 받고 公式的으로는 조금씩 어디에 걸쳐 왔어요 기부하겠끔...

그것이 第5共和國에서 해먹은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것을 순진한 檢事들이 이것해 주어서 내주었는지 이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심지어 在日僑胞 허필선씨가 內認可받은 第一「골프」場 이런 경우도 지금 80%이상의 會員權은 國內사람에게 讓渡 못한다는 但書條項을 달고 許可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愛敬油脂같은 데 스물다섯살 먹은 사람에게 「골프」場 許可내주고 大統領아들 친구라고...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長官께서는 이 日海財團 새세대 育英會 心臟財團에 기부한 소위 高額寄附者들이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는 조로 말씀하시는데 많습시다.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51億인가 없다는 全經聯會長 鄭周永씨같은 분은 지금 忠南 瑞山앞바다에 4,600萬坪 埋立許可免許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聯合鐵鋼問題 또 동진제강문제 이것 전부 몇 10億씩 기부를 하고 또 사실 秘資金은 따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문에 잠깐 비친 聯合鐵鋼에서 50億 政治資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저것을 다 따지려면 밤새도록 3일을 해도 長官하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괜히 答辯 못하는 質問은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市 替費地問題에 대해서 同僚委員들의 質問에 적어주는 대로 앞으로 그런 答辯하지 마세요. 아예 答辯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조사해 보고 하겠다 해야 됩니다.

한 「그룹」에서 3個會社가 참가해가지고 살짝 개시판에 公開해가지고 入札하는 것이 公開入札입니까?

또 79年度에 既爲 롯데駐車場敷地로 쓰기로 누가 승인하기로 했다는데 누가 승인한 것입니까? 國家땅을 大統領이라도 마음대로 누가 줄 수 있습니까? 國家機關 땅을 마음대로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違法입니다. 特惠입니다.

廉普鉉市長이 내가 內務委員會에 있을 때 지금 현재 롯데월드지었지요? 저쪽에 있는 저 땅은 松坡區新川洞땅 2萬6,671坪은 그 당시 롯데가 隨意契約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內務委員會에서 質疑를 했습니다. 答辯이 어땠느냐 하면 그 땅은 서울시가 처분계획이 전혀없고 또 隨意契約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國會速記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시는 地方自治團體에 議會構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國務總理室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財産의 처분과

취득은...

一般 市道는 內務部에 받고 이런데 이 4/4分期에 갑작스럽게 選舉時期에 選舉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처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政治的인 흑막이 있고 바로 이것이 특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까 공고를 했는데 살사람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렇게 하고 말아야 할 그룹이라도 새 사람이 들어오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또 하나 저쪽에 金宗鎬長官이 구속이 되어 있지요? 乙支路再開發事業 이것도 제가 建設委員이기 때문에 이번에 建設部 國政監査時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또 證人訊問도 했습니다. 그때 證人出席시켜가지고... 이것 金宗鎬 씨 없습니다. 金宗鎬長官 拘束事由에 보니까 外國갈 때 돈 한 3,000弗 받고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헬스」회원권 얼마 치고 저쪽에 롯데월드인가 저기에 「콜라」나오는 기계 한 대를 특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億원 된다면요. 이런 檢察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추궁을 하고 싶지만 내 자신을 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 現職長官이 外國나가면 친한 사람들이 「달려」 줘 주지 안주는 사람 보았습니까? 良心的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수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엄연히 여기에 내가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傘斗煥씨가 이렇게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래 檢察은 이런 문서도 안보고 수사를 합니까? 金宗鎬가 구속되어가지고 들어가갈 때 TV로 보니까 생강이 웃고 들어가더라고요. 같잖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울市長 한 1億 먹었다고 해서 구속되었습니다. 教育監 구속되었습니다. 地下鐵公社 社長 구속되었습니다. 이것 전부 다 보면 金額이 한 1億 2億입니다. 왜 이 數千億을 해먹은 傘斗煥 李順子는 출석요구서 한번 못 내보내는 이 檢察이 檢察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公權力을 믿고 또 國民이 화합될 수 있겠습니까? 안됩니다. 제가 다시한번 法務部長官에게 촉구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檢察이 조사한 이 5共非理 搜查結果는 전면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長官은 어떠

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아까 우리 同僚委員들이 얘기한 特檢制 받는 문제 이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統治權者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아야 하고 안되면 우리가 조사할테니까 그러나 法務部長官은 이 檢察이 다시 搜查本部를 설치해서 再搜查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全斗煥씨 李順子씨에 대해서 一般人과 똑같은 수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朴進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進球委員 民主正義黨所屬 朴進球委員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檢察은 法治國家에 있어서 최후의 질서를 준수하는 기관이고 참 선도자이기 때문에 그 搜查結果에 따라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國民이 납득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해석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法務部長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共問題에 있어서 全 前大統領夫婦問題는 日海財團과 새세대育英會 心臟財團등 誠金에 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誠金の 募金過程이 강제였느냐 또 강압이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檢察에서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昨年 11月9日 5共特委 15次 會議에서 아까 金東周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安秉珪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鄭周永 現代그룹 名譽會長이 答辯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安秉珪委員의 質疑에 募金過程에서 강제성이 있었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鄭周永 名譽會長이 이렇게 答辯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이 얘기해서 1次는 날아갈 듯이 내었고 2次는 理致가 맞으니까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自發的으로 냈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내라고 하니깐 그저 내는 것이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陳述을 했습니다. 이 陳述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는 날아갈듯이 내었으니까 自願이고 두번째는 본인이 陳述한 대로 自發的이고 세번째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냈다 이것은 강제로 보면 되는 것인지 혹은 강제로 보시는지 만약에 위의 세 가지 質問이 아니고 우리가 一般常識으로 자기 돈 내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다는 側面에서 본다면 誠金은 바로 강제라고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만약에 또 그것이 아니라면 誠金を 納付하지 않는 경우에 不利益을 준다는 明示的 事項이 없으므로 전체를 다 非強制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質問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答辯이 안되면 다음 書面으로라도 그 기준에 대해서는 答辯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平民黨의 梁性佑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性佑委員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法務部長官이나 法務部當局者들에게 추궁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委員의 입장에서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檢察의 5共搜查를 앞에서 여러 委員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걸릴기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보아도 眞相을 밝히려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根本을 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名分을 너무 앞세운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지금 檢察 5共非理 事件別 搜查結果 이것을 놓고 따지고 어찌고 할 흥미조차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 나왔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政治資金입니다. 5共 때의 政治資金문제 이것은 檢察에서 搜查를 정말 獨立的으로 철저히 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철저한 搜查에 따라서 國民의 의혹이 풀어져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거의 손도 안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政治資金問題에 있어서는 혹시 당시의 政治權力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또 이 규명에 있어서 혹시 현재의 政治權力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의 興否도 알고 싶은 事項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하여튼 5共非理 중에서 이 政治資金問題가 全 國民的인 관심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특히 政治資金 募金過程에 있어서의 不法性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政治資金을 걷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쓰는 과정 이것을 다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共非理 중에서 核心事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檢察에서 거의 접근을 못했다. 이 못하게 한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檢察搜查가 현재의 政治權力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時代를 맞이 해서 國民의 의혹을 모조리 풀어주는 그런 搜查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政治資金 부분에 대해서 根本的으로 손을 안댄 것은 5共非理 檢察搜查의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의 입장에서 약간 듣기에 비위가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政治資金部分에 있어서 根本的인 접근을 못하게 된 것이 현재의 政治權力이 시킨 일이나 또 이렇게 현재의 政治權力이 시켰다면 이것은 檢察의 獨立搜查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두번째로 만일 이러한 根本的인 접근을 못한 것이 檢察 스스로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였다면 이것은 일종의 檢察쪽으로 본다면 職務遺棄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序論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日海問題와 國際問題 두 가지만을 例로 들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日海寄附金問題입니다.

日海財團의 設立目的에 동의한 企業이 寄附

金을 내고 財團의 理事가 되어서 公益法人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法律에 따라서 財團의 業務를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企業이 낸 寄附金은 財團의 基本財産으로 定款에 기재하고 主務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法에 規定되어 있는데 日海와 그 關係者들이 이 法을 철저히 위반한 部分에 대해서는 搜查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두번째로는 財團의 設立許可 定款의 內容 定款變動許可 등의 과정에 職權濫用 違法事項 등이 있는 데 이에 대한 搜查가 또 根本的으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企業이 제공한 寄附金이 寄附目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寄附하고 損費處理한 것은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면 指定寄附金이라고 할 수 없고 脫稅 등 違法事項인데 이에 대한 搜查가 根本的으로 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寄附目的 외에 使用 寄附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寄附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法人의 基本財産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法律 施行令 第16條1項2號에 보면 寄附에 의하거나 기타 無償으로 취득한 財産은 公益法人의 基本財産으로 한다. 다만 寄附目的에 비추어서 基本財産으로 하기 곤란해서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은 것은 例外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日海財團의 主務官廳인 外務部當局者는 日海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承認申請조차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法대로 말한다면은 당연히 日海財團 1次 定款改正日 즉 84年10月17日 基本財産은 19億2,000萬원이 아닌 153億5,000萬원이 되어서 外務部に 등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差額 다시 말하면 募金額 153億5,000萬원에 등록된 19億2,000萬원을 뺀 134億3,000萬원을 基本財産으로 등록하지 않고 유용한 것은 法律違反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이 募金에 관계한 張世東씨의 경우 특히 이 돈을 張世東 個人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聽聞會에서 證言했습니다. 그

런데 個人이 134億3,000萬원을 등록하지 않고 個人的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法律上 위반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常識의으로도 본다면 刑事上 횡령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그러니까 日海財團과 관계되는 行政官廳인 外務部는 또 監督 소홀부분이 지적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指定寄附金 이외의 寄附金이 이렇게 많이 있는 데 134億3,000萬원 이것이 根本的으로 財閥에게는 損費處理가 不可한 것입니다.

따라서 財閥에게 굳이 트집을 잡는다면 所得稅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所得稅를 포탈함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鄭周永씨를 비롯한 寄附者들 또 日海의 理事會 「멤버」들 이들이 이 134億3,000萬원이 이들이 낸 돈인데 134億3,000萬원이 財團의 基本指定寄附金이 아닌 違法임을 알면서 다시 말하면 指定寄附金으로 등록되지 않음을 이들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기에 전혀 한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장만 꾸꾸 돌려주었고 定款改正 때도 도장만 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들에게 刑事上 횡령의 공범이라든지 事務上 背任 또는 税金遺脫行爲로 지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法人稅法을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法人稅法 施行令 第42條를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指定寄附金 아니면 곧 이런 寄附金 이것이 損費處理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즉 寄附金에 대해서 적정한 사용을 할 줄 알고 있는 이런 財閥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2차 3차 계속 이 寄附金들을 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寄附目的에 제공되지 않는 돈은 1차에 134億3,000萬원을 비롯해서 4차 定款改正 때인 86年3月12일에 230億이나 됩니다. 230億8,000萬원이지요. 또 5次 改正日에는 약 73億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돈들이 寄附目的外로 또 寄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損費處理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檢察은 발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張世東씨와 寄附金을 낸 사람들은 그 해당 處罰法에 따라서 檢察은 搜查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역시 日海의 件입니다. 例를 드는 것입니다. 제가 檢察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日海의 敷地의 件을 例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남단녹지라는 것을 해제해서 日海研究所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城南 남단녹지해제에 있어서 行政處分에 있어서 권력남용부분이 지적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前 安企部長 張世東씨가 84年 鄭周永씨와 城南市 시흥동 소재 現代의 소유 땅 15萬坪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즉시 鄭周永씨는 張世東씨에게 이 땅을 사용할 의향이 있으냐고 물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떤 지역이냐 소위 세간에 알려진 남단녹지라는 데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남단녹지의 성격이라는 것은 都市計劃法上 이 녹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일반녹지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린벨트지요. 그래서 전혀 당시에는 그 그린벨트를 해제할 엄두로 못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그 現代도 이 자리에 연구단지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政府當局에게 수많은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벨트를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張世東씨가 이 日海의 문제를 언급하다가 이 땅 문제가 나와서 張世東씨가 이 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現代 땅 城南의 15萬坪입니다.

그런데 鄭周永씨와 張世東씨가 이 말을 나누자마자 이 땅은 초고속처리가 되어서 그린벨트해제가 된 것입니다. 城南市長이 84年7月5日 갑자기 이 남단녹지내에 엄격한 행위 제한을 완화해서 研究施設에는 풀어주었으니 建設部長官이 許可해 주세요 라는 公文을 京畿道知事를 경유해서 建設部長官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公文을 제가 보았는데 84年7月15日 15時에 城南市長이 이 公文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이것이 京畿道知事를 경유해서 당일 17時에는 建設部長官에게 접수됩니다.

그러니까 城南市長이 발송한지 2時間만에 建設部長官에게 이 公文이 접수됩니다. 접수되는 과정에 京畿道知事를 경유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城南에서 水原市로 水原市에서 서울시로 이렇게 自動車로 달려도 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公文이 바로 두 시간만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초고속처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5共和國의 行政行態上 일개 市長이 住民의 公共福利增進을 위해서 엄격히 規制한 이 남단녹지를 해제하겠다는 자발적인 의견을 政府가 이 짧은 시간내에 접수 서명 처리해 줄 수 있는지 長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公文은 또 사실 종이 한 장입니다. 한장으로 된 간단한 한두 文章입니다. 그린벨트 수준의 녹지를 푸는데 國土利用管理法이나 都市計画法이 녹지를 지정한 이유가 해소되었다는 설명서나 증빙서류 같은 것은 전혀 이 公文에 없습니다. 다만 녹지를 해제해야 된다 하는 公文 한장뿐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비능력이 아주 막강하기로 알려진 財閥會社가 現代입니다. 이 現代조차도 연구 단지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이 지역을 풀지 못하고 있던 이 땅이 城南市長의 公文 한장으로 녹지가 풀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檢察은 搜查를 했는지? 또 合法的이라고 보는지? 例를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또 이런 行政處분이 도대체 당시에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搜查를 했는지를 國民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公文 起案文에 서명한 公務員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對答은 한결같이 같았습니다. 上部的 지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고속처리를 하게 된 이유가 당시 上部的 지시였다 또 農林水産部 關係者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들의 答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農林水産部の 農地局에서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農地轉用審議會를 임시 개최해서 의견을 할 정도였습니다. 일개 市長의 의견이 이 長官이 農地轉用審議會를 개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前 警護室長 張世東씨의 권력남용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建設部長官 農林水産部長官 京畿道知事 城南市長 등 이런 行政

官廳에 張世東씨 또는 張世東씨가 모시고 있던 全斗煥씨가 직접 간접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檢察은 어떻게 搜查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張世東前 警護室長은 자신의 所管事務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警護室法을 위반하고 國家公務員法을 위반하고 하는 등등 권력남용금지에 관한 각종 法律들을 위반 했음이 聽聞會를 통해서 상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한 檢察의 搜查가 있었느냐 그 결과보고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日海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國際에 대해서 간단히 例를 드는 셈치고 묻겠습니다.

私企業體를 해제할 것인가의 이 결정 즉 法律上的 결정이건 아니건간에 이 결정을 法律上的 債權者인 銀行長이 擔保權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財務部長官 大統領 등 行政府가 행사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냐 法律의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盧武鉉委員도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불충분하며 搜查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구체적으로 引受企業을 설정하는 것은 銀行長이 자신의 債權을 확보할 수 있는 者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財務長官이 大統領의 裁可를 받아 결정한 것은 명백한 職權濫用이요 利權介入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業務上 背任教唆가 아니냐 金滿堤 당시 財務部長官에 대한 이 부분의 搜查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또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또 國際解體와 함께 會社를 引受시켰는데 이 引受條件의 결정은 더더욱 銀行長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합니다. 銀行에 數千億원씩의 손실과 특정인에게 엄청난 金融特惠를 준 이 의사결정을 銀行長이 아닌 사람이 한 여러가지 부분을 檢察에서 구체적으로 搜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國際「그룹」解體 특히 이 解體와 함께 이루어진 特惠引受 여기에 前職 大統領인 全斗煥

의 혐의사실이 분명히 없다고 보느냐 또 혐의사실이 있다고 본다면 왜 全斗煥 前職大統領에 대해서 檢察은 搜查를 하지 않느냐 혐의 사실이 있다면 搜查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起訴與否야 또 다르지만 搜查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聖域排除라는 것이 搜查의 原則이 아니냐 그러나 全斗煥씨를 搜查對象에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은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國際「그룹」解體 特惠 또 不法處分實行 여기에 金滿堤 前 財務部長官이 아주 중요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金滿堤 前 財務部長官에 대해서도 法治行政의 紀綱確立의 차원에서 철저히 檢察에서는 搜查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철저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搜查結果 사회통념을 넘은 業務上 背任敎唆 등과 贈受賂 사실이 金滿堤씨에게 있을 경우 분명히 刑事 司法措置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金滿堤씨 등에 대해서 이 搜查를 檢察은 종결시켰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個人的인 贈受賂 사실을 철저히 파헤치지 않고 다만 金滿堤씨로부터 나는 먹은 게 없다라는 이런 말 한마디의 이유 하나만으로 搜查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金滿堤씨의 檢察陳述에 있어서 이것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진술이냐 아니면 진상을 은폐하는 그런 陳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背任性 職務犯罪의 成立與否에 대해서 檢察은 충분히 金滿堤씨에 대해서 검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金滿堤씨에 대해서 搜查를 종결한 것은 졸속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金滿堤 李弼善씨 두 사람을 대질시키지 않고 搜查終結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李弼善에 대해서는 喚問조차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主去來銀行長의 眞意確認을 고의로 기피하려는 의혹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어서 全斗煥씨의 경우 國際「그룹」解體를 즉석결정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金滿堤씨가 이 國際先引受社를 단 3日間 85年2月8日에서 85年2月10日 이 3日間 適格業體與否를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자체를 믿는다면 이것은 「코메디」같은 진술을 믿는 것이 아니냐. 3日동안 어떻게 그 많은 適格業體를 모두다 그 適格業體與否를 판단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코메디」같은 진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金滿堤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곧 國民의 의혹을 사고도 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全斗煥 前大統領의 國際「그룹」解體方針指示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檢察이 國民으로 부터 많은 노력을 고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은폐하고자 한다라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물은 내용속에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財務部長官이라든지 大統領 등이 이 特定 私企業體整理에 개입할 수 있는 權限이라든지 근거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또 金滿堤씨가 작성한 解體發表文 85年2月21日 國際解體發表文이 發表되었는데 이 解體發表文을 財務部名義로 金滿堤씨 자신이 發表하지 않고 主去來 銀行長名義로 主去來銀行長이 대신 발표한 이유에 대한 檢察搜查結果는 무엇인가 이것이 확실히 알려져야 되겠습니다.

또 法的 權限도 없는 金滿堤씨가 國際「그룹」解體를 獨自的으로 수립 추진하였다고 스스로 自認한 이상 이는 명백한 實定法違背이며 主去來銀行의 요청도 없이 越權的으로 개입해서 職權濫用하였으며 主去來銀行長이 解體決定한 것으로 위장함으로써 해당 犯罪事實이 무수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金滿堤씨를 檢察은 拘束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설득력 있는 答辯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金滿堤씨도 모종의 上部로부터의 지시를 받아 단순한 실무집행만을 담당했으므로 聖域排除라는 이번 수사의 전제조건을 파기할 수 없는 檢察搜查의 한계 때문에 金滿堤씨를 免罪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살만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答辯을 해주기 바랍니다.

檢察發表대로 라면 어떻게 金滿堤씨 혼자서 1985年2月8日에서 2月10日사이에 단 3日만에 引受業體 선정기준을 결정해서 수많은 企業들 중에서 適格業體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승락을 받아낼 수 있었고 선정업체들은 규모가 훨씬 더 큰 國際系列社들의 經營實態도 파악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引受提議 받은 즉시 引受承諾했는지 상식적으로 國民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檢察의 수사와 그 확인결과가 분명히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東國製鋼의 聯合鐵鋼引受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極東建設의 東西證券引受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소위 철저한 수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과 함께 이것이 정말 이 引受 過程이 不正特惠라면 그 不正特惠의 利得이 전면 환수되어야 한다는 그런 輿論을 檢察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한 두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5共特委에서 法務部에 全斗煥 前大統領의 出國禁止 要請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前 丁海昌長官께서는 자신이 그 문제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具體的인 사안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長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신호수 등 34名의 疑問死에 대한 수사를 전혀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疑問死에 대해서 國民은 거의 拷問 致死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數個月동안 그 遺族들이 NCC에서 농성하며 계속 사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80年 法難事件 第一教會事件 이것은 전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또 日海財團寄附 企業들이 臨時株主總會 등 株主의 승락없이 任意로 寄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곧 橫領이나 背任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 違反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企業主들을 立件搜查

起訴하지 않은 理由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다른 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5共特委에서는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5共問題를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共非理의 證據라든가 適用法規 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事案을 羅列 國民앞에 提示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檢察에서는 이 搜查過程에서 國民을 실망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檢察은 國民에게 진정으로 希望을 주는 檢察의 熱情을 보여 주는 그런 搜查를 할 意思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이 幹事會議 報告事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子正까지 오늘 會議를 終結하기로 合意를 보았습니다. 하다 보아서 사정이 안되면 어쩔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金東周委員 林春元委員 朴進球委員 梁性佑委員 네 委員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長官이 어떻게 要約해서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技術的으로 要約해서 答辯을 해주시고 또 웬만한 것은 長官이 실제 잘 모르는 部分은 書面으로 答辯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長官 答辯이 끝나고 혹시 子正까지 時間이 남으면 지금 豫定된 姜信玉委員 黃潤鎋委員에게 質疑時間을 드리겠습니다마는 子正이 되면 만부득이 미안합니다마는 質疑時間을 드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委員들도 오늘 檢察이 搜查發表에 대해서 問題點을 指摘할 것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時間關係上 충분한 時間을 갖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姜信玉委員 남은 두 사람만은 質疑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對答하는 것으로.....

○委員長 李基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姜信玉委員, 姜信玉입니다. 저는 어려운 말은 쓰기 싫고 우선 長官님한테 우리가 法을 배운 專門家들인데 우선 法의 本質 法이라는 것이 平等하게 適用되어야 한다 또 正義는 하늘이 무너져도 正義는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法앞에 平等하다 라고 할 때는 大統領도 法앞에 平等해야 됩니다.

이 불쌍한 市民들은 엄격한 法이 適用되고 大統領이라는 職位를 지낸 사람한테는 그 어머머한 犯罪가 있더라도 이것은 禮遇上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法을 배운 法科大學 1學年 學生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명백한 眞實을 놓고 大統領은 調査할 수 없다 大統領夫人은 調査할 수 없다 政治資金은 調査할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나라를 혼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法을 배운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基本的으로 이 檢察搜查의 結論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法앞에 제일 遵法을 먼저 해야 될 사람이 大統領입니다. 그 사람이 法을 어겼을 때 이렇게 法으로서 處罰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일때 法の 尊嚴性이라든지 歷史의 敎訓으로 남는 것이지 大統領이 실컷 나쁜 짓은 다 해놓고 百潭寺에 가 있다고 해서 불쌍한데 봐주자 이런 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檢察의 搜查報告 自體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基本的으로 이런 前提事實을 두고 우선 檢察에서 報告한 搜查한 結果만 보아도 靑瓦臺의 財産 行方에 대한 報告입니다. 檢察의 搜查結果自體가 全斗煥大統領이 9億5,000萬원의 돈을 靑瓦臺에서 주었습니다. 증고는 자기도 일용 쓰고 鄭昇和한테 2億 주고 6億5,000萬원은 朴槿惠한테 주고 이게 됩니까? 도대체 9億5,000萬원의 돈을 搜查하는 입장에서 주었으면 그것은 國有로 들어가야 되고 그 돈은 適法한 節次에 의해서 쓰여져야 될 돈입니다.

자기 멋대로 鄭昇和 2億 주고 5,000萬원 盧載鉉이 주고 6億5,000萬원 朴槿惠 주고 이것은 그 사실 자체가 벌써 橫領입니다. 이런 橫領에 대해서 아무런 法的 措置도 취하지 않고 調査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非理事件別 搜查結果에 그냥 記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으로 記載해 놓았는지 모르

겠는데 아! 사실이 그렇다 이겁니까? 戒嚴司令官한테 허락만 받으면 그런 돈 쓸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것 結果自體가 벌써 犯罪自體가 되고 있는데 不拘束으로 起訴하든지 拘束起訴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할 일이지 이것을 結果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 자체도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단 大統領에 대한 赦免問題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檢察에서 調査를 하고 그 다음에 또 拘束을 하든 그 후에 犯罪事實이 確定되었을 때 그때 大統領이 赦免하고 할 일이지 지금 大統領한테서 獨立된 檢察機關이라는데가 아! 大統領의 뜻이 저 사람이 赦免하려고 하기 때문에 調査할 필요없다 禮遇하기 위해서 調査할 필요없다.

이런 말을 어떻게 法을 배운 사람으로서 부끄러움도 없이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具體的으로 이번에 檢察搜查 結果中에는 모든 것이 돈에 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拷問의 문제 人權問題가 심각한 문제로 5共非理中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拷問問題에 대해서는 李根安警監을 調査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도망가버려서 지금 所在搜查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지금 5共和國때 소위 治安本部 南營洞對共分室을 지나갔던 모든 學生을 이것은 構造的으로 다 拷問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李根安警監婦인이 이것 무슨 우리 男便만 罪가 있느냐? 높은 놈이 시켜놓고…… 자기도 下手人인데 왜 억울하게 우리 男便만 찾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新聞에도 呼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이런 拷問의 實體가 소위 實態가 構造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治安本部에서 構造的으로 자기들이 公權力을 가진 機關에서 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李根安警監의 배후에 누가 指示를 했으며 그 위에는 어디가 있고 또 安企部の 拷問하는 데는 어디이며 治安本部 南營洞分室에 勤務했던 모든 사람들을 調査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報告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李根安警監 도망갔다고 그 所在搜查  
만 指示해놓고 또 지금 말썽많은 日海財團이  
니 이런 본문제만 따지고 있는데 5共和國때  
우리 國民들이 다 얘기하지만 그 때는 警察  
國家라고 핀잔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國家  
에서 拷問이 國家公權力을 업고 組織的으로  
構造的으로 해왔다는 그런 사실을 모든 國民  
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5共非理를 調査한  
다는 檢察에서 어떻게 그런 人權問題에 대하  
서 李根安警監 所在搜查만 해놓고 報告하는  
것입니까?

또 李根安警監事件도 그렇습니다. 檢察에서  
自進해서 잡아낸 事件도 아닙니다. 被害者가  
申告해 가지고 그것도 처음에는 그저 무시해  
버렸다가 나중에 金權泰가 裁定申請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문제삼고 그때 가서 또 寫眞을  
發見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이다 이렇게 하니가 지금 이제야 와서 찾으  
려고 하니가 벌써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韓國에서 그런 사람들이 숨을 데가  
있습니까? 옛날에 朴鍾哲군 같은 경우에도  
잡아가지고 參考人을 죽이고 한 그런 時節도  
있었는데 지금 韓國의 檢察이라는지 韓國의  
警察들이 도망간 李根安을 못찾고 있습니까?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人權問題 疑問死問題 이런 아  
주 심각한 韓國의 拷問問題 이런 것들이 5共非  
理의 아주 그 標本的인 事件으로 있는데도  
여기에는 손도 안대고 이것 5共非理搜查를  
끝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具體的으로 韓國「트럭터미널」強奪事  
件입니다.

이것은 典型的으로 소위 保安司에서 合同搜  
査本部에서 아무런 罪없는 사람한테 會社를  
빼앗아가지고 그 다음에 競爭하는 승한배한테  
준 事件입니다.

이 事件의 被害者가 5共和國 때 수차례 18  
번이나 陳情을 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陳  
情을 했을 때에는 恐喝은 인정되는데 公  
訴時效가 지났다 라고 이번에 結論 내렸습니  
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는 “犯罪嫌疑 없음”  
하고 또 보냈습니다.

公訴權이 있을 때는 嫌疑없다고 해놓고 公  
訴權이 다 지나고 난 뒤에는 調査해가지고

恐喝은 되는데 公訴權이 없을 이게 됩니까?

결국 이것은 옛날에 公訴權이 있을 때는……  
같은 檢察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嫌疑없  
는 것으로 調査해 놓고 公訴權이 없을 때는  
罪는 되는데 公訴權이 없다 이런 式으로 하  
면 被害者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公訴權이라는 것은 公訴權이 없을 때  
기다렸다가 被害者한테 아! 罪는 되는데 公  
訴權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事件에서 또 檢察의 發表 자체  
가 축소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  
다.

本人한테 보내는 편지에는 結論에 보면 옛  
날에 恐喝罪는 틀림없이 되나 強盜罪는 되지  
않는다 하는 式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恐  
喝罪가 되는 것은 농후하나” 하는 것으로  
또 풀어놓았습니다. 농후하다 檢事는 恐喝罪  
가 틀림없다고 하면서 不起訴했는데도 이 發  
表文에는 恐喝罪가 되는 것은 농후하나 이런  
式으로 아주 풀어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승한배가 訴訟 당한 事件에 대한 소위 保安  
司의 壓力에 의한 取消가 있었습니다.

公訴取消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時局事犯  
한테도 公訴取消를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하고  
할 때 檢察에서는 公訴取消라는 것은 이것은  
制度上 참 써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애걸했던 일이 있었  
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승한배가 李鶴捧이 하고 싸고 결국 트럭터  
미널을 빼앗아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대한 公訴가 提起되어 있을 때 保安司에서  
壓力을 넣는다고 그래서 起訴된 事件을 取消  
하는 그런 例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번 5共非理 搜查에  
서 나타났으면 적어도 「트럭터미널」事件의 結  
果報告에는 公訴取消가 된 일도 있었다 檢察  
이 그때는 참 잘못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밝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빠뜨렸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위 “恐喝罪가 틀림없이  
되나” 하는 부분은 “농후하나”로 바꾸고 公  
訴取消된 부분은 말도 안하고 그리고는 이쪽  
에서 도대체 保安司에서 李鶴捧이 같은 그런  
무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保安司의 搜查要

員을 시켜서 被害者들을 불러서 수십번 불러서 공갈을 치고 때리고 拷問하고 그러면서 빼앗아간 事件인데 이것은 強盜입니다. 強盜! 어떻게 恐喝입니까? 이제…… 強盜같으면 公訴權의 時效도 아직도 살아 는 있는 것입니다. 또 被害者도 그런 式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만 보니까 恐喝은 되는데 무슨 不可抗力에 이를 정도의 強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公訴權이 없다 이러한 式으로 事件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正義를 執行하는 檢察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個人的인 얘기를 하면 안되었지만 長官님도 保安司에 한 열댓번 왔다갔다 그러면 그것은 強盜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常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技術적으로 해가지고 恐喝이 되면 公訴時效가 지났으니까 公訴時效를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이번에 5共非理 調査했다는 檢察이 어떻게 事件을 調査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證據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승한배가 이번에 바로 소위 빼앗아갔다는 그 사람이 不拘束으로 450명億을 橫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不拘束起訴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李鶴掙이 하고 같이 「트럭터미널」을 빼앗아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또 아까 말한 公訴取消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458億을 횡령하고 特定 犯罪加重處罰法에 의해서 起訴해 놓고는 이 사람을 不拘束起訴했습니다. 도대체 이 檢察權의 不公平한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新聞에서 떠드니까 아! 그 사람 나이가 많다…… 나이가 몇 인데… 68歲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調査해 보면 그 사람은 원래가 64歲밖에 안되는데 자기 형님은 65歲인데 지금 68歲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檢察은 이것을 믿고 아! 나이도 많다 이런 도대체 不正義한 이런 檢察 公訴權의 行事を 하면서 무슨 5共非理를 충분히 조사했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檢察은 분명한 對答을 바

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結論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法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서 그렇게 유능한 檢察官이 많다는 檢察들이 法科大學 1學年만도 못한 正義感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盧大統領을 위해서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結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이것을 결국 國民으로 하여금 납득하게 할만한 방법은 결국 檢察이 제대로 行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特別檢察을 만들어서 정말 中立的으로 良心的인 處理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發想이 나온 것이 檢察 스스로에 대한 不信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檢察이 정말 이제 法科大學에서 배운대로만 하면 우리가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三權分立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三權分立…… 누가 모릅니까? 지금 辯協에서 추천해서 大統領이 任命하게 되어 있고 國會에서 관여하면 말썽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도 양보했습니다. 이런데 지금 그런 자기들 自省은 하지 않고 우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저 껌껌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 자리에서 끝낼려고 이런…… 그런 남자답지 않은 發想들 이것을 감히 버려야 됩니다. 정말 發想의 大轉換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黃潤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潤鎭委員 民主正義黨의 黃潤鎭委員입니다.

委員長께서 12시에 이유없이 아주 끝을 낸다고 그러니까 또 長官께서 答辯하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것이고 해서 간단하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5共非理 調査를 檢察에서 한 것을 序頭에 報告를 했습니다. 그 報告書 6「페이지」 그 但書條項에 볼 것 같으면 다만 그래가지고 末尾部分을 볼 것 같으면 政治資金 分野는 이 政治 社會安定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 前任大統領의 內外분에 대한 調査는 경우에 따라서 國民和合을 저해할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調査를 안했다 하는 그런 皮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本委員의 생각도 거기에 同意를 표하면서



좀더 具體的으로 長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  
다. 本委員의 생각에도 第5共和國下에서  
政治資金에 관한 制度가 어느 政治人할 것  
없이 다 수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是는 상  
당히 非現實的이었다. 是로 인해서 이 政治資  
金이 陽性化되지를 못했고 또 非正常的인 방  
법으로 政治資金이 조달되어 왔다고 이렇게  
常識的으로 다 수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  
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 현재 問題視되고 있  
고 또 이와 같은 것이 清算이 되어야 하는  
問題點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13代國  
會에서 이 政治資金 조달의 陽性化를 골자로  
하는 法律改正을 各黨間에 협의를 해서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과거의 非正常的인 政治資金 조달과  
그 使用方法에 대한 이와 같은 時代的 背景  
에 예외없이 그냥 政治資金 그 자체에 대해  
서 一刀兩斷式으로 이것을 司法處理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搜查結果나 그 搜查範圍 여하  
에 따라서는 與野 政治圈 全般에 적지 아니  
한 충격을 줄수 있는 可能性도 있다. 또 이  
와 같은 것이 民主化過程에 있어서 바람직하  
지 못한 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일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檢察次元에서  
司法處理하기 보다는 또 어느 면에서 보면  
政治的 解決에 일단 말기는 것도 나름 대로  
의 어떤 當爲性이랄까 이런 것도 있지 않겠  
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長官의  
견해와 또 그 이외의 어떤 소신이 있다면  
그 소신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前任大統領 內外분에 대한 搜查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國民和合을 저해한다하는  
이와 같은 우려의 소신피력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事由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  
겠습니다. 是는 일음 지금까지 報章에 報道  
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政治圈 거의 全  
般에 公해서 政治報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前任大統領에 대해서 處罰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거의 普遍的으로 報章에  
報道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赦免을 前提로 하는 것이  
든 또는 民族 어떤 자존의 이런 문제가 있  
는 것이든 또는 어떤 前任大統領의 叱責을

감안한 것이든 그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國民和合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는 없다. 이렇게 本委員도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이 法務部長官의 견해와 또  
그 이외의 어떤 뚜렷한 소신이 있으면 그  
소신을 차례에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두어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長官 答辯하세요.

○法務部長官 許亨九 여러 委員님께서 여러가  
지 檢察에 대한 꾸중 충고 많이 해주셨습니  
다.

여러 委員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차 우리 檢察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나 할것 같으면  
日本檢察이 그렇게 썩진 것은 우연히 처음  
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檢察의 所信을 政治人이 尊重해주고 또 政  
府에서도 尊重을 해주니까 그 檢察들이 또  
所信껏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所信  
이나 하면 아까 말씀드린 좀 오래 되었습니  
다. 是는 造船疑獄事件때에는 檢察에서 法務部長  
官은 분명히 不拘束指示를 시키고 싶은데에도  
불구하고 안돼요. 우리는 拘束해야 되겠소.  
拘束承認申請을 했습니다. 그것은 法務部長官  
의 承認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與黨의 幹事長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法務部長官은 또 與黨의 部下라면  
部下니까 그것을 拘束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  
시오 이렇게 指示를 했답니다. 그것이 큰  
政治問題化됐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나 하  
면 日本 檢察은 法務部長官이 不拘束하라고  
한다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拘束하고 싶으면 拘束하겠다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長官이 正式으로 우선  
좀 拘束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日本 檢察이라는 것이 강하  
게 되어 가지고 지금 日本의 紀綱을 확립하  
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면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저도  
檢察總長을 할 때에 어느 特定 個人을.....  
어떤 분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뭐! 總長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무슨 制度가 이런 制度가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분들도 國家와 장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總長도 그동안 月給장이 해보고 公務員生活도 해 보아서 그래도 國家와 民族을 위해서 무엇이 正義다 하는 것을 判斷할 줄 아는 사람인데 無條件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으면 무엇하려고 檢察總長制度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솔직히 나는 그랬습니다. 그런 經驗이 있기 때문에 저는 長官이 된 다음에 總長하고 檢察幹部들을 불러 놓고 長官의 指揮監督權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發動하는 것이 아니다 어쨌다가 檢察이 참으로 잘 못했을 그 때 指揮監督權이 發動되는 것이지 이것 사소한 것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 말은 즉 무엇이나 長官이란 政治人입니다. 政治人이라는 것이 자꾸 檢察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檢察은 政治에 좌우되는 檢察이 말하자면 역약한 檢察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의 所信은 이번에…… 이 말은 또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檢察은 잘못하고 나는 잘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現制度하에서는 檢察에 대한 政治的인 責任은 法務部長官이 져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나 하면 檢察廳法에 보면 法務部長官은 檢察總長은 指揮監督할 수 있지만 具體的 事件에 관해서 一般 個個 檢察에 대한 指揮監督權이 없습니다. 監督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나 할 것 같으면 法務部長官이건 누구건 檢察은 檢察所信대로 맡겨두어야지 그것이 잘못되어 갈때 아! 그것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좀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 事件 起訴하라 저 事件 不起訴하라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檢察때 윗 사람이 쓸데없는 그런 잔소리를 하면 나는 그것 起訴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시켜서 하십시오 실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釋放하려고 하는데 윗 분들이 그것 釋放못한다고 하면 釋放할 이유를 說明을 했습니다. 그래도 釋放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이 事件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나하면 우선 그러면 윗 사람 말 안 들은 것이 되지만 적어도 檢察을 갖다가 準司法機關이라고 일컬었고 또 檢察廳

法에서 身分을 보장한 것은 檢察는 적어도 자기 良心에 따라서 윗 사람의 指示가 왔을 때 良心에 따라서 그것을 拒絕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명백히 拒絕을 하면 일종의 그것은 抗命이 됩니다마는 소극적인 反抗이라고 합니까? 反抗이라고 하면 用語가 얼핏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指揮監督에 대해서 자기 所信에 맞지 않을 때에는 안듣고 事件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정도의 자유는 있어야 된다 그것이 檢察가 아닌 사람이면 起訴하라고 하면 無條件 따라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一般 行政官廳이고…… 起訴하지 말라고 하면 안해야 되지만 적어도 檢察는 자기가 判斷해가지고 내 所信에 맞지않는다면 起訴하지말라고 하는데 起訴하면 그것은 命令違反입니다 起訴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不起訴하면 그것은 命令違反입니다.

그러나 起訴하라고 하는데 내 所信이 起訴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起訴못하겠습니다 다른 檢察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常識으로 이해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委員님께서 法務部長官 오래할 것이나 말씀도 하셨는데 法務部長官을 제가 8年前에 나올때에 그때 그대로 두었더라면 法務部長官 제대로 되게 되어 있었었습니다.

과거에 前例도 그랬고 저한테 심지어 그런 말을 합니다. 한 1년만 잘 해달라고…… 오늘 하도 꾸중을 듣다 가만히 생각해…… 오만 말 다 합니다마는 이런 말 남한테 한 일도 없습니다. 한 1년 잘해 달라고 總長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잘 있으면 된다 이 말인 모양인데 이것이 總長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檢察의 總長이라고 하는 것이 大統領한테 제대로 말도 한마더 못하고 總長하면 무엇하나 그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결국 이것 저것 걸려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大統領한테 信任도 못받는 總長 또 하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있으면 이상하고 그래서 辭表내고 나온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나와서 辯護士하면서 세상구경도 많이하고 어떻게 어떻게 지내다가 또 어떻게 運이 좋아가지고 또 어떻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長官! 모처럼 들어왔으니까 오

래할 생각이냐? 오래하면 좋기야 좋겠지요 하지만은 과거에도 굳이 所信껏 살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辯護士야 사실 먹을 것이 그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때는 사실 나가가지고 이것 어떻게 사나 생각을 했지만은 아이고 辯護士해서 먹고 산다고 하나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생각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8년동안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어떻게 밥은 먹게 되었어요. 이제는 굶어죽지는 않는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長官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 야까 말씀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것이 그것입니다. 자! 내가 長官이 되었으면 이 檢察을 指導 監督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所信껏 일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 委員님께서 말씀하시피 檢察이 형편없다 하면 長官은 무엇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예 獨立을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司法權獨立을 할때 判事의 個個의 判決이 안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所信을 지켜줌으로 해서 그 다음 判事들은 계속 所信껏 일할 수 있게 되고 檢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틀렸으니 너희 獨立 못 시켰다고 하면 그러면 영원히 獨立은 안 됩니다. 所信껏 일 못합니다. 한 두가지를 어떤 것을 보니까 檢事가 좀 시원치 않다 그렇지만은 역시 檢察이라는 것은 準司法機關이니까 準司法機關은 적어도 獨立을 해가지고 所信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된다 그런 견지에서 政治하시는 여러 指導者께서 그렇게 檢察을 밀어주고 또 政府도 그렇게 育成을 해야 장차는 이것이 法務部長官 말정도는 안 듣는 그런 강한 檢察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변명만 같습니다마는 재 所信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政治하시는 여러분께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檢察을 앞으로 어떻게 育成하실 것이다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시라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해서 이런 큰 事件이면 사실 長官이 조금 더 介入은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所信이 그 總

長 밑에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오랫동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所信대로 맡겨가지고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있는대로……

○盧武鉉委員 아니! 長官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이 常委에서의 長官에 대한 여러 가지 質問이 檢察權의 獨立을 갖다 존중해주지 않는 어떤 質問이라도 있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전혀 그것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키우느냐 문제를 말씀드렸지 質問하시는 그것이 檢察權獨立에 지장이…… 그것은 전혀 오해도 심한 오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무슨 말이라는 것이 자리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뜻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뜻이 다릅니다. 명백히 그것은 오해하고 계십니다.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스스로 獨立을 지킬 意志가 있는 檢察에 대해서 누가 잔소리 했으면 모르지만은 스스로의 獨立을 포기한 檢察에 대해서 포기한 것을 叱責하고 있지 않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 叱責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叱責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叱責하시는 분한테 원망 하나도 없습니다. 檢察이 叱責받을 일 했다면 참으로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責任질 사람이 法務部長官밖에 없습니다. 法理上……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 이겁니다.

○盧武鉉委員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搜查의 範圍을 一定限度 두 사람에게 대해서 제외했고 政治資金에 대해서 搜查의 對象이 되는 事件의 성질에 의해서 政治資金을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檢察總長의 이러한 決定에 대해서 法務部長官이 단 한마디라도 이것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監督權도 없습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監督權이 있습니다. 그것은……

○盧武鉉委員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法務部長官이 그 문제에 대해서 監督을 했다

는 이야기입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法務部長官 許亨九 監督했습니다. 監督을 했지만은 소소한 문제까지 다 지금 기억을 못하고 다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이지 그것을 너무 또……

○盧武鉉委員 소소한 문제가 아니고 두 個의 原則이야기 아닙니까? 原則이야기……

○法務部長官 許亨九 그러면 時間있는 대로 答辯을 드리고……

○盧武鉉委員 答辯을 묻는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法務部長官 許亨九 林春元委員님과 金東圭委員님 朴進球委員님 梁性佑委員님과 姜信玉委員님과 黃潤鎡委員님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林春元委員님의 質問입니다.

5共非理의 範圍는 國會에서 選定한 44件이 모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搜查의 焦點을 그 範圍로 限定한 것은 결국 權力型 不正과 非理에 대하여 檢察權의 剔抉意志가 貧弱한 것이 아니냐 하는 趣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檢察 搜查는 第5共和國 時代의 不正과 非理에 대하여 國民의 疑惑과 非難의 對象이 되어온 것 모두를 對象으로 하고 國會에서 選定한 44件에 限定한 것은 아니냐 적어도 與野 合意下에 選定한 44件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檢察은 적어도 이 44件은 與野 모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搜查力을 集中하여 真相糾明하게 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그 동안 그 真相을 철저히 糾明하는 한편 엄정한 司法處理를 통하여 國民의 疑惑을 解消하기 위하여 最善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檢察은 조속한 時日內에 5共非理를 剔抉한다는 방침으로 이 44件中 真相糾明을 위하여 檢察權 發動이 필요한 事案에 대하여 철저한 真相糾明과 犯法者에 대한 가차없는 處斷이라는 강력한 非理 剔抉意志를 가지고 搜查에 總力을 경주하였습니다.

檢察은 이밖에도 88 飛行船 導入 廉普鉉 前 서울市長 崔烈坤 前서울市教育監 등의 不正 및 告訴 告發되거나 證據가 명백한 事案에 대하여도 積極的인 搜查를 展開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犯罪의 嫌疑가 있는 경우에 언 제든지 搜查하여야 하는 檢察이 大統領談話를

기다려 搜查한 것은 職務遺棄인가 아닌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檢察은 과거의 不正과 非理를 그때그때 즉시 剔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自省도 합니다마는 5共非理 事件 搜查는 大統領談話에 따라 搜查를 開始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報告 드린 바와 같이 昨年 3月부터 새마을運動中央本部 등의 非理를 剔抉하였고 다만 서울「올림픽」大會가 開催되고 이어 國政監査가 實施됨에 따라 內部的인 搜查는 임시 中斷하고 內部的으로만 國會의 調査活動 言論報道 기타 關係資料를 면밀히 파악하다가 國政監査가 終了된 직후인 지난해 10月24日부터 임시 中斷되었던 搜查活動을 再開하여 全斗煥 前大統領의 親·姻戚의 非理 등을 搜查했습니다.

檢察權에 의한 第5共和國 不正 非理의 真相糾明意志를 闡明한 大統領의 特別談話에 따라 檢察은 5共非理搜查體制를 全面 擴大 改編하여 第5共和國非理特別搜查部를 發足시키고 全國 각 檢察廳과 긴밀한 共助體制를 유지하면서 國稅廳 銀行監督院 등의 協調를 받아 더욱 搜查에 拍車를 가했을 따름입니다.

그 다음……

○委員長 李基澤 長官! 잠시 答辯을 좀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子正전에 오늘 會議을 가능하면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長官께서 장황한 말씀을 하시다보니 지금 子正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議事日程을 다 마치고 잠시후에 지극한 1分 정도 남았는데 會議 次數를 變更해서 會議를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次數變更에 대해서 별 異議가 없지요?

(「書面答辯 받으면 안돼요?」 하는 있음)

지금은 안되지요. 答辯은 다 들어야지요.

答辯은 다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會議를 散會토록 하겠습니다.

(23時59分 散會)

○出席委員

李 基 澤	金 仁 泳	金 重 權
朴 進 球	徐 廷 華	辛 再 基
安 秉 珪	李 聖 浩	張 慶 宇
趙 庚 穆	黃 昞 禹	黃 潤 鎡

洪 熙 杓	金 令 培	朴 相 千
梁 性 佑	李 東 根	林 春 元
趙 昇 衡	崔 洛 道	姜 信 玉
金 東 圭	金 東 周	盧 武 鉉
沈 完 求	金 鍾 植	金 炫
鄭 一 永	崔 戊 龍	

○委員아닌出席議員

康 祐 赫	金 潤 煥	金 光 一
鄭 昌 和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立 法 審 議 官	崔 再 喆

○出席國務委員

法 務 部 長 官	許 亨 九
-----------	-------

○出席政府委員

法 務 部 次 官	徐 廷 信
企 劃 管 理 室 長	宋 宗 義
法 務 室 長	任 尙 鉉
檢 察 局 長	金 有 厚
保 護 局 長	卞 在 日

【報告事項】

○交涉團體加入

民主正義黨  
洪 熙 杓  
(1月12日字)

○特別委員辭任

民主正義黨  
李 致 浩  
(1月25日字)

○請願回附

‘80年公職者肅正眞相糾明을 위한 聽聞會 開催에 관한 請願  
(1月5日 서울特別市鍾路區內需洞4 全國解職  
公務員聯合會 會長 趙勝一外 421人으로부터  
朴燦鍾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80年 解職公職者의 名譽回復 및 生存  
權保障을 위하여 ‘80年 公職者肅正 眞相  
糾明 및 治癒對策 樹立에 관한 聽聞會를  
開催해 주기 바라는 內容임.
2. 解職言論人問題 등은 聽聞會를 통하여  
그 眞相이 밝혀지고 있으나 ‘80年 公職  
者肅正問題는 現在까지 眞相이 철저히 糾  
明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政府는 國  
會에서 通過된 ‘80解職公職者復職및補償에

관한特別措置法案에 대한 拒否權을 행사함  
으로써 그 根本的인 治癒對策이 樹立되지  
않고 있는 바 解職公職者의 名譽回復 및  
生存權保障을 위하여 ‘80年 公職者肅正의  
眞相糾明을 위한 聽聞會를 開催해 주기  
바라는 請願임.

1月9日字 回附됨.

錦湖實業의三陽타이어(株)引受過程에 있어서의公權力不  
法介入眞相糾明을 위한 國政調查要求에 관한 請願

(1月20日 서울特別市龍山區二村洞302의86  
빌라APT503號 朴祥求로부터 李東根議員의  
紹介로 提出)

要 旨

1. 請願人은 野黨政治人에게 政治資金을 提  
供하였다는 理由로 不當한 公權力 介入에  
의해 三陽타이어(株)의 株式을 錦湖實業에  
引繼하였는 바 國政調查權을 發動하여 眞  
相을 糾明해 주기 바람.
2. 請願人은 三陽타이어(株)의 大株主로서 高  
等學校 先輩인 野黨政治人에게 1천만원  
가량의 政治資金을 支援한 것이 禍根이  
되어 20餘年間 심혈을 기울여 成長시킨  
三陽타이어(株)를 不當한 公權力 介入에 의  
해 錦湖實業에 引繼하였는 바 이는 當時  
의 財務部長官·檢察總長·國稅廳長 등의  
壓力에 의한 것이므로 國政調查權을 發動  
하여 그 眞相을 糾明해 주기 바라는 請  
願임.

2月10日字 回附됨.